
2019
연구보고서 22

가부장적 가정의례 문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송효진 · 선보영 · 최진희 · 성 경 · 박수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9 연구보고서-22

가부장적 가정의례 문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2019. 10.

연구책임자 : 송 호 진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선 보 영 (본원 전문연구원)
 최 진 희 (본원 연구원)
 성 경 (본원 연구원)
 박 수 경 (본원 객원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송효진·선보영·최진희·성경·박수경(2019). 가부장적 가정의례 문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간사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 내 성평등 의식과 가족 가치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으나, 우리가 일상에서 의식이나 의례를 통하여 경험하는 가족 문화는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모습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례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성평등 문화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절차와 의식이 재연·답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가족다양성이라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도 조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례문화는 고인이 생전에 준비를 하거나 가족이 나름의 가치와 의사를 반영하여 진행하기보다는, 장례산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매뉴얼화된 의례에 따라 경황없이 치르고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례의 산업화와 장사방식의 현대화는 진행되어 왔으나, 정작 가부장적 장례 문화에 대해 성평등 관점에서의 성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하여서는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의 문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산업화된 장례문화라는 현상 안에서 문제되는 지점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과 변화의 욕구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의 개선과 가족 변화에 대응한 장례문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우리 사회의 성평등한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고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과 경험을 나누어주신 연구 참여자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해 주신 연구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권인숙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가정의례 중에서 특히 장례는 장례절차의 방식과 준비를 고인의 죽음 전에 가족들이 미리 상의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가부장적 절차나, 성차별적 문화와 주변화된 여성의 역할에 대해 가족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장례의식은 가부장적 성격을 형식과 의례를 통해 가족 내 젠더불평등을 유지시키고 재확인시키는 기재로 작용하여 왔음에도 전통과 관습 그리고 사적인 가족 문화라는 이유로 정책적, 제도적으로 무관심하게 방관되거나 소극적으로 지지되어 왔음. 그러나 이러한 장례문화가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고 있는지, 또한 변화하는 가족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례 산업에서 매뉴얼화 되어 나타나는 현실과 장례 관련 법제가 전제하는 프레임과 맥락,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젠더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 연구는 장례문화를 젠더 관점 및 가족 변화의 측면에서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 우리나라의 장례문화 관련 법제 및 정책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함. 그리고 참조할 만한 해외 사례를 우리와 같은 동북 아시아 문화권의 국가들인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살펴봄.

- 한국의 장례문화와 그에 대한 평가, 대안 등에 관한 의견수렴과 인식 조사의 문항구성을 위해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함.
- 한국의 장례문화의 실태와 대안적인 장례문화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
-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 개선 및 가족 변화에 대응한 장례 문화의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방안을 제언함.

나. 연구 방법

-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법제 등을 검토함.
- 장례에 있어서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문화 경험, 현재 한국의 장례 문화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정책육구 등의 파악과, 인식조사의 문항 구성을 위해 최근 3~5년간 가족이나 친지의 장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 관련 활동가 약 3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
- 일반 성인을 대상(약 1,300명, 20대~50대)으로 한국 장례문화의 실태와 대안적 장례문화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
-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이를 연구에 반영하고, 착수, 중간, 결과 보고 세미나를 통하여 전문가 및 관련 담당부처의 심의의견을 연구에 반영함.

II. 장례문화 관련 법제 및 정책

1. 장례문화 관련 우리나라의 주요 법제 및 정책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도 운용

- 장사법 제29조의2는 국가자격증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장례지도사 자격 부여·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장사법 제29조의2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동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시협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에서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과정과 내용을 장사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음. 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장사법 제33조의4는 장사지원센터의 업무에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장사법 제33조의4 제1항 제4호)하고 있음.

- 2011년 장례지도사가 국가자격화 되고, 교육 과정과 내용이 법제에 마련된 다음해인 2012년 법제의 운용상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내용의 표준으로 정책적 가이드가 되는 보건복지부의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표준교육교재¹⁾가 발행된 바 있음. 그러나 동 표준 교재에 현대의 장례 절차 내용에 있어서도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 다양성과 개인화라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장례문화의 방향성에는 아직 인식이 미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 장사지원센터의 장례에 대한 안내 내용에 있어서도 성 불평등한 가부장적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음(상주, 주부의 개념과 역할, 상주의 우선 순위, 부계·남성 우선 순위의 부고 작성례, 문상객 복장 등).
- 정책적으로 친환경 장례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사전장례의향서나 간소한 장례식 캠페인도 시도되고 있으나, 현대의 성평등 의식과 가족의 다양화, 개인화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대안적 선택의 모색에 대한 인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법 규정은 물성적이고, 법제의 운용에 있어서는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음.
- 장사법에는 무연고 장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장사법 제2조 제16호), 법률혼·혈연 중심의 연고자 규정 및 실무 현장에서의 경직된 법운용으로 인하여 사실혼 배우자 등 사망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다양한 가족 구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애도와 장례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보장해주지 않고, 이들이 있어도 무연고장례를 하는 결과를 가져옴.

1) 보건복지부(2012).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표준교육교재.(보건복지부의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교재는 2012년 이후의 발행본은 찾아 볼 수 없었음.)

나. 장제비 지원 관련 법제 및 관련제도 운용

- 2008년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제급여제도가 폐지된 이후, 소득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장제비 지원 및 긴급복지 장제비 지급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제도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무연고 장례, 장례비 부담으로 가족들이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1인가구의 증가, 가족 관계의 변화로 자신의 장례와 사후의 준비를 공적 체계가 아닌 사적 체계 즉, 가족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개인이 직접 업체의 상품에 의존해야 하는 제한된 선택지만 존재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음. 그래서 여전히 장례는 획일화된 상품을 개인과 가족이 부담하는 형태로 남아있음.

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도 운용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의례법”이라 함)에서는 가정의례의 정의에 “상례(喪禮)를 포함시키고(가정의례법 제2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장에 장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가정의례법 및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법제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동법 및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실질적 영향을 미치면서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를 조장하거나 강화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그러나 가정의례준칙상의 장례 관련 규정들에는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헌법 가치에 맞지 않음.
- 구체적으로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주상(主喪)의 정의 규정(가정의례준칙 제2조 제6호)은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 문화에 배치되는 주(主)의 개념을 법에 둬으로써 주상(主喪)과 주상(主喪)이 아닌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 간에 불필요한 위계를 만들. 더욱이 주상(主喪)은 배우자나 장자(가정의례준칙 제15조 제2항)로 규정함으로써, 그 자격을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차별적인 위계를

두어 차별과 소외감을 야기함.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호주-상주(주상(主喪))-제주(제사주재자)로 연결되는 가부장제의 잔재가 법제에 명시적인 규정으로 존재함.

- 시대에 뒤떨어진 의례(장례)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가족 구성과 관계의 다양화·개인화되는 사회에 조응하는 다양한 방식의 대안적 장례나 더 간소한 장례문화를 모색하는 시대의 트렌드와 욕구에 맞지 않음.

2. 장례 관련 외국 법제 및 정책 사례: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 일본은 “이에(家)”라는 전통적인 일본의 가족제도 속에서 지탱되어 오던 가치관이, 핵가족화, 도시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장례에 대한 의식의 변화도 나타났는데, 가부장적 가족제도였던 “이에(家)”제도에서 장남은 부모에 대한 부양, 돌봄, 장례, 가족묘의 관리 등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으나 핵가족화, 미혼화, 만혼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장례는 ‘개인화’ 됨.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따라 장례의 양식에도 변용이 발생함. 장례식의 간소화가 이루어져 종래의 ‘일반장’ 대신에 ‘가족장’, ‘직장’, ‘1일장’ 등이 늘어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죽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이지에 대한 의식 변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고령자의 문제는 돌봄부터 사망, 사후의 이벤트까지 단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고령자의 장례 등에 관하여 기존의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고 지원해나가기 위한 의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또한 NPO 등의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의식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음. 예를 들면, 종할, 엔딩노트의 작성 등의 죽음에 대한 사전대비에서 사후의 사무에 대한 준비 및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일본 역시 장례의례 및 문화는 장남이라는 남성에게 의해 행해지고 계승

되어 왔던 가부장적인 가치관의 투영이었던 것이, 현재는 장례에 대한 의식 및 양식의 변화에 따라 개인화 및 사회화되고 그에 따라 가부장적 색채도 점차 멀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를 젠더의 관점에서 살펴 볼 때, 일본에서와 같이 장례라는 사건(event)이 가족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서포트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변화됨으로써,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역할과 그 기대가 아울러 변화할 수 있을 것임. 여기에는 정부차원에서의 의식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NPO 등과 같은 민간차원에서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생각됨. 또한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역시, 지역사회에서 완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임.
-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으로서 가족의 부양, 돌봄 및 장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과 문화가 유사함.
- 그러나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법상의 매장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장제비 및 장제급부, 생활보호법상의 장제부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만의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급여 중 장제급여가 있어 장제비가 지급되고 있음. 이들 국가의 사례에서 장례가 가족의 책임과 역할로만 간주되어 온 것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공공부조체계에서 장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음.

Ⅲ. FGI를 통해 본 장례 문화

1. 초점집단인터뷰(FGI) 개요

- 초점집단인터뷰는 성평등 및 가족변화의 관점에서 한국의 장례문화와 그에 대한 평가, 대안 등에 관한 의견수렴과 인식조사의 문항구성을 위해, 최근 3-5년간 가족이나 친지의 장례에 참여한 경험(단순 문상 제외)이 있는 20대-5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9.6.25.~7.1에

걸쳐 진행되었음. 인터뷰는 원활한 의견 청취를 위해, 성별, 연령, 가족 유형을 고려하고 관련 업계 활동가 그룹을 포함하여 집단을 구성(5개 집단, 총 30명)한 후, 각 집단별로 1회(2시간 소요) 실시하였음.

-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가장 최근의 장례 경험을 중심으로 장례의 본질(의미), 성평등 및 가족변화의 관점에서 최근 장례 경험에 대한 평가, 향후 희망하는 본인·가족의 장례방식 등에 관한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사전에 인터뷰 주제와 관련된 일지 작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 인터뷰 과정 및 결과는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취 후 전사하였음.

2. FGI 결과분석

- 이 장에서는 현행 장례문화의 모습과 그에 대한 평가, 대안 등에 관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음. 다음은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 및 함의임.
-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경험한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장례 문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 남성 중심의 의례와 절차에서 여성들은 주변화 되거나 소외되고, 부계 중심의 장례 문화에서 친가와 외가의 차별이 존재하고, 특히 불합리한 성별 역할 구분이 의례와 절차에서 나타났음. 그리고 이러한 장례문화가 상조업체·장례지도사의 상업화되고 획일화된 상품 서비스를 통하여 자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선택하고 따르게 되는 현실도 살펴볼 수 있었음.
- 우리 사회의 장례는 ‘상조회사/장례지도사가 주도’하는 ‘장례식장에서의 3일장’이 일반적이었음. 이러한 장례의 ‘루틴’은 다시 획일적인 장례 문화, 의례와 절차가 중심이 되는 장례문화, 유가족의 선택과 참여에 따라 기획되기보다는 정해진 장례 의식과 절차를 ‘구매’하는 상업화된 장례 문화로 연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현행 장례식은 추모와 애도가 사라지고, 고인과 유가족이 소외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음. 이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은 의식과 절차에 압도된 채 ‘해치우듯’ 끝나버린 장례에 대한 불편함과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음.

- 현행 장례문화의 또 다른 특성은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 가족’과 ‘가부장적 질서’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 특성이 매우 경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임. 이 때문에 현행 장례문화는 1인가구나 한부모, 비혼동거, 사실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현실은 물론 소위 ‘전형적인 가족’ 내의 변화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음.
 - ‘전형적인 가족’에 포섭되지 못하는 다양한 가족의 경우, 법적·제도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의 장례를 치를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하거나(사실혼 가족), 장례를 치러 줄 법적·제도적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대안도 없이 막막한 상황(1인가구, 비혼가구)에 처해 있기도 함.
 - 소위 ‘전형적인 가족’에서도 현행 장례문화와는 다양한 긴장과 갈등 상황이 존재함. 이같은 상황은 경직적인 장례문화에 변화하는 가족 관계나 속성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예: 원치 않는 가족의 장례를 치러야 하거나, 가족 중심의 장례를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가족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현행 장례문화가 전제하는 가부장적 질서와 의식이 ‘강요’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예: 딸만 있는 가족에서 딸이 실제 장례의 전 과정을 주관하면서도 형식적 상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음.
- 현행 장례문화가 지닌 다양한 한계를 확인하면서 변화하는 의식과 가족의 현실을 반영한 장례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남겨진 사람들에게 대한 ‘위로’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간소화하거나 정해진 의례·의식에 갇히기 보다는 실질적인 애도를 표현하는 방안(예: 1일장, 사전장례식, 사진전, 다과회 등)들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장례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적 차원을 넘어선 개입과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참여자들은 현행 장례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장례문화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었음. 여기에는 죽음이나 장례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합리성이나 손익을 따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터부, ‘잘 치른 장례’에 대한 오랜 통념과 더불어 개인과 가족이 자신들의 욕구를 구현할 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변화하는 의식과 가족의 현실을 반영한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적 수준의 노력과 함께 장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개인과 가족의 현실을 반영한 관련 법제도 개선 등 보다 거시적 차원의 방안 또한 마련 될 필요가 제기됨.

IV. 한국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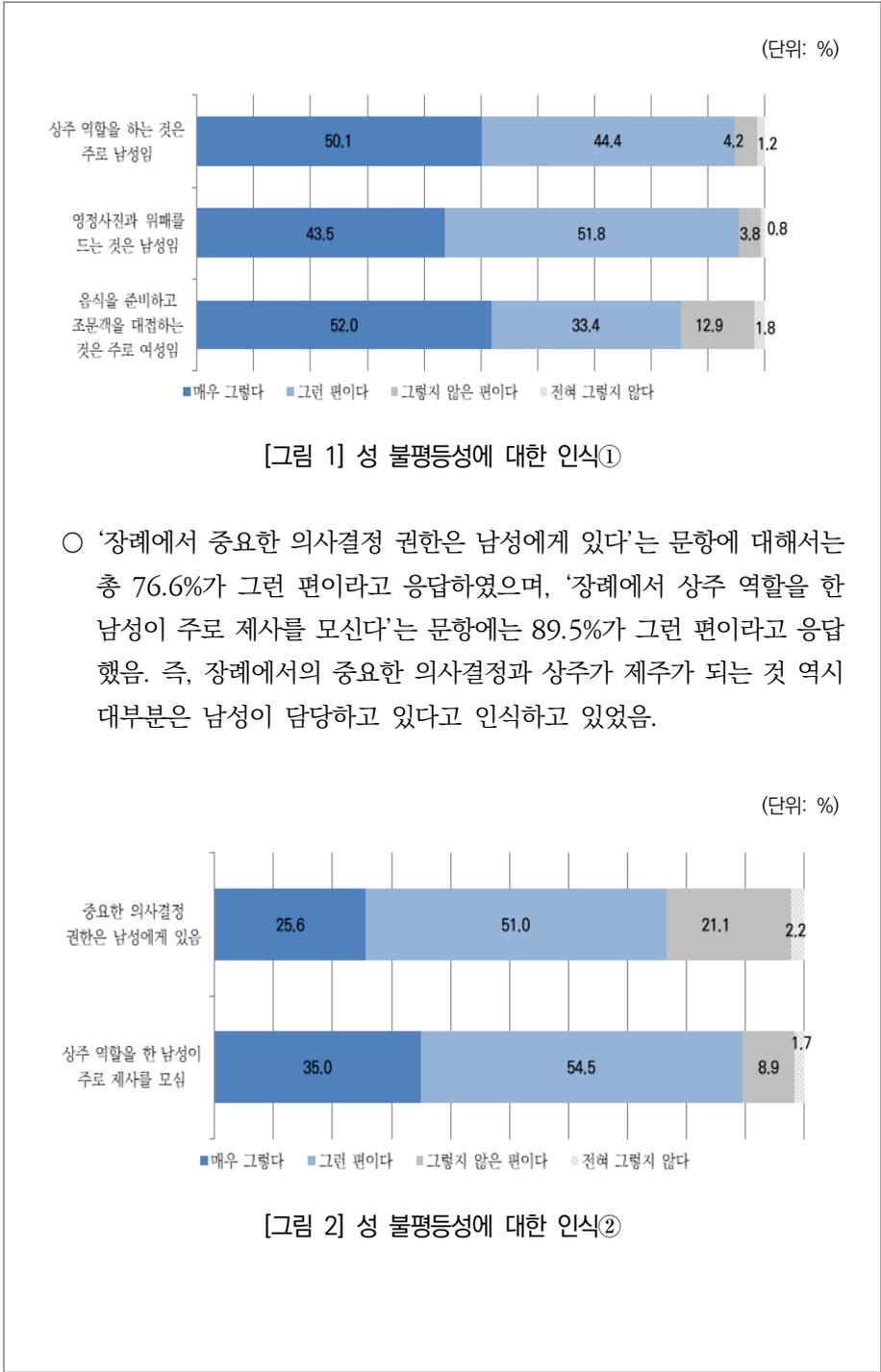
1. 조사개요

- 본 장에서는 20~50대의 성인 약 1,300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장례문화의 실태와 대안적인 장례문화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음.
- 조사대상자는 최근 5년간(2014년 8월~2019년 7월)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였으며, 장례경험에는 문상경험까지 포함하여 장례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20~30대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음.

2. 한국 장례문화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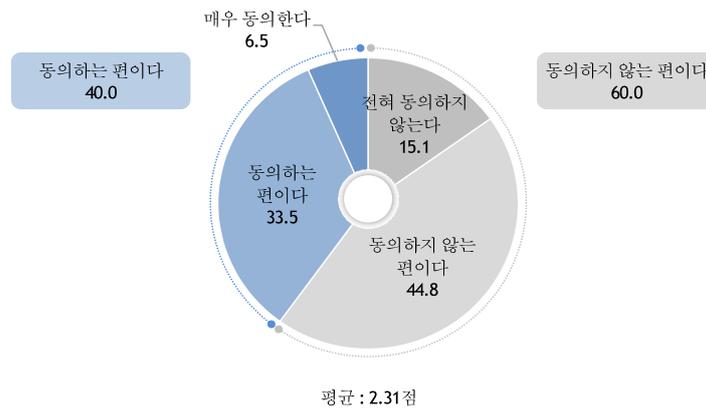
가. 성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한국 장례문화의 성 불평등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면, 여전히 ‘남성’이 중심이 되는 장례식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상주의 역할, 영정사진과 위패 들기, 의사결정 권한과, 상주 이후 제주의 역할까지 남성이 맡고 있다는 인식은 상당히 높았는데 특히, 상주역할과 영정사진과 위패를 드는 역할에 대해서는 약 95%가량이 남성이라고 응답해, 압도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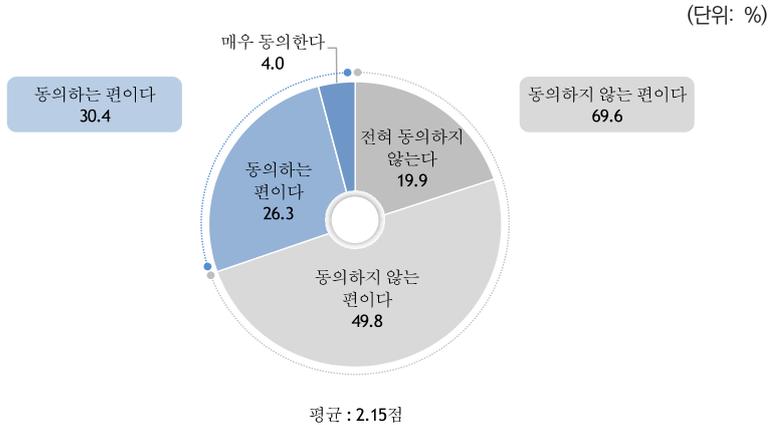
- 반면, 장례에 대한 기존 성 역할과 관련해 태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 문항에 과반수이상만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해,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장례에서 상주는 남성이 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률이 과반수를 넘어선 60.0%로 나타남. 앞의 ‘장례에서 상주 역할은 주로 남성이 한다’는 인식은 94.5%로 압도적으로 높지만, ‘상주를 남성이 해야 한다’는 태도에 대해서는 40.0%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큰 차이를 보임.

(단위: %)



[그림 3]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①장례에서 상주는 남성이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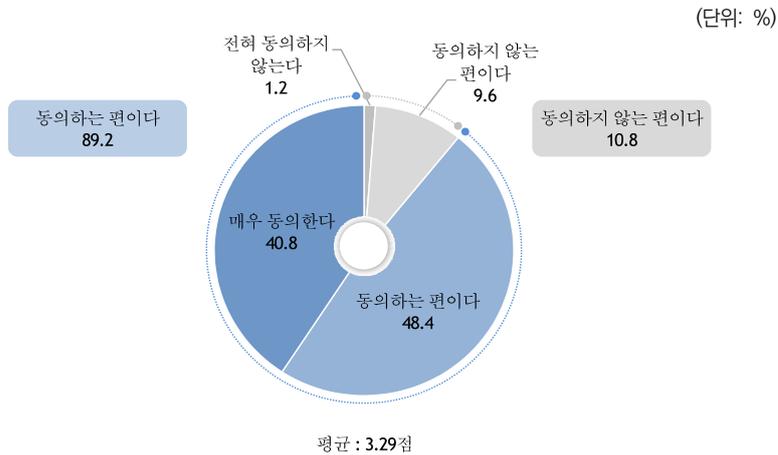
- ‘장례에서 여성은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대접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률이 69.6%로 더 높았음. 이는 앞서,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대접하는 것은 주로 여성이다’라는 인식에서 85.3%가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음.



[그림 4]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②장례에서 여성은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대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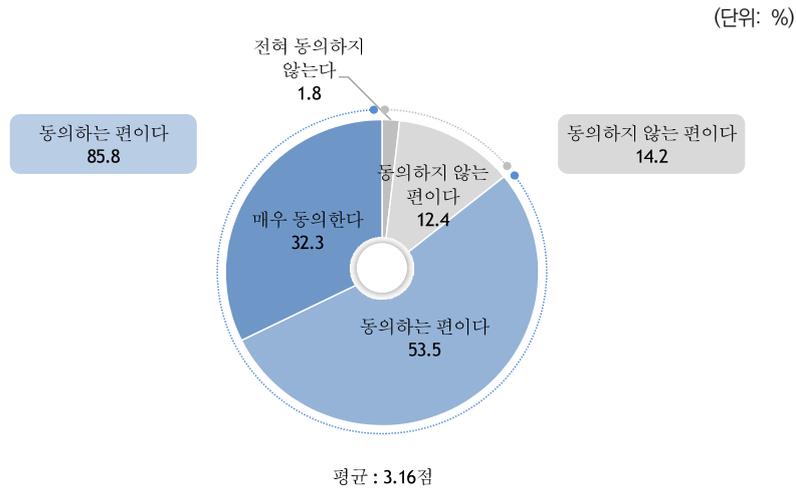
○ ‘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한 남성이 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응답률이 68.7%로 더 높았음. ‘제사에 있어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하고 차별하는 문화는 변화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서, 성차별적 제사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응답률이 90%에 가까워 상당히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5]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④제사에 있어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하고 차별하는 문화는 변화해야 한다

- ‘기존의 장례방식은 1인가구, 비혼 증가 등 최근의 가족 변화와 맞지 않는다’는 진술에 대해 85.8%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그림 6]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⑤기존의 장례방식은 1인가구, 비혼 증가 등 최근의 가족 변화와 맞지 않는다

- 성 불평등성에 관한 태도를 묻는 모든 질문은 성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나. 형식 및 절차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장례의 형식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장례의 절차와 예법이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응답이 87.7%,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9.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장례문화를 넘어 한국 사회의 죽음에 대한 문화와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83.3%로 매우 높았음. 즉, 한국 장례의 형식 및 절차 전반에 대해서는 허례허식에 치우쳐 의례의 본질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시장에서 구입하는 장례서비스와 관련하여 ‘관, 수의 등 장례물품 구입과 장례절차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진술에 대해 거의 모든 응답자(97.0%)가 장례비용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도 ‘상조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달리 장례를 치를 방법이 없다’는 응답이 68.5%, ‘장례를 치를 때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90.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즉, 한국의 장례서비스에 대해서는 고비용의 상업화, 민간시장의 독점,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 현재 장례에서 대안적인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매우 높아 현재 장례가 매우 획일화된 방식으로 치러진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정해진 방식 외에 다양한 장례 방식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90.8%,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려면 어려움이 많다’는 응답이 89.2%로 나타남.
- 응답자 개인의 차원에서 장례식의 형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남.
 - ‘비용이 들더라도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률이 81.6%, ‘상복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간소하고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이 좋다’는 진술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률이 71.5%로 훨씬 높았음.
 - ‘장례식장에 화환은 많을수록 좋다’는 진술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률이 76.9%로 더 높았음. 한편, ‘장례식은 적어도 3일간 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51.6%, 동의하는 비율이 48.4%로 삼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근소한 차이로 더 높았음.
 - ‘장례식에는 조문객이 많아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53.0%, 동의하는 비율이 47.0%로 부정적인 응답률이 근소한 차이로 더 높았음.
- 종합하면, 한국 장례식의 실태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허례허식의 고비용의 문제를 진단한 것을 반영하듯, 고비용의 장례를 지양하고 형식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높았음. 특히 성별에

따라서는 일관되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여성이 남성보다 적정 비용의 간소한 장례식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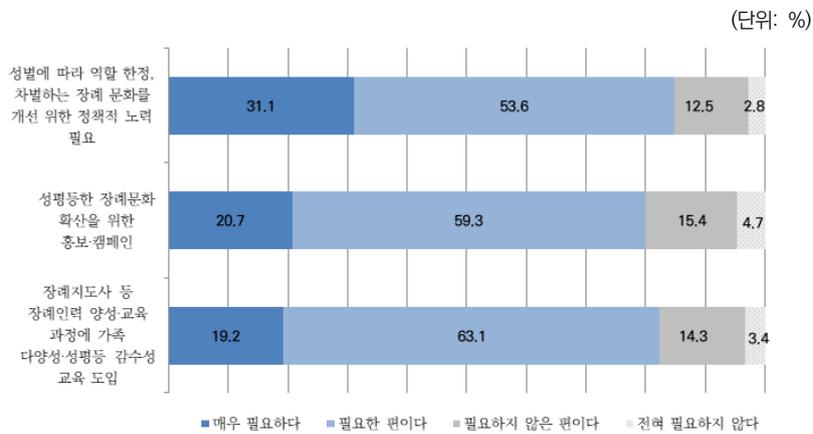
3. 대안적인 장례문화와 정책

가. 성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본 절에서는 희망하는 장례문화를 상주의 필요성, 대상, 장례식에서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희망하는 장례문화에서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데 상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전체의 63.9%가 상주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36.1%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음.
 - 상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식에서 상주는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장남·장손이라는 응답이 36.9%로 가장 높았으나 근소한 차이로 가족이 의논하여 결정한다는 의견도 36.0%도 나타났음. 또, 고인과의 친밀도 순(10.0%),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순으로(6.8%) 등, 응답자들은 기존의 장례식에서 장남·장손으로 대변되는 남성 중심의 상주가 아닌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누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가까운 48.0%의 사람이 ‘외가, 친가, 성별 등 구분 없이 남겨진 가족들이 상의해서’ 라고 대답했으며, 2순위로 ‘상주를 정하고 상주를 중심으로’라는 의견도 22.6%로 나타났음.
- 한국 장례문화의 성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관련해서 국가의 지원이나 개선을 위한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았음.
 -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하고 차별하는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4.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음.
 - 장례문화 개선 정책과 관련해서 필요도를 묻는 문항을 살펴보면, ‘성

평등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0%로 나타났다. 장례지도사 등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가족 다양성·성평등'에 대한 감수성 교육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체의 82.3%가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함.

- 즉,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성 평등한 장례문화에 대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해당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그림 7]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성 평등한 장례문화 관련

- 본 절의 대부분 문항에서도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장례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대체로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기존의 장례문화의 전형적인 인식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며 희망하는 장례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 장례문화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문제의식이 이미 대두되고 있으며, 새로운 요구가 등장하고 있음을 시사함. 또, FGI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례에서 기존의 규범이나 관습보다 현재의 상황이나 변화에 맞는 성 평등하고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일 것임.

나. 대안적인 장례 방식 및 관련 정책

- 장례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고인과 가까운 사람에게 이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3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가 20.7%, ‘고인의 삶의 마무리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17.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본인의 장례식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물어본 결과, ‘예법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예: 음악장, 전시회 등)’가 52.3%로 과반을 차지한데 반해, ‘기존의 장례방식을 따라(일반적인 3일장 등)’ 하고 싶다는 응답은 23.6%로 약 ¼에 불과했음. 또 ‘살아있는 동안 가족·지인과 이별을 나누는 생전 장례식으로’ 하고 싶다는 응답도 22.8%를 차지하여, 기존의 장례방식과는 다른 자유롭고 새로운 형식에 대한 요구가 약 75%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존과는 다른 대안적인 장례 방식 중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하여, ‘고인과 친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장례식을 치르는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93.1%로 가장 높았고, ‘예법에 얽매이지 않고 고인의 취향이나 유언에 따라 장례식을 치르는 방식’이 88.6%, ‘빈소를 차지하지 않거나 장례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74.1%, ‘임종 전 지인과 이별 인사를 나누는 생전(사전) 장례식’이 72.4% 순으로 나타났음. 친밀한 관계 중심의 간소한 장례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가운데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다양성에 대한 요구도 동시에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 장례문화의 형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다루어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음.
 - 앞서 고비용의 상업화된 장례문화의 실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반영하듯, ‘고비용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장례용품 가격 등 정보공개 강화, 간소한 장례식 정보 안내 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91.7%를 차지했음.
 - ‘국립·시립병원 장례식장 등 공공부문부터 기존 장례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90.6%가, ‘상업화된 독과점 구조의 장례업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86.7%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 획일화된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형식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공공시설 등 공간지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9.9%로 높았고, '개인·가족이 원하는 장례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에 대해서도 86.5%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 대안적인 장례문화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도 현재 한국의 장례문화의 실태와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즉 응답자들은 성 불평등하고 허례허식에 치우친 현재의 장례 문화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중심의 성 평등하고 간소한 장례문화, 개인의 취향 중심의 다양한 장례문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음. 이런 괴리를 반영하듯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하는 응답이 일관되게 매우 높게 나타났음.

V. 결론 및 정책제언

1. 성별 위계와 차별적 구분 없는 장례문화로

- 시대에 맞지 않는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는 개선이 시급함. 호주제가 폐지된 지 십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우리 일상에 깊숙이 남아 있는 가부장적 가족 문화가 상업화된 장례시스템을 통하여 구시대적인 내용의 법제의 지지 하에 장례에서 소환되고·재연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가. 장례인력 양성과정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커리큘럼 포함

- 장례지도사 등 장례인력 양성과정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도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커리큘럼이 포함되어야 함.
- 1인 가구, 비혼, 딸만 있는 가족 등 가족이 다양해지고, 가족 내에서 이미 성별 위계와 가부장적 가치관이 흔들리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인식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에 대한

불만과 변화의 욕구도 상당히 높음. 장례인력의 양성에 있어 교육 내용과 커리큘럼은 변화하는 가족 문화와 성평등 가치에 맞추어 업데이트되어야 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은 교육 내용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 현재의 장례에서 추모와 애도라는 장례의 본질은 남기고, 불합리한 성별 역할 구분과 위계로 구성된 의례를 걷어내는 시도와 대안의 모색이 교육 과정에서 시도되어야 함.
- 장사법 시행규칙 별표2는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을 규정하고 있음. 과정 내용에 “장례의 의미와 기능” 및 “상장례의 이해”에 가족과 사회 의식의 변화에 대응한 장례 문화의 대안이 포함되어야 함. “종사자의 역할과 자세”에 가족 다양성 및 성인지 감수성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표준교육교재를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음.

나.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연구 및 대안적 장례 콘텐츠 개발

- 장례인력 양성과정에 있어 교재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 그간 문제의식 없이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장례에 있어서의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 문화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한 연구 및 대안적 장례 콘텐츠 개발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장사법 제33조의4에 근거한 장사지원센터의 업무에 이미 “장사정책·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

다.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 관련 법제의 개선

- 호주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에서는 “주상(主喪)” 또는 “상주(喪主)”라는 이름으로 장자와 장손이 3일의 장례 기간 동안 “호주(戶主)”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고 가부장적인 의례를 시연함. 장례가 끝나고 나면 제례에서 이들은 “제주(祭主), 제사주재자”로서 명절과 기일마다 반복적으로 의례를 시연하게 됨. 민법에서 호주는 폐지되어 삭제되었으나 상주와 제주는 아직도 법제에 명시되어 유지되고 있음.

가정의례준칙 상 장례 관련 규정은 간소화의 방향과 방식이 잘못되어 애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의례에 가부장성과 성 불평등한 절차와 역할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존치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포함하여 헌법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전근대적이고 성 불평등한 요소들은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함.

라. 성평등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 성평등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필요한 부분임. 장례 문화는 간소화와 대안적 방식, 자연장, 수목장 등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이 필요한 여러 이슈들이 있음. 전반적인 장례문화에 대한 성찰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는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임.

2. 가부장적 혈연가족에서 다양한 개인과 가족으로

- ‘혈연 가족’이라는 협소한 기준만으로 장례의 자격과 권한이 부여되는 현행 장례문화가 가족형태 및 구성, 관계의 다양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함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됨.

가.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추모 보장

- 삶을 다하고 떠나는 사람과 떠나보내는 사람 누구나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장되어야 함. 어떠한 죽음이라도 마지막 가는 길까지는 존중받고 보살펴질 권리가 있음. 고령화와 가족 변화, 개인화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은 이미 사회보장체계에 장례를 포함하고 있음. 최소한의 마지막 존엄은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그리고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도 보장될 수 있어야 함. 장례는 돌봄의 마지막임. 돌봄의 부담을 가족으로부터 국가와 사회가 덜어가는 것처럼 돌봄의 마지막인 장례도 사회와 국가가 최소한의 보장을 고려하기 시작해야할 것임.

나. 가족관계 변동에 따른 가족범위 확장

- 가족관계의 변동에 대응하지 못한 채 장례의 주체로서 사실혼, 비혼 동거 가족, 공동체 등을 배제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함. 이미 문제되고 있는 무연고 장례의 이슈에서 기존의 제도 밖의 다양하고 새로운 관계의 당사자들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지막 돌봄으로서의 장례와 추모의 기회를 허용 받지 못하는 문제는 조속히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혈연과 법률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중심의 장례 관련 법규들의 개선이 필요함.
- 장사법 제2조 제16호의 정의규정이 정비되어야 함. 동거인, 사실혼 관계 등을 명시하면서, 시신인수 여부를 확인은 순서대로 하도록 하는 규정의 모호한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장례 의사가 있는 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려야 함. 사망진단서의 교부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와 혈족 중심의 가족 범위 역시 확대되어야 함. 의료법 제17조는 비혼 동거당사자의 사망진단서를 포함한 각종 의료 진단서의 교부 자격 문제가 모두 연동되어 있음. 범위에 “환자(본인)가 지정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다. 후견제도의 보완 등-사후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 비혼, 1인 가구, 제도 밖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죽음 이후 장례 등을 부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현행 임의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종료되므로, 사후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비와 보완이 필요함. 신탁제도, 유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후견인의 사후사무 처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강구되어야 함. 또한 후견비용의 부담을 경감시켜 이용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3. 의례와 절차 중심의 장례에서 추모와 애도가 있는 장례로

- 의례와 절차에 압도된 고비용, 고부담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도 요구됨. 이와 관련해서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위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애도가 가능하도록 돕는 지원 체계 및 사회적 여건 마련이 필요함.

가. 고비용 장례문화 개선

- 장례의 간소화와 고비용 문제의 해결은 상업화된 장례와 의례 중심의 장례에서 벗어나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현실적으로 고비용 장례문화의 문제는 가장 이용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슈이며, 인식조사결과에서도 그 필요성에 압도적인 동의가 있었음. 고비용 장례 문화는 장례비용이 없어 시신인수를 거절해서 가족이 있음에도 무연고 장례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례의 주요 원인이기도 함. 고비용 장례 문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작은 장례식 캠페인이라든지, 작은 장례 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가격 공시, 다양한 장례식을 지원하는 시설, 업체 정보 제공 등을 제언할 수 있음. 공공의료기관, 시민청 등 공공시설을 연계한 다양한 장례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함.

나. 죽음과 장례에 관한 일상적 준비를 지원하는 사회분위기/문화 조성

-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항없이 업체를 통한 전형적인 의례에 따르게 되지 않도록 본인 또는 가족이 미리 자신의 장례를 생각해보고 준비하고 기획하는 문화의 정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 또는 가족이 원하는 장례를 준비,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및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또한 사전장례의향서 작성 엔딩노트 등,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 등의 활동에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제도적으로 유언제도, 앞서 언급한 신탁, 사후사무처리 등 삶을 마무리하는 데에 제도적 틀을 마련해주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주제어: 장례, 가정의례, 상례, 가부장적 장례문화, 무연고 장례, 고비용 장례문화, 대안적 장례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과 방법 5

 가. 연구 내용 5

 나. 연구 방법 5

II. 장례문화 관련 법제 및 정책 7

 1. 장례문화 관련 우리나라의 주요 법제 및 정책 9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도 운용 9

 나. 장제비 지원 관련 법제 및 관련 제도 운용 27

 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도
 운용 29

 2. 장례 관련 외국 법제 및 정책 사례: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32

 가. 일본의 장례문화의 대안적인 방안 32

 나. 일본의 무연고자 장례 및 비혈연 가족구성원에 의한 장례에
 대한 법제·정책 현황 50

 다. 외국의 공적부조체계에서의 장제비 지원 등의 사례 53

 라. 시사점 57

III. FGI를 통해 본 장례 문화 61

 1. 초점집단인터뷰(FGI) 개요 63

 2. FGI 결과 분석 65

 가.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 65

 나. 장례의 기억 77

 다. 도전받는 장례: 변화하는 의식, 가족 89

라. 바라는 장례, 장례의 의미: 본질의 회복과 다양성의 확대	96
마. 장례의 본질: 다시 장례를 이야기하다	101
바.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의견	103
3. 소결	108
IV. 한국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111
1. 조사 개요	113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3
2. 한국 장례문화의 실태	116
가. 성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6
나. 형식 및 절차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29
3. 대안적인 장례문화 및 정책	142
가. 성 평등한 장례문화 및 관련 정책	142
나. 대안적인 장례 방식 및 관련 정책	150
4. 소결	158
V. 결론 및 정책제언	159
1. 성별 위계와 차별적 구분 없는 장례문화로	161
가. 장례인력 양성과정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커리큘럼 포함	161
나.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연구 및 대안적 장례 콘텐츠 개발	163
다.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 관련 법제의 개선	164
라. 성평등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164
2. 가부장적 혈연가족에서 다양한 개인과 가족으로	165
가.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추모 보장	165
나. 가족관계 변동에 따른 가족범위 확장	166

다. 후견제도의 보완 등-사후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167
3. 의례와 절차 중심의 장례에서 추모와 애도가 있는 장례로	168
가. 고비용 장례문화 개선	168
나. 죽음과 장례에 관한 일상적 준비를 지원하는 사회분위기/문화 조성	169
참고문헌	171
부 록	179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설문지)	181
Abstract	189

표 목 차

〈표 II-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체계 10

〈표 II-2〉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 12

〈표 II-3〉 「건전가정의례준칙」 장례 관련 규정 30

〈표 II-4〉 일본에서의 전통적인 장례 의식의 변화 34

〈표 II-5〉 라이프 엔딩 스테이지에 관한 서포트의 대응 동향과 가능성 36

〈표 II-6〉 엔딩노트 작성 항목 41

〈표 II-7〉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례 ... 42

〈표 II-8〉 일본의 장례의 종류와 내용 45

〈표 II-9〉 ‘생활보호법’,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의 적용관계 51

〈표 III-1〉 FGI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4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4

〈표 IV-2〉 성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대접하는 것은 주로 여성이다 117

〈표 IV-3〉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①장례에서 상주는 남성이 해야한다 ... 120

〈표 IV-4〉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②장례에서 여성은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대접해야 한다 122

〈표 IV-5〉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③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한 남성이 제사를 모셔야 한다 124

〈표 IV-6〉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④제사에 있어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하고 차별하는 문화는 변화해야 한다 126

〈표 IV-7〉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⑤기존의 장례방식은 1인가구, 비혼 증가 등 최근의 가족 변화와 맞지 않는다 128

〈표 IV-8〉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①비용이 들더라도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 133

〈표 IV-9〉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②상복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간소하고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이 좋다 135

〈표 IV-10〉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③장례식장에 화환은 많을수록 좋다 ... 137

〈표 IV-11〉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④장례식은 적어도 3일간 해야 한다 ...	139
〈표 IV-12〉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⑤장례식에는 조문객이 많아야 한다 ...	141
〈표 IV-13〉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시 상주의 필요성	143
〈표 IV-14〉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식의 상주	145
〈표 IV-15〉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147
〈표 V-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중 개정(안) 제언 ...	162
〈표 V-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개정(안)	166

그림 목 차

[그림 II-1]	복인과 상장 등에 대한 설명-확인사항	16
[그림 II-2]	부고 서식	17
[그림 II-3]	장례절차 중 상주의 우선 순위 등	20
[그림 II-4]	현대식 부고 예문 1	21
[그림 II-5]	현대식 부고 예문 2	22
[그림 II-6]	문상객의 옷차림	23
[그림 II-7]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사업의 패키지 계약의 사례	43
[그림 IV-1]	성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①	116
[그림 IV-2]	성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②	118
[그림 IV-3]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①장례에서 상주는 남성이 해야 한다 ..	119
[그림 IV-4]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②장례에서 여성은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대접해야 한다	121
[그림 IV-5]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③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한 남성이 제사를 모셔야 한다	123
[그림 IV-6]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④제사에 있어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하고 차별하는 문화는 변화해야 한다	125
[그림 IV-7]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⑤기존의 장례방식은 1인가구, 비혼 증가 등 최근의 가족 변화와 맞지 않는다	127
[그림 IV-8]	형식 및 절차에 대한 인식①	129
[그림 IV-9]	형식 및 절차에 대한 인식②	130
[그림 IV-10]	형식 및 절차에 대한 인식③	131
[그림 IV-11]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①비용이 들더라도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	132
[그림 IV-12]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②상복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간소하고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이 좋다	134
[그림 IV-13]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③장례식장에 화환은 많을수록 좋다	136

[그림 IV-14]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④장례식은 적어도 3일간 해야 한다	138
[그림 IV-15]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⑤장례식에는 조문객이 많아야 한다	140
[그림 IV-16]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 시 상주의 필요성	142
[그림 IV-17]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식의 상주	144
[그림 IV-18]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146
[그림 IV-19]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성 평등한 장례문화 관련	149
[그림 IV-20] 장례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150
[그림 IV-21] 희망하는 장례 방식: 본인	151
[그림 IV-22] 장례식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 본인	152
[그림 IV-23] 희망하는 장례 방식: 사랑하는 사람·가족	153
[그림 IV-24] 장례식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가족	154
[그림 IV-25] 대안적인 장례 방식에 대한 태도	155
[그림 IV-26]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장례서비스 관련	156
[그림 IV-27]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다양한 장례문화 관련	157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과 방법	5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정의례 중에서 특히 장례는 장례절차의 방식과 준비를 고인의 죽음 전에 가족들이 미리 상의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가부장적 절차나, 성차별적 문화와 주변화된 여성의 역할에 대해 가족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장례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성평등 문화의 수준과 동떨어져 모든 절차와 의식에 있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성은 주변화되는 모습으로 가부장제가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상주, 장례 주관 등은 남성이 주가 되며, 영정사진을 드는 역할도 남자인 장손이 주가 되고, 손님을 맞는 역할도 남성이 주(主)가 되고 여성은 주변적인 역할, 주로 음식 대접 등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한 역할에 그치는 모습이 나타난다.¹⁾ 장례식장의 유족 표기도 아들 사위 등 남성을 먼저 표기하고, 며느리, 딸 등은 뒤에 표기되거나 다 표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²⁾

- 1) 국민일보. 2018. “여자는 왜 ‘상주’가 될 수 없나?” 남성중심 장례문화에 대한 반기”. 2018년 8월 8일자 기사. <http://m.kmib.co.kr/view.asp?arcid=0012587007#RedyAi>, 최종검색일 2019.5.21. 참조
- 2) 여성가족부가 2018년 대국민 공모로 ‘함께해요! 내 삶을 바꾸는 여성·청소년·가족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서의 성 불평등 개선]이 제안되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위 제안에서는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에는 아직도 딸 또는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장례식 안내판, 비석 등에 출생 순이 아닌 아들 딸 순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례 문화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8. “일상생활 속 정책개선을 위한 국민 생각이 가득”. 2018년 7월 17일자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783>, 최종검색일 2019.4.10.)

4 ■ 가부장적 가정의례 문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모습과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고 가족 문화와 가치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으나, 남성과 아들 중심의 장례 절차가 온전해 보이는 형식적 경직성은 변화하는 우리 사회와 가족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사실상 장례업체와 그에 소속된 장례지도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례산업의 발달로 장례 관련 업체들이 절차와 방식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유족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예컨대 전통식, 종교식 등의 선택지에 따른 결정만을 할 뿐 그 이후의 절차는 장례업체에 의해 주도되어 가부장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선을 위하여서는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의 문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산업화된 장례문화라는 현상 속에 문제되는 지점과 대안적 방향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장례의식은 가부장적 성격을 형식과 의례를 통해 가족 내 젠더불평등을 유지시키고 재확인시키는 기재로 작용하여 왔음에도 전통과 관습 그리고 사적인 가족 문화라는 이유로 정책적, 제도적으로 방관 또는 무관심하게 방관되거나 소극적으로 지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장례 문화가 우리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고 있는지, 또한 변화하는 가족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례 산업에서 매뉴얼화 되어 나타나는 현실과 장례 등 관련 법제가 전제하는 프레임과 맥락,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젠더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장례문화를 젠더 관점 및 가족 변화의 측면에서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장례문화 관련 법제 및 정책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그리고 참조할 만한 해외 사례를 우리와 같은 동북아시아 문화권의 국가들인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의 장례문화와 그에 대한 평가, 대안 등에 관한 의견수렴과 인식조사의 문항구성을 위해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한국의 장례문화의 실태와 대안적인 장례문화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의 개선 및 가족 변화에 대응한 장례 문화의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나.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법제 등을 검토한다.

둘째, 장례에 있어서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문화 경험, 현재 한국의 장례문화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정책욕구 등의 파악과, 인식조사의 문항구성을 위해 최근 3~5년간 가족이나 친지의 장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 관련 활동가 약 3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셋째, 일반 성인을 대상(약 1,300명, 20대~50대)으로 한국 장례문화의 실태와 대안적 장례문화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넷째, 가족·젠더 전문가, 장례지도학 내지 생사학 등 관련 학계전문가, 장례 실무 전문가, 대안 장례 등 관련 활동가등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이를 연구에 반영한다.

다섯째, 착수, 중간, 결과 보고 세미나를 통하여 전문가 및 관련 담당부처의 심의의견을 연구에 반영한다.

II

장례문화 관련 법제 및 정책

-
1. 장례문화 관련 우리나라의 주요 법제 및 정책 9
 2. 장례 관련 외국 법제 및 정책 사례: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32

II

장례문화 관련 법제 및 정책

1. 장례문화 관련 우리나라의 주요 법제 및 정책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도 운용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요

장례와 관련하여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구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장사법 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다.

장사법은 1961년 제정된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제정 1961.12.5. 법률 제799호)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동 법은 2000년 전문 개정에 의하여 현재의 법명을 가지게 된다. 장사법은 전부개정과 수차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개정은 매장 중심의 장사방식에서 화장, 자연장 등의 현대화로 변화, 위생, 장례산업 및 관련 자격의 관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2011년 개정(일부개정 2011.8.4. 법률 제11008호)에서는 장례지도사의 국가자격증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기준 등이 마련되었다.

〈표 II-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체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76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2장 매장· 화장· 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제8조(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9조(매장· 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10조(자연장의 방법) 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제3장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15조(사설 화장시설 등의 설치)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22조(묘적부의 기록· 관리)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관리비의 부과) 제23조의2(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 관리비의 신고 등)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제5장 장례식장영업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 운영)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9조의2(장례지도사)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제29조의6(청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76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6장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3조(청문)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과징금 처분) 제36조(비용의 보조) 제37조(검사 및 보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제43조(이행강제금)
부칙 <제16376호, 2019.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469&efYd=20190423#0000> 최종검색일 2019.5.20. 검색결과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장사법에서 장례문화에 연결되는 지점은 특히 장례산업 및 관련 자격의 관리, 교육 등의 기준 관련 규정들(장사법 제5장)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장사법 제33조의2에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동법 제33조의4에 장사지원센터 등의 설치 근거 규정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무연고 장례와 관련하여 제2조(정의) 제16호에 연고자 정의 규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무연고시신 등의 처리, 유류금품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관련 주요 규정 및 제도 운용과 정책 검토

가) 장례지도사 및 장사시설종사 인력 관리·교육

(1) 관련 주요 근거 규정

장사법 제29조의2는 국가자격증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장례지도사 자격 부여·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장사법 제29조의2는 시·도지사로서 하역금 동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에서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과정과 내용을 장사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고 있다.

장사법 시행규칙 별표2 중 일부인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 및 내용을 발췌·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 강의 (150 시간) / 실기 연습 (100 시간)	장례 상담	유족상담	상담방법이해 상담기법과 대화방법 실제	4	4
		장례상담 절차	장례절차(일반/종교별 등) 계약상담 및 진행 장례용품 안내 및 상담	8	8
	장사 시설 관리	장사시설	시설의 종류 및 정의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장사시설의 기능 및 역할	6	
		장례식장 실무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관리 장례식장 실무 이해	4	4
	위생 관리	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	적출물, 폐기물 처리관리 소독제의 특성 및 사용방법 안치염습실 위생관리 및 소독 안치염습실 관련 장비 및 기구의 사용법 및 소독방법	6	8
		시신의 위생관리	인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사후 변화 과정 시신 관련 각종 질병감염 방지 및 위생적 시신처리 방법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이해 감염물질 및 위해물질 대처방안	8	12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연습 및 장법 실습	수시 및 연습	수시절차 및 방법 연습절차 및 방법		5	30
	발인 및 운구	운구절차 및 방법 운구 및 종교에 따른 장례행렬 준비		5	16
공중 보건	총론	공중보건의 개념		4	
	건강과 질병	역학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산업보건 및 직업성 질환		8	
	예방대책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환관리 종사자의 질병예방대책		10	
장례학 개론	장례의 의미와 기능	장례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 장례의 역사적 변천		8	
	상장제의례 이해	전통상제의례 현대 장례의 이해와 절차 종교별 장례와 제례		15	
	상장의례의 실제	상장의례 실습 종교별 상장의례 안내			6
	종사자 직업윤리	직업윤리 종사자의 역할 및 자세		4	
장사 법규	장사관련 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5	
	그 밖의 관련 법규 안내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규 소개		12	
장사 행정	장사행정절차	장사제도 등 행정안내 장사관련 전문용어		10	
	장사행정실제	인터넷 화장예약 방법 등 안내 사고사 및 무연고 시신처리 행정실습		8	12
소계				① 150	② 100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현장 실습 (50시간)	장례식장 실습		장례상담 및 장사행정 연습 및 입관 등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례지도, 빈소설치 등	50	
	소계			③ 50	
총계(① + ② + ③)				300	

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269&efYd=20190101#0000>, 최종검색일 2019.5.20. 별표2에서 일부 발췌

한편, 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장사법 제33조의4는 장사지원센터의 업무에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장사법 제33조의4 제1항 제4호)하고 있다.

(2) 관련 제도 운용 및 정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례문화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밀접한 접점이 있게 되는 장례지도사는 국가자격증제도로 운용되어(장사법 제29조의2), 장사법령의 규정(장사법 제29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증이 교부되고 있다.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과 내용에는 앞의 표(장사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통상제의례, 현대 장례의 이해와 절차, 종교별 장례와 제례” 및 상례 실습 등 장례의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장례상담 교육과정의 내용에는 “장례절차(일반/종교별 등)”와 “장례용품 안내 및 상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례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 또는 장례 경험이 많지 않는 한, 일상에서 장례절차 내지 장례문화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거나 숙고하지 않은 채, 준비하지 못하고 경황없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장례업체(병원 장례식장 연계 업체나 상조업체) 등 상업화된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표준화된 교육과정과내용을 통하여 교육받고 자격증을 부여받은 장례지도사 및 장사

시설 종사자들로부터 장례절차와 의례에 대한 안내 또는 지도를 받아가며 장례를 치르게 되므로 우리의 일상의 장례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 장례지도사가 국가자격화 되고, 교육 과정과 내용이 법제에 마련된 다음해인 2012년 법제의 운용상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내용의 표준으로 정책적 가이드가 되는 보건복지부의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표준교육교재³⁾가 발행된 바 있다.

한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장사법 제33조의4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장사시설종사인력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공설, 법인 장사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 장사시설의 범위 : 화장시설, 묘지, 봉안당, 자연장지)”⁴⁾이며 당일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목은 크게 장사법규 및 정책, 종사자 윤리, 장사시설의 관리운영, 유가족 상담 항목 내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⁵⁾ 또한 동 규정에 근거하여 사각지대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출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장사법 제29조 장례식장 영업신고 상의 영업자 및 종사자(6개월 이상 상시종사자, 위탁, 파견 종사자도 교육대상에 포함)로서, 장사정책, 직업윤리, 장례식장 위생 및 시신위생관리의 필수과목에 상장례문화, 유가족심리 등의 선택과목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⁶⁾

(3) 성인지 관점에서의 검토

위에서 살펴본 장사법 및 동 시행규칙 별표2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관련 규정에는 성인지적 관점 및 가족의 변화, 가족다양화에 따른 장례지도 교육에 대한 고려는 담겨 있지 않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표준교육

3) 보건복지부. 2012.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표준교육교재.(보건복지부의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교재는 2012년 이후의 발행본은 찾아 볼 수 없었음.)

4)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 교육과정 소개. http://www.kfcpi.or.kr/edu/edu_intro.do 최종검색일 2019.10.30.

5) 출처 및 상세사항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 교육과정 소개. http://www.kfcpi.or.kr/edu/edu_intro.do 최종검색일 2019.10.30.

6) 출처 및 상세사항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 교육과정 소개. http://www.kfcpi.or.kr/edu/edu_intro.do 최종검색일 2019.10.30.

교재)에는 현대의 장례절차 내용에 있어서도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 다양성과 개인화라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장례문화의 방향성에는 아직 인식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현대적인 장례 절차를 간소화의 관점에서 주로 접근해왔을 뿐, 간소화 과정에서도 남아 있는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한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실상 사문화된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관련 법령 내용이 장사법령 및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표준교육교재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운영상 실재 재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살펴보면, 상복(喪服)과 상장(喪章)에 있어서 유래가 불명한 성별과 위계의 구분을 표준교육교재는 비판 없이 제시하고 있다.

“현대 상복인 경우 남자는 검은 양복을 입고 왼쪽 팔에 검은 띠를 두른 완장을 차서 상주(喪主)임을 구분하고 여자의 경우는 머리와 가슴에 상장을 달아 구분한다.”⁸⁾

【확 인 사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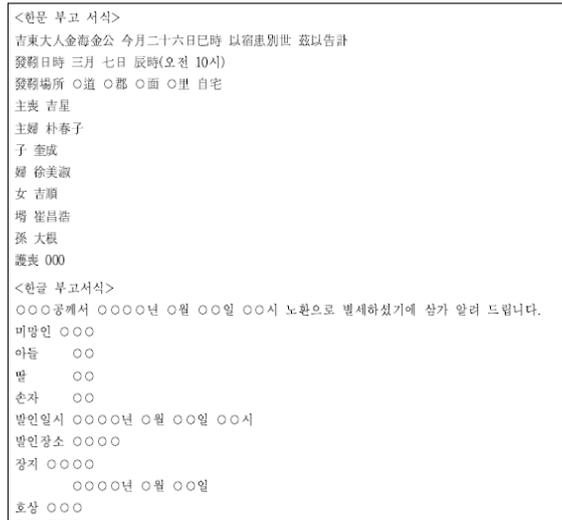
- ◆ 완장(남자 착용) : 완장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가정의례준칙이 나오면서 굴건제복 대신 상주임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완장은 삼베로 만들어졌으며 검은 색의 줄이 그어져 있으며, 직제와 비속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두 줄과 한 줄 그리고 줄이 없는 완장을 사용하며, 착용하는 위치에 따라 남자상에는 좌측에 여자상에는 우측에 완장을 착용한다.
 - ① 두줄 : 아들과 사위, 아들이 없을 시에는 장손이 착용 한다
 - ② 한줄 : 기혼인 복인(반드시 상복을 입지 않고 완장만 착용을 해도 복인이 된다.)
 - ③ 무줄 : 미혼인 복인(주로 손자들이 착용하게 된다)
- ◆ 복인 : 부(父)계 8촌, 모(母)계 4촌까지로 한다.
- ◆ 상장(喪章) : 장례를 마친 후 상을 당했다는 표시를 하는 것으로 남자는 삼베로 만든 리본을 왼쪽 가슴에 부착하고 여자는 무명천으로 만든 리본(머리끈)을, 남자의 상일 경우 좌측머리, 여자의 상일 경우 우측머리 부분에 낀다. 상장은 장례를 마친 후 탈상 때까지 직제가족만 착용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2012.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표준교육교재. 252면

[그림 II-1] 복인과 상장 등에 대한 설명-확인사항

7) 보건복지부. 2012.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표준교육교재.(보건복지부의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교재는 2012년 이후의 발행본은 찾아 볼 수 없었음.)
 8) 완장은 우리 전통이 아닌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지적(임준환·홍순기(2016).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 꿈결. 55면: 경향신문. 2019. “삼베수의·유족 완장 ‘일제 잔재’... 서울시, 우리 장례문화 조명”. 2018년 12월 31일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311131001&code=940100 최종검색일 2019.5.20.)

부고 서식(예)에 있어 아들과 딸을 차등 순위로 예시한 부분도 눈에 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12.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표준교육교재. 52면

[그림 II-2] 부고 서식

아들이 딸보다 우선하고, 며느리가 딸보다 우선에 놓이는 순위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문화의 잔재이다.

발인시 영정을 드는 사람에 대한 설명도 “영정 1명(말사위, 장손)”⁹⁾으로 남성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장사시설종사인력 교육에 있어서도, 선택과목에 상장례문화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나,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커리큘럼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주로 “장사”와 위생, 직업윤리 등의 내용이 중심이 된 교육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다 보니 현대의 성평등의식과 가족의 다양화, 개인화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대안적 선택의 모색이나 열린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는 구조가 정형화된 장례표준으로 제시되고 교육되어 온 것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법규정은 몰성적이고, 법제의 운용 및 정책에 있어서는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9) 보건복지부. 2012.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표준교육교재. 252면

나) 장례문화 관련 연구·교육·홍보

(1) 관련 주요 근거 규정

장사법 제33조의4는 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장사지원센터의 업무에는 “장사정책·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¹⁰⁾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이하 “장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2. 국내외 재해·재난 등의 발생 시 사망자 장례지원
3. 장사정책·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4.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5.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6.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업무

(이하 생략)

(2) 관련 제도 운용 및 정책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위 법규를 근거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설치되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¹¹⁾을 통하여 장례 및 장사 관련 정보접근성 및 시설 이용 등이 편리해진 성과가 있었다. 장례정책 및 장례문화의 연구에 있어서는 그동안 좁은 국토의 이용문제로 장사 방식에 있어 매장방식에서 화장 방식으로의 변화, 봉안당 또는 수목장과 같은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도입 보급이 주요 내용이 되어 왔다. 그리하여 장례문화교육과 장례문화홍보에 있어서 “친자연적 장례 문화 확산·활성화”와 “허례허식 배제, 고인 중심의 품위 있는 검소한 장례식(“작은 장례”) 정착”이 중심이 되고 있다.¹²⁾

10) 동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은 살펴본 바와 같다.

11)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haneul.go.kr/portal/index.do> 최종검색일 2019.10.30.

12)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장례문화홍보소개. <http://www.kfcpi.or.kr/pro>

또한 고령 사회에 대응한 존엄한 죽음, 사후 장례의 준비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움직임도 보인다. 그리하여 자신이 원하는 장례 방법과 절차를 작성하고 가족과 상의하여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엔딩노트의 성격을 가지는 “장수행복노트”의 작성 양식례를 안내 보급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¹³⁾

(3) 성인지 관점에서의 검토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친환경적인 장례문화와, 고인 중심의 품위 있고 검소한 장례에의 관심과 정책은 의미 있다. 또한 자신의 장례 방식과 절차를 준비하고 작성하여 가족과 상의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며 가치가 있다. 그러나 간소한 장례와 친환경적 장례방식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

장례문화 정책에 있어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의례와 가족 다양성 및 개인화의 변화에 대응한 장례문화의 개선 부분에 대하여서는 규정에도 정책에도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장례문화에 있어서도 위 관련 근거 규정의 업무 수행 사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친자연적 장례 문화의 도입 보급”에 있어서는 정책적 적극성이 규정에 반영되어 있으나 장례 문화의 성 불평등성, 가족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문제의식 부족에서 비롯한 성 불평등한 구시대적 콘텐츠의 답습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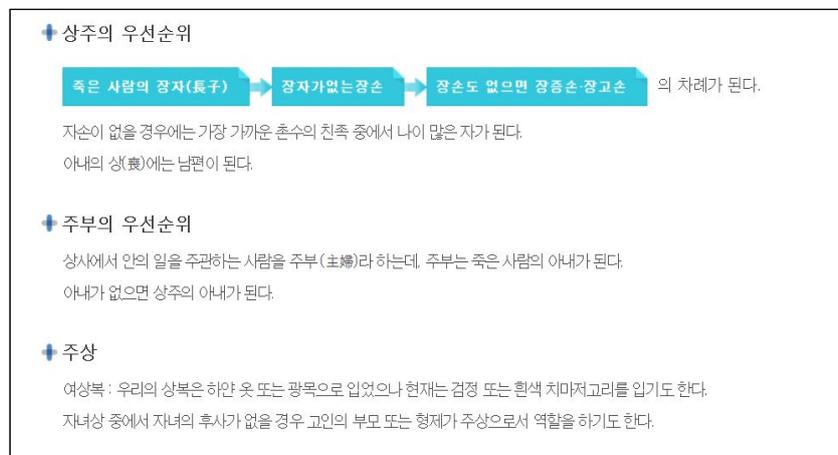
앞서 장례지도사 표준교재에서도 그러했으나 소관부처와 산하 기관의 일반 국민에 대한 장례문화와 절차에 대한 안내에 있어서도 성평등 인식은 결여되어 있다.

장자·장손 중심의 상주(上主)의 개념과 우선 순위를 안내하고, 여성은 “안”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주부(主婦)는 죽은 사람의 아내, 상주의 아내 순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아내의 상에는 남편이 상주가 되지만, 남편

mote/promote_intro.do 최종검색일 2019.10.30.

13)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장수행복노트. http://www.kfcp.or.kr/promote/jangsoo_list.do#eyJzZXJ2aWNlZG12aWQjOjJCMDAwMDAwMDIxIn0= 최종 검색일 2019.10.30

의 상에는 상주는 장자가, 아내는 주부로서 상사(喪事)에서 “안”의 일을 주관하는 역할로 설명한다. 이는 불합리하게 성 불평등한 역할과 지위의 분리 및 여성은 “안”의 일을 맡아야 한다는 가부장제 문화의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의 전형적인 예이다.



출처: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장례절차. http://www.kfcpi.or.kr/infoMadang/funeral_info.do?cid=c124 최종검색일 2019.10.30.에서 일부를 캡처하여 발췌함.

[그림 II-3] 장례절차 중 상주의 우선 순위 등

또한 부고의 작성례를 안내함에 있어서도 유족을 기재함에 있어 가부장적 위계에 따른 남성·부계 우선순위로 표기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 현대식 부고 예문1.

訃 告

○○회사 ○○○社長님께서 2010年 ○月 ○○日 ○時 ○○分
 숙환으로 別世하셨습니다.(享年○○歲)
 生前에 社長님께 베풀어주신 厚意에 깊은 감사드리오며 다음과
 같이 永訣式을 거행하게 되었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發 軔 日 時 : 2010年○月○日오전 ○시 ○○분
 場 所 : ○○병원 ○○호실
 場 地 : ○○도 ○○시 ○○면 산 17번지 선영

2010年 ○月 ○日
 장례위원장 ○○○

主 婦 : ○○○	孫 : ○○
長 男 : ○○	孫 女 : ○○
次 男 : ○○	○○
長 女 : ○○	
子 婦 : ○○○	
壻 : ○○○	

연락처 : 00-000-0000
 (부의금 및 조화는 정중히 사절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부고작성요령 현대식 부고.
<http://www.ehaneul.go.kr/portal/fnlInfo/info.do?id=M230101005> 최종검색
 일 2019.10.30.

[그림 II-4] 현대식 부고 예문 1



출처: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 문상객의 옷차림. http://www.kfcpi.or.kr/infoMadang/funeral_info.do?cid=c113 최종검색일 2019.10.30.에서 일부를 캡처하여 발췌함.

[그림 II-6] 문상객의 옷차림

다) 무연고 장례

(1) 관련 주요 규정

최근의 가족의 변화와 고령화에 따라 무연고 장례 문제가 이슈이다. 장사법에서는 제2조(정의) 제16호에서 연고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무연고시신의 처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등으로 무연고시신처리 등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생략)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 바. 형제·자매
-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 1. 28.]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8. 3., 2015. 7. 20., 2017. 5. 29.>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 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의 장
[제2조에서 이동 <2015. 7. 20.>]

(2) 성인지 관점에서의 검토

최근 1인가구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고독사의 증가와 무연고 장례의 이슈는 당면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무연고 장례의 문제는 그 자체가 1인 가구 증가나 가족 구성의 변화, 고령화, 가족단절 등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어 가족 변화 이슈와 관련이 있다. 개인화·가족 관계의 다양화라는 사회 변화는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로 무연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도 연고자가 아니어서 무연고 시신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배제의 경우가 모두 발생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이 이슈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법률혼과 혈연, 기관 중심의 연고자 규정은 사실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 구성과 제도 밖의 친밀한 관계의 당사자들이 장례를 치르기 곤란한 사례들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⁴⁾ 최근 보도된 사실혼 배우자의 무연고 장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법적 부부가 아니라서 아내의 시신을 내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대요.”

지난해 5월 A씨는 아내인 강모씨를 떠나보냈다.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어도 20여년 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였다. 그러나 A씨는 아내의 장례를 치러주지 못했다.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씨가 사망한 병원에서 시신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관할 구청에서는 강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결국 강씨는 ‘무연고 사망자’가 됐다. A씨는 “장례만 치러줬어도 마음이 가벼웠을 것”이라고 했다.¹⁵⁾

14) 경남신문. 2019. “[기획] 죽음까지 외로운 삶 늘어나는 고독사 (하) 대책 “법적 연고자 외에도 장례 치르도록 해야” 현행법상 가족만 장례연고자 허용”. 2019년 5월 6일자 기사.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85910> 최종검색일: 2019.5.20.

관련 법규의 운용에 있어서의 문제를 살펴보면, 장사법 제2조제16호아목 즉,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연고자이지만, 장사법상 연고자의 권리의무를 제2조 제16호 각목의 순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선순위 친족이 시신인수를 거부하고 무연고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후순위 연고자는 시신을 인수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한다. “현재 시신위임서를 한 사람에게에만 받을지 혹은 연고자가 여러 명 있을 때 모두에게 받을지 여부는 무연고사망자 관련 업무 실무 공무원의 재량행위”¹⁵⁾라고 한다. 따라서 실무 담당공무원이 선순위 연고자로부터 시신위임서를 받고 무연고 시신처리를 하면, 사실혼 배우자나 비혼동거자가 위 규정 아목에 해당하는 연고자로서 시신을 인수해서 장례를 치르고자 하여도, 무연고 장례로 처리되는 것이다.

둘째, 장례를 치르기 위한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망신고 역시 동거자 등이 할 수는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등에 있어 가족, 친족이 아닌 비혼 동거관계자의 접근 한계가 있어¹⁷⁾, 실무 현장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한 가족, 친족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되는 한계가 있다.

결국, 법률혼·혈연 중심의 규정 및 실무 현장에서의 법운용의 문제는 사망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다양한 가족 구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애도와 장례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보장해주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15) 한국경제. 2019. “20년 같이 살았는데 혼인신고 안했다고 아내 장례도 못 치렀습니다”. 2019년 9월 21일자 기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203861i> 최종검색일 2019.9.22.

16) 박진옥·박은순·박지숙·양희철·정현경. 2019.8.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 결정권 한일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 연구. 법무법인(유)화우·(재)화우공익재단. 34면.

17) 의료법상 사망진단서는 사망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 사망한 환자의 형제자매에게 교부·발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참조)

나. 장제비 지원 관련 법제 및 관련 제도 운용

1)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상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제도가 있었으나(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법령 개정(대통령령 제20461호, 2007.12.27. 공포)으로 2008.1.1. 이후 사망자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장제비 지급 제도는 폐지되었다.¹⁸⁾

현행 우리 제도상 장제비의 지원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및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법 제14조는 장제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61호, 2007.12.27.공포) 제개정 이유에 의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제비는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과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절감되는 재원을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임.”을 개정 이유로 하고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61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2083&ancYd=20071227&ancNo=20461&efYd=2008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최종검색일 2019.10.30.

정 2015. 4. 2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긴급지원 대상자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긴급복지 장제비로 1인당 7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¹⁹⁾

2) 검토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제급여제도가 폐지된 이후 소득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장제비 지원 및 긴급복지 장제비 지급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제도는 있으나 무연고 장례 등 현장에서는 장제비의 부담으로 가족들이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가족 관계의 변화로, 자신의 장례와 사후의 준비를 공적 체계가 아닌 가족의 부담이나 사적으로 업체의 상품에 의존해야 하는 제한된 선택지는, 장례를 개인과 가족의 장례는 획일화된 상품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재원의 문제는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장례는 누구의 부담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19) 출처 및 관련 상세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searchIntClId=&searchCnDivCd=&welInfSno=309&searchGb=&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Id=&pageGb=&pageUnit=10&pageIndex=1&domainName=&cardListTypeCd=&welSrvTypeCd=&age=&hirkQestId=&qestCric=&qestDsr=&searchCondition=&searchKeyword=&intClId=®ion1=®ion2=&occupation=&occupation4=&pref=&career=&education=®Date=&searchGbn=&key1=309&stsfCn=> 최종검색일 2019.10.30.

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도 운용

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의례법”이라 함)에서는 가정의례의 정의에 상례(喪禮)를 포함시키고(가정의례법 제2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장에 장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가정의례법은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그리고 ‘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강화’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²⁰⁾. 가정의례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가정의례 관련 규제를 폐지”²¹⁾하고 1999년 제정(1999.2.8, 법률 제5837호)된 이후 4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999.2.8, 법률 제5837호)됨에 따라 성년례·혼례·상례·제례 및 수연례 등의 내용과 그 의식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²²⁾하기 위하여 1999년 제정되었으며, 최근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에 따른 개정²³⁾을 포함하여 총 3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2) 관련 주요 규정 및 제도 운용과 정책 검토

가) 관련 주요 규정

건전가정의례준칙 상 장례 관련 규정 및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20) 박복순·김영란·정수연·박기령. 2016. 건전혼례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여성가족부. 43면.
- 21)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628&ancYd=19990208&ancNo=05837&efYd=1999080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최종검색일 2019.5.20.
- 22)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232&ancYd=19990831&ancNo=16544&efYd=1999083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최종검색일 2019.5.20.
- 23)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표 II-3〉 「건전가정의례준칙」 장례 관련 규정

조항	내용
제2조(정의) 제3호, 제6호	3. “상례(喪禮)”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6. “주상(主喪)”이란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장 상례	
제9조(상례)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靨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발인제)	① 발인제는 영구(靈柩: 시신을 담은 관)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 <개정 2019. 7. 2.> ②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
제11조(위령제)	제11조(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개정 2019. 7. 2.> 1. 매장의 경우: 봉분 조성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한다. 2. 화장의 경우: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제1호에 준하는 절차로 한다.
제12조(장사날)	장사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9. 7. 2.> [제목개정 2019. 7. 2.]
제13조(상기)	①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사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7. 2.> ② 상기 중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궤연(궤筵)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
제14조(상복등)	①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징(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사날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9. 7. 2.>
제15조(상제)	제15조(상제) ①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된다. <개정 2019. 7. 2.> ②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③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
제16조(부고)	신문에 부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구)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인제의 식순등)	발인제의 식순 및 상징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건전가정의례준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9607&efYd=20190702#0000> 최종검색일 2019.10.30.에서 발췌 재구성

나) 관련 제도 운용 및 정책

가정의례법 및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법제라 할 수 있다. 사문화된 법제로서 장례와 관련하여서는 법령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동 법령에 근거하여 제도 운용이나 정책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검토

살펴본 바와 같이 동법 및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사문화된 법제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를 조장하거나 강화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가정의례준칙상의 장례 관련 규정들에는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주상(主喪)의 정의 규정(가정의례준칙 제2조 제6호)은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배치되는 주(主)의 개념을 법에 둬으로써 주상(主喪)과 주상(主喪)이 아닌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 간에 불필요한 위계를 만든다. 더욱이 주상(主喪)을 배우자나 장자(가정의례준칙 제15조 제2항)로 규정함으로써, 그 자격을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차별적인 위계를 두어 차별과 소외감을 야기한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호주-상주(주상(主喪))-계주(제사주재자)로 연결되는 가부장제의 잔재가 법제에 명시적인 규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시대에 뒤떨어진 의례(장례)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가족 구성과 관계의 다양화·개인화되는 사회에 조응하는 다양한 방식의 대안적 장례나 더 간소한 장례문화를 모색하는 시대의 트렌드와 욕구에 전혀 맞지 않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2. 장례 관련 외국 법제 및 정책 사례: 일본과 대만으로 중심으로

가. 일본의 장례문화의 대안적인 방안

1) 일본 가족변화 및 고령화에 대한 개관

현재 일본의 가족을 둘러싼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핵가족화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일본사회에서는 유교윤리에 근거하는 가부장제 가족의 전통이 남아 있었으며, ‘이에(家)’ 제도라는 전통적인 가족시스템이 존재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시스템에서는 장남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모의 뒤를 잇고 가족 전체의 돌봄과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본의 메이지 시대(1869년-1912년)에 확립된 일본의 가부장적인 ‘이에(家)’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²⁴⁾ 따라서 일본의 가부장적인 전통의 장례문화는 일본 가족 내에서의 돌봄 및 부양의무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일본은 이미 메이지 시대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이에 제도”에서 가독(家督)에 해당하는 호주권을 장남이 가지고 있으며, 이 장남이 상속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호주인 부친이 사망을 하면 상주를 맡는 것은 당연히 장남이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신 헌법이 성립하였고 민법과 가족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래의 가부장제를 지탱하던 “이에 제도”가 붕괴되었다. 이에 따라 장례에서 장남이라는 남성에 대한 상주 역할, 즉 장례집행자로서의 남성의 역할과 관행은 과거에 비하여 서서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²⁵⁾

이에 더불어 일본 사회는 현재 세계에서도 유수의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변화하여 고령단독세대의 증가²⁶⁾, 고령자의 고

24) 朴修慶. 2015. 「日本の介護労働におけるジェンダーの特性に関する研究-介護労働のジェンダーフリー化を中心に-」『일본연구』 제6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37면.

25) 그 일례가 일본에서 장례에서의 상주는 누구라도 맡을 수 있는데, 남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인 아내도 상주를 맡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장례 문화에서의 성차별적인 요소는 이전부터 개선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26) 일본의 고령단독세대 현황은 内閣府. 2019. 『令和元年高齢社会白書』. 9면 https://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9/zenbun/pdf/1s1s_03.pdf

독사 등의 증가²⁷⁾로 고령자의 죽음과 장례에는 큰 변혁을 가져왔다.

2) 일본의 장례문화의 변화

가) 가족공동체의 장례문화에서 개인화 및 사화(私化)로의 의식 변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 사회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였던 “이에(家)” 제도에서는 장남은 부모에 대한 부양 및 돌봄과 장례, 더 나아가 조상의 가족 묘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이에(家)” 제도는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부부 중심의 핵가족 이념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촌락공동체에서는 장묘 등의 제사는 유족이 책임지는 관습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것은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행해 왔다.²⁸⁾ 하지만, 핵가족의 확산은 미혼화, 만혼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이어져 가족의 개인화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러한 가족구조와 가족의식의 변화는 고령자의 돌봄과 장례의 환경도 변화시켰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장례의 ‘개인화’ 또는 ‘사사화(私事化)’의 현상이 보이게 되었다.²⁹⁾

또한 도시화와 함께 장례의 사사화에 장의업자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만, 장묘는 여전히 가족의 사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러나 최근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는 움직임이 새롭게 생겨나 당사자의 의식 변화에 더불어, 장묘의 가족대체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다.³⁰⁾

최종검색일 2019.9.20. 참조.

- 27) 사인불명의 급성사나 사고로 사망한 자의 검색, 해부를 하는 도쿄도 감찰의무원이 공표하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도쿄 23구내의 혼자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택에서 사망한 수는 2015년에 3,217명인데, 이는 2003년의 1,451명에 비하여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内閣府. 2017. 『平成27年版高齢社会白書. https://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7/html/zenbun/s1_2_6.html 최종검색일 2019.09.20.
- 28) 이미에. 2014. “일본의 고령화와 장례·묘지 문제-지연과 혈연 공동체에서 개인의 문제로-”. 인문사. 16면.
- 29) 이미에. 2014. “일본의 고령화와 장례·묘지 문제-지연과 혈연 공동체에서 개인의 문제로-”. 인문사. 16-17면 참조.
- 30) 이미에. 2014. “일본의 고령화와 장례·묘지 문제-지연과 혈연 공동체에서 개인의 문제로-”. 인문사. 27면 참조.

〈표 II-4〉 일본에서의 전통적인 장례 의식의 변화

	전통적 의례	현대적 경향
조문객	혈연·지연·사연(社緣)	고인을 알고 친한 친척만 → 사화
단위	집단으로서의 이에(家)	개인(고인) → 개인화
종교	주로 불교	전통적인 종교의례를 생략 → 탈종교화

출처: 井上治代. 2007. 「「死者儀礼」のいま」『葬儀のかたち: 死者供用のあり方を先祖を考える』. 佼成出版社, 9頁.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개인화(個人化: individualization)와 사화(私化: privatization)는 도시 지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지역에서는 장례에 고인과 면식이 없거나 고인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공유하지 않는 자의 조문을 거부하고, 고인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만으로 장례를 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사화). 또한 ‘자신다운’ 장례를 지향하게 되면서 집단으로서의 이에(家)의 의례에서 개인이 단위의 의례로 이행하는 추세이다(개인화). 그리고 종교의례는 생략하는 탈종교화의 경향도 보인다.³¹⁾

나) 정부차원의 대응

일본 사회에서 2005년은 연간 사망 수가 처음으로 출생 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기록된 해로, 그 이후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본격적인 장수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도시화와 지방의 과소화, 가족형태의 변용 등을 비롯한 일본의 사회구조와 생활환경 등에 관한 다양한 환경변화를 배경으로 국민 일반의 가치관 등이 다양해지고 그 의식과 행동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본 정부는 라이프 엔딩, 즉 생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중요한 의식변화의 중요성 등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다.³²⁾

31) 井上治代. 2007. 「「死者儀礼」のいま」『葬儀のかたち: 死者供用のあり方を先祖を考える』. 佼成出版社. 9頁.

32) 経済産業省. 2012.4. 『安心と信頼のある「ライフエンディング・ステージ」の創出に向けた普及開発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経済産業省商務情報政策局サービス政策課 サービス産業室. 1頁. <https://www.asagao.or.jp/sougi/link/keisan-houkoku.pdf> 최종검색일 2019.09.21.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11년 8월 10일에 안심과 신뢰가 있는 ‘라이프 엔딩 스테이지’의 창출을 위하여~새로운 ‘유대’와 생활에 밀접한 ‘라이프 엔딩 산업’의 구축~을 제목으로 하는 보고서(2010년도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이 조사연구에서는 라이프 스테이지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영역이 있다고 가정하고 연구회를 설치하여 검토를 거듭하였고, 이 영역을 ‘라이프 엔딩 스테이지(life ending stage)’라고 하여 그 바람직한 모습을 등을 제시하였다. 이 라이프 엔딩 스테이지에서는 사회 전체가 서로 지탱하는 것이 필요한 영역으로 이러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기대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³³⁾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기본적인 견해로서, ‘라이프 엔딩 스테이지(life ending stage)’의 개념으로는 인생의 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테이지의 마지막 장에 규정되는 영역을 주요 범위로 하는 것으로, 그 개념은 ① 인생의 종말과 사별 후에 대비한 사전준비(생전부터의 준비)를 하는 것<행동>, ② 라이프 엔드와 그 후의 유족 등에 의한 생활과 재구축의 시기<시간>의 양쪽을 포함한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³⁴⁾

33) 経済産業省. 2012.4. 『安心と信頼のある「ライフエンディング・ステージ」の創出に向けた普及開発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経済産業省商務情報政策局サービス政策課 サービス産業室. 1頁. <https://www.asagao.or.jp/sougi/link/keisan-houkoku.pdf> 최종검색일 2019.09.21.

2010년도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제언의 한 가지로 라이프 엔드(life end)와 그 후의 ‘준비’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한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발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 제언은 죽음을 금기시하지 않고 국민에게 있어 이 스테이지에서 발상을 전환하고 자유로운 의사 표시에 근거로 한 행동변용과 자주적인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34) 経済産業省. 2012.4. 『安心と信頼のある「ライフエンディング・ステージ」の創出に向けた普及開発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経済産業省商務情報政策局サービス政策課 サービス産業室. 4頁. <https://www.asagao.or.jp/sougi/link/keisan-houkoku.pdf> 최종검색일 2019.09.21.

〈표 II-5〉 라이프 엔딩 스테이지에 관한 서포트의 대응 동향과 가능성

라이프 스테이지	라이프 스테이지에서의 과제 및 니즈 등	서포트의 유형	주요한 특징으로 생각되는 서포트의 제공 가치
사전 준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에 대해 금기시 하는 의식이 떨어져 사전준비에 대한 저항이 없어지고 있음 - 의지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사이트 및 세미나에 의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사이트 • 세미나 및 강습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가치 서포트: '지식'으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 생활가치 서포트: '배움'으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언 등의 작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딩노트 • 공증증명유언 및 임의후견 • 자신의 역사 (듣고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가치 서포트: '배려'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 생활가치 서포트: '말하는 것'으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 감정가치 서포트: '회고의 구전'으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전계약 등에 의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 등의 생전계약 • 영정사진 • 재산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가치 서포트: '마지막 준비'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 감정가치 서포트: '눈길'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 감정가치 서포트: '믿고 맡기는 것'으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고령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혼자 생활하는 등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 - 의료나 돌봄(개호)로 이러한 고령자의 모든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대행, 방문 돌봄 • 성묘, 묘지 청소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시간가치 서포트: '주변'에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 감정·시간가치 서포트: '조문'으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원보증 및 재산관리 등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원보증(신원보증인, 신원인수인) • 재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가치 서포트: '지킴'으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 생활가치 서포트: '지금을 맡기는 것'으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가 있는 고령자용 주택 등 • 역모기지 (reverse mortg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가치 서포트: '안심되는 주거'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 공간가치 서포트: '평온'으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종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말기에 치료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케어도 중시되고 있음. - 치료 등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말기 의료·간병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말기 의료 • 재택에서의 간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가치 서포트: '완화'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 생활가치 서포트: '온화함과 이어짐'으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라이프 스테이지	라이프 스테이지에서의 과제 및 니즈 등	서포트의 유형	주요한 특징으로 생각되는 서포트의 제공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말기 환자 등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이 있는 외출 및 여행 • 전문가에 의한 마음의 케어 • 종교관계자 등이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돌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가치 서포트: '비일상'으로 서로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의 구축 - 감정가치 서포트: '이야기와 대화'로 서로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의 구축 - 감정가치 서포트: '기도로 서로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의 구축
사별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 등은 근친자 등과의 사별로 인한 비탄 속에서 번잡한 많은 절차를 해야 한다. - 사별의 비탄을 좀처럼 극복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있음 - 장송 등에 관한 니즈가 다양화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별 후의 절차의 의례 등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의 원스톱 창구 및 대행 • 유품정리대행 • 장송의례(장례) • 자택공양 - 유족 등에 대한 정신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외래(비탄케어 외래, 슬픔케어 외래) • 유족 등의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가치 서포트: '경감'으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 감정가치 서포트: '정돈'으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 감정가치 서포트: '애도'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 감정·공간가치 서포트: '가까이'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 감정가치 서포트: '지원과 양육'으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 감정가치 서포트: '공감'으로 서로 이룰 수 있는 인연의 구축

출처: 經濟産業省. 2012.4. 『安心と信頼のある「ライフエンディング・ステージ」の創出に向けた普及開発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經濟産業省商務情報政策局サービス政策課 サービス産業室. 20頁. <https://www.asagao.or.jp/sougi/link/keisan-houkoku.pdf> 최종검색일 2019.09.21.

따라서 라이프 엔딩 스테이지의 창출과 정비를 위해서는 ① 다양한 가치관 등의 존중에 관한 시점, ② 마음이 풍족한 사회의 추구에 관한 시점, ③ 사회구조 등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포트 구축에 관한 시점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³⁵⁾ 라이프 엔딩 스테이지가 폭넓게 일반 국민에게 인식되고, 이 스테이지에 지속적인 순환이 구축되어 가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소와 추진력이 필요 불가결하며, 그 추진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식개혁을 함으로써 부여 되게 되고,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이 스테이지의 서포트에 관여하는 담당

35) 經濟産業省. 2012.4. 『安心と信頼のある「ライフエンディング・ステージ」の創出に向けた普及開発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經濟産業省商務情報政策局서비스政策課 서비스産業室. 48-50頁. <https://www.asagao.or.jp/sougi/link/keisan-houkoku.pdf> 최종검색일 2019.09.21.

자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유지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단의 노력을 행함으로써 구축된다고 본다.³⁶⁾

요컨대, 일본 정부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기존 가치관의 변화(가족, 죽음 등)에 따라 일본 사회에서의 죽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이지에 대한 의식변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자의 문제는 돌봄부터 사망, 사후의 이벤트까지 단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써, 고령자의 돌봄 및 죽음, 장례 등에 관한 것은 기존의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고 서포트 해나가는 것으로 의식 개선을 하기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민간차원(장례업자)의 대응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 지역공동체에서 장례의식을 행하던 것이, 가족 구성 및 가족의식의 변화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장례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장례업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역할이 증대되어 왔다.

일본에서 장례사단, ① 장제전문사업자(오랫동안 지역밀착형으로 장례를 하는 사업자), ② 관혼상제 호조회(할부판매법, 매월 할부금), ③ 농협(JA), ④ 기타(불단불교용품회사, 묘석회사, 생협, 철도회사, 판매점(소매업자), 장의사 소개업자 등)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4,000~5,000사가 있지만, 인허가 및 신고제 등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불명확하다.³⁷⁾

장례의 종류별 연간 취급건수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장’이 연간 취급건수 전체의 63.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증가를 보이는 장례의 종류는 ‘가족장’이 51.1%, ‘직장’이 26.2%, ‘1일장’이 17.1%인데, 감소를 보이는 장례 종류가 ‘일반장’ 68.8%, ‘회사장’이 24.3%이다.³⁸⁾ 기존의 ‘일반장’이

36) 経済産業省. 2012.4. 『安心と信頼のある「ライフエンディング・ステージ」の創出に向けた普及開発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経済産業省商務情報政策局サービス政策課サービス産業室. 51頁. <https://www.asagao.or.jp/sougi/link/keisan-houkoku.pdf> 최종검색일 2019.09.21.

37) 内閣府消費者契約法専門調査会. 2017.04.28. 「葬儀業界の現状」, 第37回 消費者契約法専門調査会資料. 5頁. https://www.cao.go.jp/consumer/history/04/kabusoshiki/other/meeting5/doc/170428_shiryou5_1.pdf 최종접속일 2019.09.26.

38) 公正取引委員会. 2017.03. 「葬儀の取引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30-31頁.

감소하는 경향인 반면, ‘일반장’에 비하여 장례식 조문객 수가 적고, 장례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가족장’, ‘직장’ 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본의 현재 장례식의 종류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소규모화’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라) 장례문화의 대안적인 방안

(1) 종활

일본에서 자신의 늙음과 죽음에 관한 다양한 준비하는 활동이라는 의미의 ‘종활(終活)’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연혁을 따라가 보면, 2009년에 “주간아사히(週間朝日)”의 연재 기사에서 시작된다. 당초에는 장례나 묘지에 관한 준비가 중심이었는데, 그 후 종활의 의미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³⁹⁾

여기에는 단순히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장례, 묘지, 의료, 돌봄, 재산 등의 정리, 보험, 자신의 생애사 등, 자신의 노화와 돌봄, 죽음을 준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종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종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던 것은 2000년 후반이다. 하지만 이미 1980년대 후반에는 장례 및 묘지에 대한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고, 1990년대에는 뇌사를 둘러싼 논의를 비롯해서 존엄사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 엔딩노트의 작성 등이 나타났다. 이후 종활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2009~2010년에는 종활은 신어·유행어 대상(新語·流行語大賞)에 노미네이트된다.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이 크게 변화하였고, 종활 NPO 및 관련 단체가 많이 출현하였다. 또한 경제산업성에서는 “라이프 엔딩 스테이지”를 제창하여 종활 시장이 확대된다. 2012~2013년에 종활은 신어·유행어 대상 Top 10에 등극하고, 종활전문지 ‘종활독본 소나에(終活読本 ソナエ)’가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h29/mar/170322_2_files/170322honbun.pdf 최종접속일 2019.9.15.

39) 木村由香·安藤孝敏. 2018.03. 「マス・メディアにおける終活のとらえ方とその変遷—テキストマイニングによる新聞記事の内容分析—」 『技術マネジメント研究』 第17号. 横浜国立大学技術マネジメント研究学会. 1-2頁.

창간되었다. 2014년에는 “현대용어의 기초지식” 카테고리 및 정의에 변화가 있었는데, 종활의 카테고리는 ‘시대·유행세상어’에서 ‘고령사회·돌봄(개호)’으로 변경되었고, 정의 역시 ‘장례·묘지의 준비’에서 ‘죽음의 전~사후의 준비’로 변경되었다. 2015년에는 ‘엔딩산업전’이 시작되어 종활 관련 산업의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⁴⁰⁾

종활에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엔딩노트의 작성, 장례의 준비(장의사나 장례플랜 결정, 생전계약, 영정사진 촬영 등), 묘지 준비(공동묘지의 결정, 묘석이나 디자인 결정 등), 유언서 작성, 생전정리 등으로 볼 수 있다.⁴¹⁾ 이하에서는 그 중, 엔딩노트 작성과 생전에서 사후사무에 이용을 위한 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엔딩노트 작성⁴²⁾

이 엔딩노트는 본인의 종말기나 사후에 관한 사실 또는 요청을 기재하는 것이다. 이로써 종활에서 해야 하는 정리를 하거나 가족과 대화할 계기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엔딩노트는 유언과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자필증서유언의 요건(전문자필, 작성일자, 서명, 날인)을 충족시키면 유언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엔딩노트 작성으로 인하여 때때로 가족을 곤란하게 만드는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엔딩노트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족이 곤란하지 않도록 내용을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엔딩노트에는 필요사항만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40) 木村由香·安藤孝敏. 2018.03. 「マス・メディアにおける終活のとらえ方とその変遷—テキストマイニングによる新聞記事の内容分析—」 『技術マネジメント研究』 第17号. 横浜国立大学技術マネジメント研究学会. 2-5頁 참조.

41) 株式会社石長ホームページ(2018.10.29.). “終活とは? 準備はいつから始めるのがベスト? 本人や家族がやることを全部まとめて解説!”. https://www.ishichou.co.jp/ohaka/ending_funeral/senior-life 최종검색일 2019.09.20.

42) 毎日新聞. “終末への備え ③ エンディングノート”. https://mainichi.jp/sp/syukatsu2016/article/preparation_basics03.html 최종검색일 2019.09.20.

〈표 II-6〉 엔딩노트 작성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에 관한 정보 병력, 지병, 일상복용약, 주치의, 연명치료나 고지의 희망 및 이유 등 • 장례에 관한 정보 부고의 연락처, 위패를 모신 절의 연락처, 종파, 영정사진 등 • 묘지에 관한 정보 묘지의 승계자의 경우, 묘지관리자 연락처·관리비·규약 등 • 재산·상속에 관한 정보 재산(예저금, 보험, 부동산 등)의 유무, 유언서의 유무, 가족관계도, 본적지와 호주의 성명 등 • 본인에 관한 정보 좋아하는 것/추억/싫어하는 것/잘못하는 것 등(색깔, 꽃, 먹는 것, 마시는 것, 음악, 장소, 이야기 등), 가족에 대한 메시지, 자신의 생애사, 유품분배 등

출처: 毎日新聞. “終末への備え ③ エンディングノート”. https://mainichi.jp/sp/syukatsu/2016/article/preparation_basics03.html 최종검색일 2019.09.20.

또한 이러한 엔딩노트에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가족이 연명치료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판단을 하도록 위임받은 때에 본인이 연명치료를 바라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생사를 결정하는 대답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재산 분할방법 등의 중요사항은 엔딩노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식적인 유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엔딩노트를 작성한 후에는 사정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과의 대화를 통하여 재검토를 할 필요도 있으며 정기적으로 재수정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생전 및 사후사무에 이르는 계약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이용 및 준비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전되어 고령자 단독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주로 혼자 살고 있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신원보증이나 일상생활지원, 사후사무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형태(이른바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가 많이 생겨났다.⁴³⁾

특히 치매(일본어로 인지증(認知症)) 등으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이

43) 厚生労働省(2018.8.30.). “市町村や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における身元保証等高齢者サポート事業に関する相談への対応について”(老高発0830第1号·老振発0830第2号)(2018年8月30日).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tc3682&dataType=1&pageNo=1 최종검색일 2019.09.30.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독거노인(고령자 단신세대)의 증가와 주변에 친족이 없는 사람 등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한층 더 저출산 고령화가 진전되고, 당사자의 판단능력과 가족관계 여하에 관계없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그 의사가 존중되고 의료가 필요한 때에 안심하여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인지하여, 생전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맺어 생전 및 사후를 준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이란 주로 혼자 생활하여 주변인이 없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업자에 따라 그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크게 신원보증, 일상생활지원, 사후사무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⁴⁴⁾

이것은 특히, 크게,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② 신원보증서비스, ③ 사후사무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II-7〉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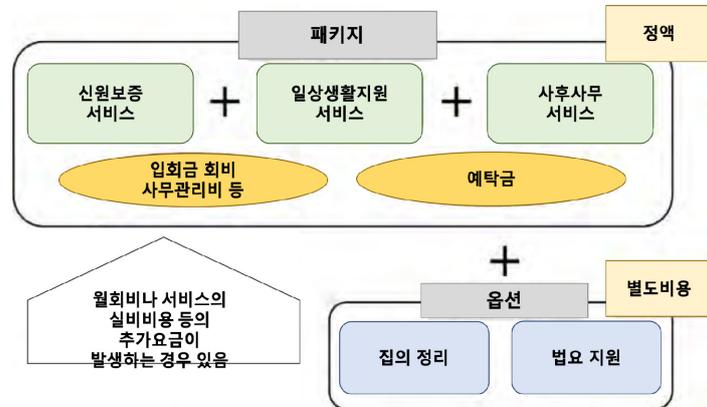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신원보증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및 복지시설 등에 입원 및 입소할 때의 입원비·시설이용료의 보증 •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의 임대료 보증 • 입원 및 입소 절차의 지원 • 신원의 인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시 친족에 대한 연락 • 쇼핑 등의 지원 • 통원·통소의 송영 및 동행 • 구청·금융기관 등의 절차 대리 • 전화·방문에 의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 일상적인 금전관리 • 집 정리
사후사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복지시설 등의 비용 정산대행 • 사신의 확인 및 인수 • 거처의 원상회복 • 잔존가구 및 유품의 처분 • 라이프 라인의 정지절차 • 장례, 납골, 법요의 지원

출처: 消費者委員會. 2017. 「身元保証等高齡者サポート事業に 関する消費者問題についての調査報告」. 4頁.

44) 消費者委員會. 2017. 「身元保証等高齡者サポート事業に 関する消費者問題についての調査報告」. 4頁. https://www.cao.go.jp/consumer/iinkaikouhyou/2017/doc/20170131_kengi_houkoku1.pdf 최종접속일 2019.09.30.

즉, 일본의 고령자들은 자신의 노후의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사후의 서비스까지 상기와 같은 서비스를 계약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종횡의 한 형태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주체는 민간부문과 공적부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민간사업자는 주식회사, 일반법인, 공익법인, NPO법인, 변호사·사법서사·행정서사 등의 전문직, 종교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며, 사업자의 수는 수십~100개사 정도에 달한다. 사후사무서비스의 경우에는 장례업자가 참가하는 케이스도 있다. 공적부문은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가 독자적인 사업으로서 병원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입원 및 입소 절차의 지원 및 입원비·시설이용료의 보증, 사망시의 장례·매장 절차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또한 사망신고, 장례, 납골 등의 상담창구가 되어 장의사와 정보제공, 계약당시의 입회, 정기적인 이용자의 안부확인 등을 하는 지자체도 있다.⁴⁵⁾



출처: 消費者委員會. 2017. 「身元保証等高齡者サポート事業に関する消費者問題についての調査報告」. 5頁.

[그림 II-7]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사업의 패키지 계약의 사례

45) 消費者委員會. 2017. 「身元保証等高齡者サポート事業に関する消費者問題についての調査報告」. 5頁.

민간부문의 서비스 이용자 수는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1개사 당 3,000명~7,500명 정도로, 많은 사업자의 이용자 수는 1개사 당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규모이다. 공적부문인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는 인원 및 예산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서비스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⁴⁶⁾

(2) 장례식의 간소화

최근 사회환경 및 경제환경이 변화하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가족장’ 및 ‘직장’의 비율이 증가하고 장례식의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다.

일본의 장례의 주요 종류는 ‘일반장’, ‘가족장’, ‘1일장’, ‘직장’의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장례 형식은 규모(조문객의 수)와 의식(츠야(通夜), 장의, 고별식 등)⁴⁷⁾이 있다.

‘일반장’은 장례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형식이다. ‘가족장’은 가족 중심으로 소규모로 진행되는 형식이다. ‘1일장’은 츠야를 생략하는 형식이며, ‘직장’은 조문객도 의식도 모두 생략하는 형식이다.⁴⁸⁾

46) 消費者委員會. 2017. 「身元保証等高齢者サポート事業に 関する消費者問題についての調査報告」. 6頁.

47) ‘츠야(通夜)’란, 장례식 전날에 행해지는 고인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의식이다. 본래는 유족이나 친족, 고인의 친구 등이 모여 밤을 세워 고인과 함께하는 사적인 의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일 때문에 낮에 조문을 할 수 없었던 조문객도 받는 사회적인 의미가 강한 의식이 되었다.

‘장의(葬儀)’란, 고인과 상주의 종교 및 종파에 따라 집행되는 종교적인 의식이다. 불교식에서는 승려가 관장하고 독경 등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다.

‘고별식(告別式)’은 장의 후, 유족 및 조문객이 고인과 마지막의 이별을 하는 사회적인 의식이다. 본래는 전원이 장례식장에서 화장장까지 동행하여 유골을 매장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의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조문객이 화장장까지 가는 경우는 적고, 장례식장에서의 분향이 중심이 되었다.

출처: 毎日新聞. “葬儀 ① 葬儀の作法と流れ”. https://mainichi.jp/sp/syukatsu/2016/article/funeral_basics01.html 최종검색일 2019.09.23.

48) 毎日新聞. “葬儀 ② どんな葬儀にするか?”. https://mainichi.jp/sp/syukatsu/2016/article/funeral_basics02.html 최종검색일 2019.09.23.

〈표 II-8〉 일본의 장례의 종류와 내용

장례의 종류	내용
일반장	친족이외에 가까운 사람이나 고인과 생전에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 출석 출석자의 범위가 넓은 전통적인 장례 츠야(通夜), 고별식, 화장 등이 집행
가족장	친족이나 가까운 친구 등 친밀한 관계자만이 출석하여 집행되는 장례. 츠야, 고별식, 화장 등은 일반장과 마찬가지로 집행
1일장	친족이나 가까운 친구 등 친밀한 관계자만이 출석 츠야는 집행되지 않고, 고별식과 화장만 집행하는 장례
직장	츠야, 고별식을 집행하지 않고, 친족이나 가까운 친구 등 친밀한 관계자만이 출석하여 화장만 집행하는 장례
회사장	기업의 창업자나 회장 및 사장, 회사업적에 큰 공적을 남긴 고인에게 표창의 의미를 담아 해당 기업이 주체가 되어 집행하는 장례 회사장에 앞서 유족 및 친족에 의한 밀장(密葬)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임.

출처: 公正取引委員会. 2017.03. 「葬儀の取引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27頁.
참고: 상기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반장과 가족장의 조문객 수로 구분하였는데, 조문
객 수가 50명 이상의 장례를 일반장으로, 50명 미만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정의하
였다.

일반장은 지금까지의 지연 및 혈연관계자를 부르는 장례식으로 장점으로는
고인의 생전 인연을 존중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조문객의 인원수 및 비용의
예측이 어렵다. 가족장은 가족 및 친척을 중심으로 하는 장례식으로 장점으
로 ① 유족의 마음 부담을 경감, ② 고인과 유족을 생각하는 형태로 장례를 하
기 쉽다는 점, ③ 조문객의 인원수 및 비용의 예측을 하기 쉽다는 점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① 조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발생한다, ②
고인과의 교류가 있던 사람들의 조문의 마음 및 인연을 단절시켜 버린다, ③
친족 등으로부터 그 지역에서의 장송의례를 바탕으로 한 장례를 바라라는 것
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다, ④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이 적어지므로 부의금도
줄어서 유족의 금전적인 부담이 늘어난다, ⑤ 장례 후, 장기에 걸쳐 자택을 방
문하는 자가 있어 그 대응으로 인하여 고생이 늘어난다. 이에 대하여 직장은
츠야와 장례식을 하지 않는 장례식으로 의례를 동반하지 못하여 충분한 이별
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지적된다.⁴⁹⁾

하지만 장례 종류의 다양화와 규모의 소규모화에 따라, 기존의 ‘일반장’에서

‘가족장’ 및 ‘직장’의 형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직장’ 등의 간소한 형식을 취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장례를 마치는 것도 보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인간관계의 희박화, 종교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도시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하고, 또한 경제불황 등에 따른 가정의 금전적인 사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⁰⁾

(3) 종합 활동 및 장례와 관련된 NPO 및 관련 단체의 노력

일본사회에서 NPO(Non-Profit Organization)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에서 NPO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성립된 것은 1998년 3월인데, 이 법의 계기가 된 것이 1995년 1월에 일어난 한신아와지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이다. 이 지진의 피해와 재해 지원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법 제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즉, NPO는 “사회적 사명(mission)의 달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조직으로, NPO법에 의해 인증 받은 NPO법인뿐만 아니라, 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각종 자원봉사활동 단체나 시민활동 단체 등 그 범위는 폭넓다.⁵¹⁾

이러한 NPO는 정부의 실패 및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시민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탱, 또한 공공이익의 증진과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담당한다.⁵²⁾ 현재 일본의 NPO 단체의 수는 2019년 10월 기준, 인증법인 수는 51,428개, 인정법인 수는 1,118개이다.⁵³⁾ 특히 “보건, 의료 또는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의 법인 수가 29,843개로 가장 많다.⁵⁴⁾ 따라서 아래와 같은 NPO 단체의

49) 内閣府消費者契約法専門調査会. 2017.04.28. 「葬儀業界の現状」, 第37回 消費者契約法専門調査会資料. 10頁.

50) 毎日新聞. “葬儀 ③ 葬儀に向けた準備”. https://mainichi.jp/sp/syukatsu2016/article/funeral_basics03.html 최종검색일 2019.09.23.

51) 藤井辰紀. 2012. 「NPO法人の存在意義と経営課題」 『日本政策金融公庫論集』. 16. 日本政策金融公庫総合研究所. 57頁.

52) “NPO評価の現状と課題(2015.7.20.)”. <http://japan-social-innovation-forum.net/wp-content/uploads/2016/07/a1048f112d1e79db62a534a63bc5f6fe.pdf> 최종검색일 2019.10.30.

53) 内閣府 NPO. “特定非営利活動法人の認定数の推移”. <https://www.npo-homepage.go.jp/about/toukei-info/ninshou-seni> 최종검색일 2019.10.30.

54) 内閣府 NPO. “特定非営利活動法人の活動分野について”. <https://www.npo->

활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NPO단체의 활동은 일본의 고령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NPO법인 종합서포트센터⁵⁵⁾

NPO법인 종합서포트 센터는 도쿄도에 소재하고 있다. 2010년에 수도권에서 매월 80~100회장의 상담회 및 종합대학을 개최하는 활동을 시작되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① 장례시행 알선, ② 묘석·납골당·수목장·영대공양묘 알선, ③ 불단·신도와 불교용구 알선, ④ 불단·신도와 불교 용구 인수, ⑤ 상속 대책·유언서 작성·생전증여, ⑥ 각종 보험 알선, ⑦ 고령자용 주택(barrier free) 리폼 알선, ⑧ 고령자시설 알선, ⑨ 방문미용사 파견, ⑩ 생전정리·유품정리 등, ⑪ 각종 후견인 알선[무료], ⑫ 각종 종합상담·장례사전 견적[무료], ⑬ 기타 등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특히, 종합대학을 개최하여 종합을 배우는 강의형식으로 종합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나) NPO 엔딩센터⁵⁶⁾

NPO법인 엔딩센터는 도쿄와 오사카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1990년 7월에 현재 이사장인 이노우에 하루요(井上治代)의 활동에 의해 '21세기의 결연과 묘지를 생각하는 모임'을 발족하여 2000년에 모임의 명칭을 '엔딩센터'로 변경하여 사후 서포트 등의 활동을 개시하였다. 2005년에 엔딩센터가 기획한 '벚꽃장 묘지'가 완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NPO법인 엔딩센터는 존엄이 있는 죽음과 장송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시민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모은 죽음과 장송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그리고 생활자의 시점에서 기획 및 실현한 '벚꽃장'(수목장) 묘지를 핵심으로 한 교류나 지원활동, 장송에 관한 서포트, 강좌 및 심포지엄,

homepage.go.jp/about/toukei-info/ninshou-bunyabetsu 최종검색일 2019.10.30.

55) 特定非営利活動法人 終活サポートセンター. <http://shukatsusupport-center.com/index.php> 최종검색일 2019.10.01.

56) 認定NPO法人 エンディングセンター. <https://www.endingcenter.com/> 최종검색일 2019.10.01.

연구회의 개최, 그 외에도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엔딩센터는 도쿄와 오사카 두 곳에 벚꽃장(수목장 일종) 묘지를 마련하여 묘소에 묘석을 설치하지 않고 유골을 흙에 묻어 수목으로 묘비로 대신한다. 이 벚꽃장은 가족에 의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으며, 묘지의 계승여부는 자유이며, 종교도 자유롭게 진행된다. 벚꽃이 필 때에는 합동제사 ‘벚꽃장 메모리얼’을 실시하고, 이러한 묘지를 중심으로 교류 및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다) NPO법인 인연의 모임(きずなの会)⁵⁷⁾

NPO법인 인연의 모임(きずなの会)은 2001년에 아이치현(愛知県)에서 인증을 받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인연의 모임’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전국에 걸쳐 각 지역 사무소가 마련되었다. 이 인연의 모임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시민들과 ‘생활지원 등 계약’을 체결하여 병원이나 복지시설, 주택임대 등에 대한 입원이나 입소 시에 신원보증,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생활지원 및 금전관리, 더 나아가 긴급시의 지원에서 장례, 납골까지 변호사법인과 협동하여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탁금 190만엔(약 한화 1900만원 정도)으로, ① 신원보증지원(18만엔), ② 생활지원(기본금 10만엔, 보증금 20만엔), ③ 장송지원(사무지원 14만엔, 장송지원 31만엔, 납골지원 15만엔), ④ 입회금 등(44만엔), ⑤ 변호사법인 수수료 등(7만엔), ⑥ 상기의 소비세 및 예비비(31만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 NPO법인 라시사(らしさ)⁵⁸⁾

NPO법인 라시사(らしさ)는 2003년에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종말 서포트 라시사를 설립하였다. 그 이후 2004년에 라스트 플래닝 노트를 발행하였고, 2005년에 법인명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라시사로 변경하여 활동을 이어오다가 2006년에는 종합 어드바이저 협회도 발족하였다.

라이프 플랜의 전문가로서 일상에서 자기 연마에 노력하고, 인생 후반기의 돌봄, 의료, 장례, 묘지, 상속 등의 다양한 어려움, 특히 금전문제에 관한 정보

57) NPO法人きずなの会. <https://kizuna.gr.jp/> 최종검색일 2019.10.01.

58) NPO法人らしさ. <https://www.ra-shi-sa.jp/> 최종검색일 2019.10.01.

를 수집 및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개개인이 ‘자립’하여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파이낸셜 플래닝의 관점에서 사회공헌을 도모하고 있다.

NPO법인 라시사의 주요 활동으로는 ① 종합 어드바이저 협회(자격인정과 운영), ② 세미나 및 견학회 등 이벤트 개최, ③ 장애인의 가족 지원, ④ 라시사 엔딩노트 등 출판물 제작판매, ⑤ 정회원의 스킬 향상 활동, ⑥ 기타의 활동을 하고 있다.

(마) NPO 리스시스템(りすシステム)⁵⁹⁾

1993년 가을에 ‘Liss(りす)시스템(Living·Support·Service·시스템)’이라는 생전계약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장례 등 사후, 생전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입원, 노인홈의 보증인 등을 맡아주길 바란다는 절실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 NPO법인 리스시스템을 설립한 이후, 2002년 2월에 ‘NPO 일본생전계약 등 결제기구’를 설립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리스시스템’은 생전계약의 수탁 기관으로서 NPO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활동으로는, ① 지금까지 가족이 담당해 온 일상 생활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일상생활지원), ② 노인홈이나 임대주택의 입주 보증, 병원 등의 입원 및 수술 동행과 신원인수보증, ③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때의 서포트(임의후견계약 및 법정후견인의 수탁), ④ 사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일과 사무처리의 인수(장례의 주재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포함), ⑤ 기타의 활동을 하고 있다.

리스시스템을 통한 계약에 필요한 비용은, ① 신청금(50,000엔), ② 시스템 유지비(회비)(500엔/월), ③ 분담금(법인유지비)(150,000엔), ④ 예탁금(사후사무)(500,000엔부터), ⑤ 예탁금(생전사무)(200,000엔부터), ⑥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약 100,000엔), ⑦ 공정증서 증인비용(10,000~20,000엔)이다. 계약 후에도, ① 시스템 유지비(회비)(1,000엔/월), ② 서포트 비용, ③ 신원인수보증 등 사무수수료(건당), ④기타(연대보증 담보금, 임의후견인 보수 등)가 발생한다.

59) NPO日本生前契約等決済機構 | NPOりすシステム. <http://www.seizenkeiyaku.org/> 최종검색일 2019.10.01.

나. 일본의 무연고자 장례 및 비혈연 가족구성원에 의한 장례에 대한 법제·정책 현황

일본의 경우, 무연고 시신의 매장 및 화장을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있다. 사회 복지시설에서 무의탁 노인 등이 사망했을 때, 노인복지법 등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 시장, 또는 복지사무소를 관리하는 정촌장이 장례를 치르거나 양로원 등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친척이 없는 사망자의 매장 및 화장을 이웃이 하였을 때에는 생활보호법에 해당할 경우, 장제부조를 받을 수 있다.⁶⁰⁾

즉, 일본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법률은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墓地, 埋葬等に関する法律)」 제9조에 따르면, 사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사망지의 시정촌장이 이를 행해야 한다(제9조 제1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한 때에는 그 비용에 관해서는 행려병인 및 여행사망인취급법의 규정을 준용(제9조 제2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법률은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行旅病人及行旅死亡人取扱法)」 제7조에 따르면, 행려사망인이 있는 경우 그 소재지 시정촌장은 그 상황, 양상, 유류물건, 그 외 본인의 인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후, 그 사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행해야 한다(제7조 제1항). 묘지 또는 화장장의 관리자는 본조의 매장 또는 화장을 거부할 수 없다(제7조 제2항)고 되어 있다. 이 법에서 행려병인이란, 걸을 수 없을 정도의 병에 걸린 여행자로 진료를 받을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돕는 자도 없는 자를 말하며, 행려사망자는 여행 중에 사망하고 인수하는 자도 없는 자(동법 제1조)를 말한다.

즉,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자살자 등의 신원 확인에 있어 사체의 매장 또는 화장하는 사람이 없을 때 적용되며,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의 경우에는 행려 중 또는 주소 불명으로 사망하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없을 때 적용된다.⁶¹⁾

60) 이삼식·박미연·하미영·박종서·안영훈·한부영. 2003. “장사제도 및 행정체계 국제 비교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5면.

61) 박진옥·박은순·박지숙·양희철·정현경. 2019.8.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 결정권 한일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 연구. 법무법인(유)화우·(재)화우공익재단. 24면.

〈표 II-9〉 ‘생활보호법’,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의 적용관계

	발견시의 상황		비용변상 항목	관계법
유골	신원을 특정할 수 없음 - 사후 수십년 경과 - 뼈가 부분적으로 발견됨		장제 공고(고시)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
	신원을 식별할 수 있음 - 사후 몇 년 전후 - 옷 등 흔적이 남아 있는 것		장제, 공고(고시)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
사체	행려 (주소 및 성명 불상)	장례집행자 있음	장제 공고(고시)	생활보호법
		장례집행자 없음	장제, 공고(고시)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
	기타 (주소 및 성명 등 명백)	장례집행자 있음	장제	생활보호법
		장례집행자 없음	장제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

출처: 박진옥·박은순·박지숙·양희철·정현경. 2019.8.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 결정권 한일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 연구. 법무법인(유)화우·(재)화우공익재단. 27면 재인용.

세 번째 법률은 「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에 따라 생활보호법의 피보험자의 생활보호 종류의 하나로서 장제부조의 경우, 동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곤궁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장제부조(검안, 사체의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납골, 기타 장제에 필요한 것)를 행하며, 제18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의 장례를 행할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제18조 제2항 제1호), 사자에 대하여 그 장례를 행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그 유류된 금품으로 장례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족할 수 없을 때(제18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즉,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무연고자 장례는 상기 두 법률의 적용과 달리 장례집행자가 있는 경우이며, 특히 생활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자의 장례를 실시하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만 그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례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동항이 적용

된다. 반면 제18조 제2항은 피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의 장제를 실시하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제1호), 피보호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의 장제를 지낼 부양의무자가 없고 또한 그 사망자가 남긴 금품으로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그 장례를 제3자가 행하는 경우(제2호)에 적용된다.⁶²⁾

한편 일본의 경우, 비혈연 관계 또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 등에 의한 장례의 상황을 살펴보면, 장례절차에서 이러한 자가 상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인이 생전에 이러한 자를 상주로 지정하고 있으면 상주가 될 수 있다.

사망신고를 하는 대상자는 사망한 자의 동거의 친족 등인데, 신고인은 친족, 동거자, 거주, 지주, 가옥관리인, 토지관리인, 후견인, 보좌인, 보조인, 임의후견인 등도 사망신고가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구청 등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신고서를 제출하고 화장(또는 매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사망신고가 수리되면, 화장(또는 매장) 허가증을 교부받고 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절차는 가족이 직접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의사가 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일본의 호적법 제86조에 따르면, 사망신고의 의무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고, 동법 제87조에 따르면 동거의 친족, 기타 동거자, 거주·지주 또는 가옥 혹은 토지관리인의 순서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호적법 제87조 제1항), 동거 친족 이외의 친족, 후견인, 보좌인, 보조인 및 임의후견인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2항).

이 때,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진단서 역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사망진단서의 발행대상자는 배우자 및 가족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병원에서는 사망진단서를 발행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조건을 갖춘 자 역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⁶³⁾

62) 박진옥·박은순·박지숙·양희철·정현경. 2019.8.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 결정권 한일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 연구. 법무법인(유)화우·(재)화우공익재단. 25면.

63) 일본의 미야기(宮城県)에 있는 어느 병원 사례의 경우, 사망진단서의 발행대상자의 경우, (1) 해당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이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의 위임을 문서로 받은 자, (2) 상기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지만, 사망진단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조건을 갖춘 자(이 경우 별도 상담 필요)에서 사망진단서 발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897조 제1항에 따르면, “계보, 제구 및 분묘의 소유권은 전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관습에 따라 조상의 제사를 주재해야 하는 자가 계승한다. 단, 피상속인의 지정에 따라 조상의 제사를 주재해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가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유체와 유골은 유산이 아니라 상속의 대상이 아니므로 유체와 유골은 상속과는 관계없이, 제사주재자에게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⁶⁴⁾

예를 들어 법적 혼인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남편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게 된 경우, 사실혼 관계의 아내는 고인의 배우자로서 상주가 될 수 있고, 사망신고 역시 장의사를 통하거나 또는 동거자로서의 입증이 가능하면 사망신고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혼의 아내가 남편이 사망한 후, 상주로서 장례를 집행하고 묘지를 구입하여 유골을 모시고 위패를 관리하고 있다면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외국의 공적부조체계에서의 장제비 지원 등의 사례

1) 일본

가) 매장료

일본에서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매장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법(健康保險法)」 제1조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업무재해 이외의 사망에 관한 보험금부로서 매장료가 지급된다.

이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일본의 공적의료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이루어지는 보험금부(현금금부)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매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매장료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 피보험자의 피부양자가 사망한 때에는 가족매장료로 피보험자에게 제100조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坂総合病院. “死亡診断書・死亡証明書の発行について”. <https://www.m-kousei.com/saka/guide/certificate/die.html> 최종검색일 2019.10.30.

64) 星野茂. 1992. 「遺体・遺骨をめぐる法的諸問題(上)」 『法律論叢』 第64卷. 明治大学法学部紀要. 199頁; “遺体・遺骨は相続されるか, 所有権は(2018.3.30.)”. <http://www.asahi-net.or.jp/~zi3h-kwrz/so/itai.html> 최종검색일 2019.10.30.

금액을 지급한다(동법 제113조).

그리고 동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장료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매장을 한 자에 대하여 동항의 금액 범위 내에서 그 매장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즉 매장비)을 지급한다(제100조 제1항). 자격 상실 후의 급부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매장에 필요한 비용'이란 매장에 직접 필요한 실비액을 말한다.

'그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란, 사망 당시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 자를 말하고, 사망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으면 충분하다. 민법상의 친족이나 유족을 불문한다. 또한 피보험자가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인지도 불문한다.

지급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현재 5만엔이다. 건강보험조합의 경우, 부가급부로서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추가할 수 있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매장료 및 매장비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가 소멸한다(제193조).

나) 장제비 및 장제급부

건강보험 외의 공적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서 장제비(장제급부)가 규정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国民健康保險法)」 제58조 제1항에서는 시정촌 및 조합은 피보험자의 사망에 관해서는 조례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제비 지급 혹은 장제 급부를 행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고령자의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高齡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제86조 제1항에서는 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은 피보험자의 사망에 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제비 지급 또는 장제급부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제비의 급부 요건, 내용, 지급절차 등의 사항은 보험자마다 조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주거 구시정촌의 담당창구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쿄도 네리마구(練馬区)의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가 사망하여 장례를 한 경우, 장례를 한 자(상주)에게 장제비로 7만엔이 지급된다. 신청에서 지급까지는 1개월 반 정도 걸리며, 신청기간은 장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이다.⁶⁵⁾ ②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장례를 한 경우, 장례를 집행한 자(상주)의 신청으로 장제비를 지급한다. 그 금액은 원칙 7만엔으로, 상주의 계좌로 지급하며 신청에서 지급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신청기간은 장례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간이다.⁶⁶⁾

다) 생활보호법상의 장제부조

장제부조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에게 장례비용을 자자체가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유족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고 장례비용을 마련할 수 없거나 생활보호수급자였던 자의 장례를 유족 이외의 사람이 마련하는 등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 제18조에 장제부조가 규정되어 있다. 장제부조는 곤궁하기 때문에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게 검안, 사체의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납골, 기타 장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 행해진다(제18조 제1항). 또한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의 장제를 행할 피부양자가 없는 때, 제2호의 사망한 자에 대하여 그 장제를 행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유류한 금품으로 장제를 행하기에 필요한 비용을 충족시킬 수 없는 때에, 그 사람에 대해 장제부조(검안, 사체의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납골, 기타 장제를 위해 필요한 것)를 행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장제부조의 방법으로는 금전급부로 이루어진다. 단, 이에 의할 수 없는 때,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때, 기타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물급부로 행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장제부조를 위한 보호금품은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교부한다(제37조 제3항).

장제부조의 신청은 장례 전에 시정촌의 관공서 혹은 복지사무소에 한다.

65) 東京都練馬区(2019.5.1.). “国保に加入している方が亡くなったとき(葬祭費の支給)”. https://www.city.nerima.tokyo.jp/kurashi/nenkinhoken/kokuminkenhoken/hoken_kyufu/sosaihi.html 최종검색일 2019.09.23.

66) 東京都練馬区(2019.6.11.). “葬祭費の支給”. <https://www.city.nerima.tokyo.jp/kurashi/nenkinhoken/kokikorei/sosaihi.html> 최종검색일 2019.09.23.

장례를 행하는 사람,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관할 복지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장제부조의 지급액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되며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치바현(千葉県)의 경우, 2018년도 기준액으로 성인은 206,000엔 이내(1 및 2급지), 180,300엔 이내(3급지)이고, 소아의 경우 2016년도 기준액으로서 164,800엔 이내(1 및 2급지), 144,200엔 이내(3급지)이다.⁶⁷⁾

2) 대만⁶⁸⁾

대만의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급여 중 장제급여가 있다. 대만 내 주민등록신고가 된 25세 초과 65세 미만이며, 공무원 노령급여 및 군인연금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자 중 노동보험, 농부건강보험, 공무원보험, 군인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기간 동안 ① 노동보험의 노령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② 2009년 1월 1일 노동보험연금제도 시행전 노동보험 노령급여를 청구한 자, ③ 2009년 1월 1일 노동보험연금제도 시행 이후 노동보험의 노령연금을 청구하고 국민연금법 시행 이후 15년 이내에 노동보험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자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에 가입된다.⁶⁹⁾

국민연금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기간(65세 전)에 사망할 경우, 사망 장제비를 지불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달의 보험 가입금액에 따라 5개월분으로 장제비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국민연금 월 가입금액이 18,282 대만달러로 조정되었는데, 이 경우의 장제비는 $18,282 \times 5\text{개월} = 91,410$ 대만달러가 된다. 장례비 지불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불되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대만의 경우, 내정부에 의한 장례의 근대화 제안⁷⁰⁾에 따라 대만의 몇

67) 千葉県(2019.10.8.). “生活保護”. <https://www.pref.chiba.lg.jp/kenshidou/shien/book/seikatsuhogo.html> 최종검색일 2019.10.15.
 68) 勞動部勞工保險局(2016.2.18.). “請領資格及給付金額” <https://www.bli.gov.tw/0014359.html> 최종검색일 2019.9.25.
 69) 국민연금공단. “대만 연금제도 개여 및 연금 청구 절차”. https://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report/02_03_02_taiwan.pdf 최종검색일 2019.9.25.

몇 대도시에서는 나쁜 장례 관습의 개선, 장례의 간소화, 장례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연합장례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합장례는 시민의 기부로 실시되고 있으며, 시신의 운송 및 입관, 시신안치, 장례시행, 화장에 드는 비용은 유족의 부담은 일체 없다. 타이베이시(台北)의 경우는 1회 14명까지 장례를 동시에 진행한다. 2012년 당초에는 연합장례에 대한 지명도는 낮았고 시행일이 주에 1회였지만, 이용자는 매년 늘어 2015년 기준 1347건(2012년 이용건수는 832건)이며, 2016년 기준 주 3회 연합장례를 실시하고 있다.⁷¹⁾

라. 시사점

이상에서 현대 일본사회의 장례문화와 그 변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본의 “이에(家)”라는 전통적인 일본의 가족제도 속에서 지탱되어 오던 가치관이, 핵가족화, 도시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장례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 더불어 양식의 변화까지 수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장례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였던 “이에”제도에서 장남은 부모에 대한 부양, 돌봄, 장례, 가족묘의 관리 등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핵가족화, 미혼화, 만혼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장례는 ‘개인화’와 ‘사화(私化)’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따라 장례의 양식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장례식의 간소화가 이루어져 종래의 ‘일반장’ 대신에 ‘가족장’, ‘직장’, ‘1일장’ 등의 늘어나고 있다.

70) 대만의 내정부는 2012년에 ‘현대국민상례(現代國民喪禮)’라는 팸플릿을 발행하여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장례문화의 관습을 개선하도록 지도하였다. 예를 들면, 장례에서 우는 여자를 고용하는 등의 전통은 여성차별로 이어지는 나쁜 관습이라고 지적하고, 한 자녀가 늘어나는 오늘날 남자가 상주를 맡는 관습에 얼마일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는 등, 남녀평등과 현대인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장례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안하였다(小谷みどり, 2016.10. 「猛スポードで少子高齢化が進む台湾-連合葬祭からみえた「つながり」のゆくえ-」 『LIFE Design Report』. 第一生命経済研究所ライフデザイン本部, 29頁).

71) 小谷みどり, 2016.10. 「猛スポードで少子高齢化が進む台湾-連合葬祭からみえた「つながり」のゆくえ-」 『LIFE Design Report』. 第一生命経済研究所ライフデザイン本部, 29-30頁.

장례에 대한 변화에 있어서 일본 정부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죽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이지에 대한 의식변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고령자의 문제는 돌봄부터 사망, 사후의 이벤트까지 단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고령자의 장례 등에 관한 것은 기존의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고 지원해나가기 위한 의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NPO 등의 민간차원에서도 이러한 의식 개선에 노력하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종활, 엔딩노트의 작성 등의 죽음에 대한 사전대비에서 사후의 사무에 대한 준비 및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핵가족화, 도시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장례문화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래의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는 장례의례 및 문화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가족 내 젠더불평등을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역시 장례의례 및 문화는 장남이라는 남성에게 의해 행해지고 계승되어 왔던 가부장적인 가치관의 투영이었던 것이, 현재는 장례에 대한 의식 및 양식의 변화에 따라 개인화 및 사화되었고 그에 따라 가부장적 색채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 볼 때, 일본에서와 같이 장례라는 사건(event)이 가족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서포트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변화됨으로써, 성별고정관념에 기반된 역할과 그 기대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차원에서의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경우 NPO 단체의 활동과 같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순수한 시민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와 행정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bottom-up 차원의 의식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서, 민간차원에서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역시, 지역사회에서 완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으로서 가족의 부양, 돌봄 및 장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과 문화가 유사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법상의 매장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장제비 및 장제급부, 생활보호법상의 장제부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만의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급여 중 장제급여가 있어 장제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사례에서 장례가 가족의 책임과 역할로만 간주되어 왔으나 점차 가족의 범위를 넘어 공공부조체계에서 장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FGI를 통해 본 장례 문화

1. 초점집단인터뷰(FGI) 개요	63
2. FGI 결과 분석	65
3. 소결	108

III

FGI를 통해 본 장례 문화

1. 초점집단인터뷰(FGI) 개요

이 장에서는 현행 장례문화와 그에 대한 평가, 대안 등에 관한 의견 수렴과 향후 장례문화 실태조사(IV장 참조)의 문항 구성을 위해 실시한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를 정리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는 최근 3-5년간 가족이나 친지의 장례에 참여한 경험(단순 문상 제외)이 있는 20대-5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9.6.25.~7.1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성평등 및 가족변화의 관점에서 현행 장례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 성별, 연령, 가족유형을 고려하고, 관련 업계 활동가들 그룹을 포함하여 집단을 구성(5개 집단, 총 30명)한 후, 각 집단별로 1회(2시간 소요)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가장 최근의 장례 경험을 중심으로 장례의 본질(의미), 성평등 및 가족변화의 관점에서 최근 장례 경험에 대한 평가, 향후 희망하는 본인·가족의 장례방식 등에 관한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사전에 인터뷰 주제와 관련된 일지 작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과정 및 결과는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취 후 전사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FGI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룹	사례번호	성별	연령	가족유형	장례 경험
그룹 1	사례1	여성	30대	1인가구	부친상
	사례2	여성	20대	미혼(부모동거)	친조부상
	사례3	여성	30대	1인가구	부친상
	사례4	여성	30대	유배우 유자녀	친조부상
	사례5	여성	20대	미혼(부모동거)	친조부상
	사례6	여성	30대	미혼(부모동거)	친조부상
	사례7	여성	20대	1인가구	외조부상
그룹 2	사례8	여성	40대	유배우 유자녀	시모상
	사례9	남성	40대	유배우 유자녀	장인상
	사례10	남성	50대	유배우 유자녀	부친상
	사례11	남성	50대	1인가구	부친상
	사례12	여성	40대	유배우 유자녀	부친상
	사례13	여성	40대	유배우 유자녀	외조모상
	사례14	남성	40대	유배우 유자녀	부친상
그룹 3	사례15	남성	50대	1인가구	모친상
	사례16	남성	40대	1인가구	큰아버지상
	사례17	남성	40대	1인가구	모친상
	사례18	여성	50대	1인가구	모친상
	사례19	여성	40대	1인가구	외조모상
	사례20	여성	50대	1인가구	배우자(남편)상
	사례21	남성	50대	1인가구	사촌형제상
그룹 4	사례22	남성	30대	무자녀가족	외조부상
	사례23	남성	30대	무자녀가족	외조모상
	사례24	여성	40대	딸만 있는 가족	부친상, 시부상
	사례25	여성	50대	딸만 있는 가족	외삼촌상
	사례26	남성	50대	한부모가족	외조모상
	사례27	여성	30대	비혼동거	친조모상

그룹	사례번호	성별	연령	가족유형	장례 경험
그룹 5	사례28	남성	40대	유배우 유자녀	지인 /업계활동가
	사례29	남성	50대	1인가구	부모상, 빙부·모상/ 업계활동가
	사례30	여성	40대	유배우 유자녀	시부상/업계활동가

출처: 연구진 작성

2. FGI 결과 분석

가.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

1) 장례에서 경험한 성 불평등

FGI 참여자들은 장례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다양한 성 불평등한 사례들을 이야기하였다. 참여자들은 장자, 부계, 남성 중심의 의례와 절차에서에서 여성들은 주변화 되거나 소외된 경험, 장례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불합리한 성별 역할 구분, 그리고 상조업체·장례지도사에 의하여 주도되는 우리 장례문화의 현실에서 상업화된 서비스와 함께 안내되고 지도되는 이러한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의례와 절차를 경황 없이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경험들을 이야기하였다.

가) 장자, 남성 중심의 장례 문화

□ 가부장적 장례 문화에서에서 상주는 장자(장남)·장손

장례에 있어서 상주는 마치 호주제도가 존재하던 당시 부계·남계를 중심으로 하여 장자를 원칙으로 아들 본위의,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여성(딸)이 그 지위를 보충적으로 승계하는 가부장적인 방식이 그대로 답습·재연되고 있다. 나아가 촌수가 더 멀어도 혈족 남자를 상주로 세울지언정 직계라도 딸은 여자이기 때문에 상주에서 배제시키는 사례들도 참여자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여전히 우리 가족 문화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가부장제와 성차별의 잔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난 달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중략) 저희 언니가 싱글맘인데 애기가 어려서 제가 어찌다 상주가 돼버린 (중략) 제가 상주하는데 저희 큰 삼촌이 굳이 지방에 있는 아빠 쪽 형제한테 전화를 해서 그쪽 아들이 있으니까, (중략) 삼촌이 되게 화를 내시면서 너 여기 상주도 없는데 이걸 아니지 않냐, 빨리 오라고 (중략) 그렇게 해서 사촌들이 돌이 오셨어요, 오빠죠. 그러니까 거의 다 제 손님인데 이게 애매한 게 정말 모르는 저희 오빠들이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인사를 하시니까 저도 이상하고 이분도 뽀죠편하고 (사례3, 여성)

저는 1년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고요. 근데 이제 우선 우리 집은 저희 엄마 형제가 딸밖에 없고요. 저희 엄마도 딸 셋을 낳았고, 이모도 딸 하나를 낳으셔서 그러니까 남자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외할머니랑 평생을 사셨고, 그래서 아빠도 처음부터 이제 그때 장모님하고 사셨죠. 그리고 저도 태어나서부터 계속 외할머니랑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희 애를 낳고서도 계속 저희 애도 저희 엄마랑 외할머니가 계속 키워주셨고, 그래서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중략) 저희는 그런 외삼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친척 외삼촌이 오셔야지 상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중략) 근데 사실 친척 외삼촌은 큰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상주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가 그러면 상주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상주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상주 자리가 계속 비어있는 거예요. (사례 13, 여성)

저는 상주는 원래 오빠가 해야 하는데 워낙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상주를 하다가 쉬러 가 있을 경우에 비니까 남편한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면 안 되나요, 저는 딸인데, 그거는 보기에 좀 안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거기서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 서라고 (사례 12, 여성)

□ 장자·아들·남성 중심의 의사 결정, 여성은 나서지 못하는 문화

참여자들은 장례에서 장자를 중심으로 아들, 남성이 주요한 결정을 주도하고, 딸과 여성은 소외되거나 배제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실제 의사결정자와는 무관하게 장례에서 여성은 나서지 않는 암묵적 문화도 존재한다. 사례6은 외할아버지 장례 때 상조회사가 고인의 첫째 딸인 사례6의 어머니가 아닌 장자를 찾아 주요 의사 결정을 논의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상조회사가 갑자기 찾아와서 모든 일을 다 장자가 결정하게 되는 것. 저희 엄마가 첫째이심에도 불구하고 딸이니까 큰 아들이 나와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되고...한 번도 딸들이 한 적도 없고. 상조회사 처음에 와서 결정할 게 엄청 많더라고요. 재단을 몇 단을 쌓을지, 그 꽃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결정하는데 저희 엄마 의견보다는 아들이 결정하는 대로 하는 걸 보고 그게 좀...(사례6, 여성)

사례18은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자인 큰오빠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 막내딸인 본인은 큰오빠가 무서워서 친정어머니 장례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지도 못했다고 한다.

오빠가 제일 큰 오빠고요. 언니 둘 있고 제가 막내예요. ...시골에서 계속 계셨으니까 오빠 중심으로 다 하는 거죠.
...우리는 오빠가 무서웠기 때문에 입도 한번 뻥끗 못하고...(사례18, 여성)

사례12의 경우 부친상을 경험했던 여성이다. 친정오빠가 있었으나 편찮아서 사실상 장녀로 역할을 많이 했음에도, 장례에서는 주요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업체에서 “남자”를 찾아서 결국 남편을 내세웠다고 한다.

친정 오빠가 있는데 좀 아팠어요. 아프기도 하고, 결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많이 해줬고요. 또 저희 오빠가 아프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거의 장녀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병원에서 뭔가 제가 얘기하고, 제가 뭘 물어보면 남자 분들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같이 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충분히 자꾸 남자분이 없냐고 물어보시니까 좀 부담스러우니까 알았다고 해서 남편이 할 때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남편이 가서 그래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사례12, 여성)

실질적으로 장례를 이끌어가야 할 입장인데 남편의 상을 당해서 앞에 나서지 않고, 방안에만 계셨던 할머니를 보고, 여자라서 저렇게 방에만 계시야 되나라고 생각했다는 사례(사례4)도 있었다.

시댁에서 하면서 느낀 거는 할머니가 밖에 못 나오시고 계속 안에만 계시더라고요. 밖에 나오셔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밖에는 남자만 있잖아요. 할머니는 딱히 친한 분이 있거나 부르면 나오시지만 안에만 계시니까 오히려

려 할머니가 제일 어떻게 보면 그걸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여자라서 방 안에 계속 계시고 하니깐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할머니가 하셔야 되는데, 물론 연세가 많으셔서 힘드신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약간 여자라서 저렇게 방에만 계시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사례4, 여성)

□ 장례 의식과 절차에서에서의 남성 주도와 여성의 소외

사례27의 경우 외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실 때에는 딸들인 사례27의 어머니와 이모가 자주 방문하고 케어를 하였으나, 정작 장례에서는 상주와 조문객 접객 등 주도적인 역할을 남자들이 하고, 딸과 손녀들은 조문객의 식사를 챙기는 일을 하여 기분이 언짢았다고 한다.

저희 이제 외가 쪽이 딸 둘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막내 외삼촌은 돌아가시고 외삼촌이 이제 막내예요. 장례 주도는 주로 외삼촌하고 이모부가 거의 주도를 하시고. 외삼촌이 막내이다 보니까 그 자녀들도 거의 막내잖아요. 우리 집이나 이모는 딸이 있고, 외삼촌이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 집에 저희 세대 때로 따지면 이제 이모의 언니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장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뭐 이렇게 그 납골 그런 거 갈 때 들고 가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손자한테 그거를 맡기고, 손님 접객하는 그런 상주 노릇도 이모부, 삼촌, 그 애들, 그런 식으로. 여자들은 다 식사하시는 데 가서 이쪽으로 가시라 이런 거, 부의금 받는 그런 것만 하고. 저 혼자 속으로 언짢았죠, 장자는 언니들인데. 워낙 할머니가 아들들 하시니까 혼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 저 혼자 언짢았죠. 마지막에 할머니 화장하시고 가루를 뿌렸는데, 그 때도 마지막까지 아들.(사례27, 여성)

발인, 운구, 위패와 영정사진 상식을 올리는 것까지 장례의 주된 의례는 남자가 하고, 여성은 장례에서 소외되는 경험들이 이야기 되었다. 이들 경험자들은 이러한 장례에서의 성별 역할 분담에 대하여 가족 내의 문화나 당사자의 의지라기보다는 장례업체에서 주도하는 대로 따르다 보니 딸이라서 여성이라서 의례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으로 이야기한다.

저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그렇지만 정말 열이 받았던 게 (중략)그건 (영정, 유골함) 남자만 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못 들더라고요. 근데 손녀 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요. 저도 못 들고 언니도 못 들고, 아무도 못 드니까 급기야 근데 외삼촌도 상주분만 있으시고 이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

사진을 들고, 저희 형부가 유골함을 들었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여자들은 아무것도 못 하게 하니깐 아예 손녀들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중략) 저희는 아예 그런 걸 아예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밥을 올릴 때도 저희는 못 올리게 했었나, 절만 하게 하고 밥을 못 올리게 하고 그랬었어요.(사례13, 여성)

그 때 발인이라서 나갈 때도 오빠가 그 힘이 운구함이 무거우니까 남편이 들고, 오빠가 영정 사진을 들었어요. 그때도 저는 딸이니깐 오히려 남편보다는 제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준비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맞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으나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이렇게 해서 보내 드리고 싶고, 딸이기 때문에 아빠 이런 부분을 해주고 싶었는데, 근데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는 선례가 별로 없으시다고 그거보다는 남편분이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서도 큰 소리 내면서 제가 하겠다고 굳이 막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그런 양보들...(사례12, 여성)

□ 조문객 맞는 역할은 남성, 음식 나르는 역할은 여성

많은 참여자들이 장례에서 남성은 조문객을 맞고 여성은 음식을 나르는 전형적 성별 역할 구분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였다. 또 그 안에서 가족 내 며느리에게 요구되는 전통적인 역할이 재연되는 모습도 이야기되었다.

결국 일어나서 서빙을 하거나 음식을 나르거나 하는 건 다 여자의 몫이지, 한 번도 삼촌들이 직접 음식을 대접한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더라고요. 일단 가장 우선은 며느리가 되기도 하고. 저는 아직 미혼이긴 한데 제 동생 같은 경우 결혼해서 올케가 있는데 올케한테 일이 몰리니까 그게 싫어서 저도 일을 하긴 했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혈육이 아닌데도 왜 일을 며느리가 가장, 손주 며느리까지 와서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사례6, 여성)

손님들은 아빠랑 삼촌이랑 고모부가 받고. 사실 딸은 고모인데 고모부가 받는다는 것도, 고모부 지인들이 많이 오기는 하지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들었어요.(사례5, 여성)

남녀의 구분이 좀 확실하긴 했어요. 그래서 상주는 보통 남자, 손님맞이 하거나 이런 건 남자 위주로 하고 음식 만들고 이런 건 여자들이 다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서로의 불만이 아니고 뭔가 당연한 식이어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됐는데(사례7, 여성)

음식 같은 거 내갈 때도 여자를 불러요. 일손이 좀 부족하면 남자 분들은 절대 안 불러요. 여기 와서 이거 좀 도라면 음식 나르고 음식 갖다 드리고 뭘 하다가 일손 하는 데는 여자를 부르고, 남편이 이렇게 가면 남자들 왔다 갔다 하시면 보기 안 좋다고 저기에 가서 서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아니라고, 남자도 해도 괜찮다고, 그 부분은 남편도 같이 도와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아직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자가 해야 하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이런 부분은 남자가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고 해서 하는데 지나고 보니, 아 왜 거기서 그렇게 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 얘기는 한번 할 걸 이런 생각은 좀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는 좀 많이 바뀌어야 할 거 같아요.(사례12, 여성)

□ 장례에서 외가와 친가의 차별

면접 참여자들은 부계중심의 장례문화에서 외가(72)와 친가에 대한 차별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가족 문화의 변화에 따라 정서적으로 친가가 더 가깝거나 외가가 먼 것도 아니며, 오히려 외가와 더 친밀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은데, 장례에서는 친가·부계 중심으로, 외가·모계는 결정과 참여에서 주변적, 후순위로 인식되고 취급된다.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문상의 범위, 민간회사의 경우 경조휴가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저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가깝다고 알고 있는 외가 식구들도 어떻게 외할아버지 상인데 동료들이 다 내려 오냐고 그렇게 할 때 그 약간 이 사회 안에서 제가 어떤 위치인지 되게 많이 확인한 거 같아요.(사례1, 여성)

저희도 회사를 다니다 보면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친할아버지는 상조도 되고 휴가도 되고 돈도 나오는데 외할아버지는 휴가만 나오거든요.(사례3, 여성)

장례에서 상복을 입는 범위에 있어서 손자와 손녀, 그리고 친손주와 외손주의 순서와 범위를 달리 취급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참여자(사례6)도 있었다.

72) “친가(親家)”와 “외가(外家)”는 이미 용어에 부계와 모계를 차별하는 성차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본 보고서에는 참여자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그대로 살려서 사용하기로 한다.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더니 저까지 입을 순서가 안 되는 거예요...이걸 손주까지 입어야 하나. 그런데 다른 분이 저를 아끼셨던 걸 아니까 너는 입어야지, 그리고 나니까 다른 손주가 있고 손주에 또 며느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 기본 패키지에는 한 벌을 추가할 때마다 요금이 이래서 입네 마네 서로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일차적으로 어이가 없었는데 (사례6, 여성)

사례13은 조카며느리로 고인과는 먼 관계라 생각하여 문상만 할 생각이었으나 외손녀보다 우선하여 상복을 입고 장례에 동원되어야 했고, 자신의 외할머니 장례에서는 외손녀라서 정작 의례와 결정에서 배제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저희 시댁 쪽에 큰 어머니이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시댁 쪽의 큰어머니를 거의 뵈 적이 없어요. (중략) 근데 저희 신랑이 인사만 하고 오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친척분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느낌으로 갔는데 옷을 입고 하는 빌려봤다고. 그래서 우선은 눈치를 보고 입었죠. 입고 뭘 하라 그래서 하고, (중략) 가족 간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가서 옷을 입은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옷을 입고 편을 꺾고 거기에서 제가 해야 할 뭇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서 친척들 인사드리고, 앉아 있다가 어느 정도의 그런 사촌들 간에 인사하고 와야 하는 그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옷을 입고 음식을 나누라고 하고, 저한테 뭘 하라고 하고

(중략) 그 몇 달 전에 친정에서는 외할머니 입장이고 딸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더군다나 밥을 먼저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유골함을 먼저 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3일을 제가 있더라도 어떤 걸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아마 43년을 거의 그러니까 가장 근거리에서 보냈던 할머니인데도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현재 상황의 가정 문화에서는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중략) 그거는 여성과 남성과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례13, 여성)

남성 참여자인 사례23 역시 남성(손자)이라도 장례에서 친손자와 외손자의 서열과 역할이 달랐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저는 뭐 작년에 외할머니 돌아가셔서 저는 뭐 서브 역할만 했지 부모님들이 뭐 주로 하셨고요. 저는 뭐 돈 받는 거나 그런 거 했었고. (중략) 외삼촌의 아들 장남인데 저랑 동갑인데 그 친구가 (상주역할을) (중략) 여기는 남자

서열이 되게 심해요, 이 집안은. 그래서 가부장적인 게 되게 심해서, 완전히 머느리들하고 되게 힘들게 하는 뭐 할 때마다 그래 가지고(사례23, 남성)

□ 장례에서 여성, 외손은 이름 순위도 밀림

사례6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 가장 친하게 지냈지만, “외손녀”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안내 되는 이름 순위에서도 뒤로 밀린 경험을 들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7남매이신데 워낙 가족이 많다 보니까 상주 이름을 쓸 때 저 같은 경우는 외할아버지랑 가장 친하고 가깝게 지냈던 손녀지만 저는 이름 순서에서 밀리는 거죠. 손녀 이름까지 나오기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사례6, 여성)

병원에도, 그 장례식장에도 화면 있잖아요. 보이는 그런 그런 거. 그러면 첫 번째 아들 누구, 그 밑으로는 딸. 또 혼자 언짢은 거예요. 그렇게 순서대로 나와도 되는데 굳이 아들 먼저 나와야 될 이유가 있나.(사례27, 여성)

나) 상업화된 장례를 통하여 서비스로서 제공되고 다르게 되는 가부장적 의례와 절차

□ 장례(상조)업체·장례인력의 성차별적 의례 진행 사례

성차별적인 장례 문화가 개별 가족 내의 가부장적 가풍만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 사회가 변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이고 성차별적 습속이 상업화된 장례 의례 안에서 무비판적으로 또 저항하기 어렵게 시행되는 모습을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들어 볼 수 있었다.

중간 중간에 또 절하는 과정도 있고 한데 거기 이제 상조회사에서 이끄는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아들 먼저 나오세요, 손주 먼저 나오세요, 무조건.(사례27, 여성)

부친상을 당한 사례1의 경우,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가 장례에서의 성별 역할을 강요하여 매우 갈등을 겪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사례1 본인이 첫째 딸이고 남동생은 어려서, 본인이 장례 관련 주된 의사를 결정하고

상주 역할을 하여 장례를 치르려고 했으나, 자신이 남녀차별 없이 진행해달라는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지도사가 상주는 남자여야 한다고 굽히지 않고, 장례 내내 남녀 역할을 구분하고 강요하였다고 한다.

제가 장례를 치렀던 곳은 ...시립 장례식장에 시립 화장터였고. 그 장례식과 관련된 장례식장 예약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화장 절차라든지 아니면 유골함 계약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상조, 도우미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딱 다 저한테 상주님이라고 하는데 그 장례지도사 혼자만 제가 상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략) 남자 여자 따로 앉는 자리가 있고 그거는 전통의 무슨 의미가 있고. 상식을 아침, 점심, 저녁인지 아침, 저녁인지 모르겠는데 올리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뜨고 이거를 꼭 남자만 해야 되고 동생한테 계속 상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략) 뭐 결정할 때도 계속 남동생을 불러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제일 짜증이 났었고. (사례1, 여성)

외할머니 장례 경험이 있는 사례13의 경우도 외할머니에게 딸만 있어서 친척 외삼촌(외할머니의 조카)이 올 때까지 장례에 상주자리를 비워 두었어야 했는데, 상조업체 도우미가 상식을 올리는 의례부터 발인을 나가는 날까지 의례마다 상주가 와야지 한다고 하여 곤란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친척 외삼촌이) 좀 많이 늦게 오셨으니까 그건 그러면 방(빈소)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빠는 거기를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는 밖에서 손님을 맞고, 첫날은 되게 이것도 하러 다니고,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엄마도 계속 서류 때문에 다니고 그런 걸 하니까 그 방은 계속 비어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밥을 올리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상주가 와야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못 하는 거예요. (중략) 그 분(상조업체 도우미)이 계속 이제 상주가 안 왔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가는 날까지도 상주가 와야지 나가고.(사례13, 여성)

- 의례 절차 뿐 아니라 장례관련 의사결정 논의에 있어서도 장자·남자를 먼저 찾는 장례업체 - “상갓집에서 이렇게 여자가 소리를 내지 않는데”라는 이야기도 들어

시아버지 장례를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른 사례24 역시 병원 장례식장 업체에서 장남만 찾아 의사결정을 논의하며 진행이 됐다고 한다.

거기는 ○○대학병원이었는데. 아, 병원 얘기해도 되죠? 어디든 가면 딱 저기 누가 가장, 장남이 누구신가요, 그러면서 장남만 거의 끌고 가듯이 데리고 가서 방에 들어가서 막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사례24, 여성)

돈 결제나 뭔가 중간에 정산해야 될 때에는 제가 가서 따지면 남편분도 같이 데리고 오시라고, 남편 분은 없으시냐고, 이런 부분을 따지시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거나 따지거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보이시는 거예요. 상갓집에서 이렇게 여자가 소리를 내지 않는데 이런 식의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굳이 또 이런 데서 좋게, 좋게 조용하게 하고 싶으니까 남편을 또 보내고, 저는 딸이고, 제가 장녀 역할을 하고, 집안 대소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제가 결정을 하거나 될 할 때는 저의 의사가 잘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사례12, 여성)

사례1은 장례 빈소에서 뿐 아니라 어머니 묘를 이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묘지를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이장 시 장자가 와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자녀인데도 딸이어서 겪은 차별적인 사례이다.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를 다시 모실 때 어머니 묘를 개장을 해서 다시 이장을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뭐지? 이 묘지 관리하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사무실에서 이장할 때는 첫째가 아니라 장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사례1, 여성)

다) 장례 이후 제사로 이어지는 가부장제·장자 중심의 문화

장례 이후 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 역시 장자 중심으로 이어진다. 명절과 제사를 둘러싼 우리 사회에서의 가족 내 갈등은 변화하는 가족과 성평등 가치 그리고 여전히 장례로부터 제사로 이어지는 가부장제의 잔재가 남아 재연되는 의례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장례 문화는 3일의 장례 기간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장례식에서 큰소리 내기 싫어서 또는 장례기간만 참고 지나간다 하여도 망자를 보내고 추모하는 이후 매년 돌아오는 기일·명절마다 이어지는 제사 문화로 재연·반복되고 갈등은 분출된다.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중략) 그때 문제가 된 건 제사를 누가 치를 것인가. 저희 큰 외숙모가 되게 화가 나서 ...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그러면 우리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자 이랬는데 삼촌이 3년은 그래도 지내야 된다 자기 집에서.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인가 내년부터는 또 돌아가면서 지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번에 성묘 갔을 때 삼촌이 아무리 생각해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여자가 제사 지내는 건 아닌 거 같아, 내가 장자니까 내가 지내겠다 이랬는데 숙모랑 의논을 안 한 거예요. (중략) 큰 외숙모는 자기도 하기 싫은, 맨날 사이가 안 좋던 시부모 제사를 다 독박을 쓰고 이러는 거? 큰 오빠가 우리 부모님 황혼 이혼 하겠다, 저는 웃고. 되게 이후의 절차도 많은 거 같아요.(사례1, 여성)

라) 장례, 그래서 남자, 아들 아들 하는 건가?-소외감·서러움

남성, 아들 중심의 장례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경험을 한 여성 참여자들은 회의감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한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남아선호나 아들을 꼭 낳아야한다는 관념도 없어지고, 반드시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관념도 희박해진 오늘날 현대의 일상의 삶에서 가부장 문화를 장례를 통하여 경험한 여성 참여자들은 새삼 소외감·서러움을 느낀다. 외할아버지와 가장 친한 손자녀였다는 사례6은 외손녀로서 장례 의례에서 소외되고 순위가 밀렸던 경험에서 “그래서 아들이 중요한가?”라는 회의감을 느꼈다고 한다. 당장 결혼 생각은 없었던 사례3은 장례를 치르고는 “서러워서 결혼해야겠다, 아들을 낳아야겠다”고 반응담을 했다고 한다.

내가 여지껏 결혼은 하되 아직 급하진 않아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반 농담 삼아 서러워서 결혼해야 되겠다, 아들 낳아야 되겠다 라고.(사례3, 여성)

저는 조금 남녀차별을 느꼈던 거는 제가 저랑 저희 오빠가 있는데 그 부의금을 받을 때 오빠는 거기 앞에 나와 있을 수 있고 저는 그 안에서 돈을 세서 엑셀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왜 나는 나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빠가 너무 피곤해해서 한번 교대를 한 적이 있어요. 교대를 했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조금 초라해 보인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아들 아들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례5, 여성)

2) 가부장적·성별적 위계의 흔들림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가 상업화·획일화된 전형적인 장례를 통하여 경험되고 있으나, 가족·개인은 이미 변화해왔고 이에 따라 가부장적·성별적 위계가 흔들리고 있는 사례들도 참여자들을 통하여 엿볼 수 있었다.

가족마다 조금씩 다른 분위기나 가풍과 교차되는 모습-가족마다 조금씩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 장례에 있어서도 변화하는 사례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영정이나 위패를 남자가 들어야 한다고 장례지도사나 집안의 어른이 강하게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이 이야기되었으나, 장례에서 친손녀인 여성이 위패를 든 사례(사례3)도 있었다.

그런데 저희 집도 엄청 남자, 여자를 가르는 집은 아니어서 또 제가 할아버지 패를 들고 갔었어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오빠가 사진을 들고 제가 패를 들었는데 패가 맨 앞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번에도 남자여서 오빠가 맨 앞에 서고 나는 그 뒤쪽무니만 따라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좀 제일 앞에 서서 그게 조금 신기하기도 했어요...가족들이 할아버지가 그래도 친손자녀가 오빠랑 저 밖에 없어요.(중략) 제일 너희를 예뻐했으니까 오빠가 너가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들었어요.(사례5, 여성)

장례가 친밀한 가족들이 고인을 보내며 애도하는 의식이다 보니, 고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의례에 영향을 주는 사례도 보인다. 사례7의 경우 고인이 극진히 사랑했던 막내딸이 위패를 들었다고 한다.

외할아버지가 가부장적이고 혼을 많이 내시고 딱딱한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모랑, 이모가 기억하는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기억하는 이미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모를 엄청 많이 예뻐하시고, 막둥이니까 예뻐하시고 안아 키우고 (중략) 유일하게 막내 이모만은 그게 가능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액자 사진은 큰 외삼촌이 들고 가고 막내 이모가 패를 들고 갔거든요.(사례7, 여성)

또한 실질적으로 고인의 살아 생전의 병원비부터 장례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과 비용부담을 맡아 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 구성원 각각의 경제력, 관계 등이 이제는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1 역시 장례 관련 의사결정

과 비용 등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남동생이 아닌 딸인 자신이 부담했다고 한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장례업체에서 나온 분은 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주는 남자가 해야 한다고 하여 갈등을 빚은 사례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장자에게 기대되는 부양에 대한 부담이 변화하고 있다. 딸이든 아들이든 실질적인 부양 능력이나 경제력, 관계 등에서 역할의 변화가 있고, 일종의 마지막 부양과 돌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례에서도 실질적인 기여자가 반드시 장자인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의사결정자 내지 기여자와 의례에서의 플레이어가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고 이러한 간극은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에서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아빠 병원비도 제가 제일 많이 냈고 제가 첫째라서 이것저것 의사 결정 다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되는 병원에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 다 했는데(사례1, 여성)

장례 문화에 있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러한 가부장적·성별적 위계의 흔들림은 가족과 개인의 가치와 의식의 변화에 맞지 않는 현재의 장례 문화가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개인과 가족이 지극히 사적인 도전과 선택으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 장례 문화는 단지 개인과 가족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경험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가부장적·성별적 위계, 그로 인한 소외와 배제 뒤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장례의 실태와 그 대안에 대하여 FGI 참여자들의 경험과 진술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 장례의 기억

1) 장례의 루틴 1: 다양한 죽음, 같은 장례(장례식장에서의 3일장)

FGI 참여자들이 경험한 장례는 대체로 상조회사나 장례식장과 연계된 전문 업체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품이나 고인의 죽음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정상의 차이가 다소 발견되기도 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다양한 상황들과 달리 장례식은 ‘장례식장에서의 3일장’이라는 루틴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친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다가 노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동안은 전혀 몰랐었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큰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에 가족들에게 알리고 상조회사에 납입을 하고 계셨다고 하셔서, 상조회사에서 올 거다, 다 알아서 할 거다. 그래서 3일장을 치렀는데 비교적 노동이 편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어요(사례2, 여성).

작년에 외할아버지랑 시할아버지께서 같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기간을 안 두시고. 외할아버지 원래 좀 많이 아프셔서 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저희는 워낙 오래 아프셨으니까 상조를 다 가입을 해놨어요, 양쪽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해서. 상조 끼고 장례는 치렀거든요(사례4, 여성).

작년 6월에 저희 할아버지, 저의 첫 상을 당한 거였는데 노환으로 돌아가시기 했지만 워낙 건강하셔서 저희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영정 사진과 수의만 갖고 있던 상태에서 급하게 상조회사만 불러서 장례를 치렀고요(가입을 하지 않고 일회성만 이용). 바로 한달 전에 저희 삼촌께서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용했던 상조회사를 소개해서 그렇게 상을 치르게 됐고요(사례6, 여성)

돌아가시고 병원 장례식장으로 갔고요. 그리고 저희는 상조나 그런 건 따로 안 했고 그 병원에서 하는 거로 해서 저는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2박 3일로 해서 했었고(사례8, 여성)

저 같은 경우는 부친상을 당했고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한 달 정도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장이 병원 장례식장을 가보니까 좀 협소해서. 상조회사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거기로 가서 장례를 지냈습니다(사례10, 남성).

이처럼 다양한 상황, 다양한 죽음이 같은 장례로 수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장례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닌 장례의 특성상 정보수집이나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편이며 평소에 장례나 죽음을 이야기하고 준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여건 등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할아버지가 점점 물론 오래 사시기도 하셨고 누군가는 호상이다 말씀도 하셨고, 암에 걸리셨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점점 지나실수록 가족들이 아빠 쪽이 6남매이신데 다들 준비를 하셨던 거 같

아요. 고모들도 수의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영정 사진 찍어놔야 되지 않겠냐,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준비를 조금씩 하셨어요(사례2, 여성).

시댁에서는 처음 겪는 장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처음이라서 솔직히 좀 우왕좌왕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또 큰아들이다 보니까 그때 나중에 납골당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납골당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약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바로 가는 상황으로 절차를 했었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또 이제 막상 닥치니까 가족이나 시댁, 친정 합쳐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고, 저희 신랑이 아주 힘들었고 큰아들이라서, 더 힘들었고(사례8, 여성).

저는 최근에 장인어른이 작고하셔서요. 질병은 아니었고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또 저도 해외 출장 중인데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돌아오는 일이 생겼고요. 제 경우는 본인께서 다니시던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모셨고요. 또 상조 회사를 제가 몇 개좌를 가입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 사용했습니다. 처남이 아무래도 그런 큰일을 치러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사례9, 남성).

2) 장례의 루틴 2: 묻지도, 따질 수도 없는 장례

참여자들의 경험 속 장례의 두 번째 특징은 장례의 절차와 과정, 방식에 대해 묻지도 따질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장례 절차나 의식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가족)와 전문대행업체(상조회사, 장례지도사 등) 사이의 정보비대칭성과 정형화된 의식, 절차 중심적인 장례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 정보의 비대칭성과 주도권 상실

장례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거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장례식은 가족(주체)보다는 상조업체나 장례지도사가 과정 전반을 주도하게 된다. 상조업체나 장례지도사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맞아 경황이 없는 참여자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적지 않은 당혹감과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아버지하고 여동생하고 저, 그 상조업체 그 사람이 장례 치르는 거 전문이라고 해서 사람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했어요. 절차는 그 사람들이 잘 아니까(사례10, 남성).

저는 남의 장례식장은 엄청 많이 가봤어요. 심지어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 어떡해야 하나, 예를 들어서 상조 회사도 가입이 돼 있고 어차피.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중략) 아무리 경험이고 뭐고 이게 다 필요 없더라고요. 이게 막상 상황이 되니까 경황이 없더라고요(사례11, 남성).

저희 어머니를 보내 드렸는데 치매를 좀 오래 앓으셔서 돌아가셨을 때 다들 호상이라고 좋아하는 상이었거든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2주 정도 입원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중략) ○○상조에 들어 있으니까 상조 딱 오게 되면 뭘, 음식부터 해서 옷부터 해서 짝 상담을 해서 선택을 하고 상담이 딱 끝나면 그 다음 프로세스는 상조 애들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사례15, 남성).

떠오르는 게 ○○상조더라고요.(미리 가입해두신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는 없었고요. 전화를 하니 바로 왔대요, 장례식장에. 그거 다 연결이 되어 있나 봐요 미리. 한 10분인가 안 돼서 사람들이 짝 오더라고요. 그쪽에서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제가 그걸 보고 참 이렇게 편안하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죠. 일사천리로 전부 다 해달라 했죠. 자기네들 사람들 입구 들어가는 것부터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인사하는 것까지 사람들을 짝 배치를 해주더라고요. 식당에 여성 분 세 사람, 사람 인원이 많으니까 네 사람 정도 지원해주고. (불편함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못 느꼈죠. 마지막에 음식 값이, 계산할 때 음식 값이 엄청 비쌌죠. 그걸 생각을 못했죠(사례21, 남성).

참여자들이 장례 과정에서 경험했던 대표적인 부정적인 경험 중 하나는 장례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가족들의 주도권 상실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례에 관한 정보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례식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장례 과정은 고인이나 가족의 욕구나 의지보다는 상조회사나 장례지도사가 제안하는 ‘절차’와 ‘옵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장례의 주체인 가족들은 각 절차, 의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검토 없이 정해진 의식을 따르거나 주어진 ‘옵션’ 안에서 제한적인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상은 처음인데 어찌다 보니까 제가 상주가 된 거예요. (중략) 이것저것 상품 설명, (중략) 딸 둘이다 보니까 저희가 메인으로 가서 상품 설명을 받는데 엄마도 사실 잘 모르시는데 저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했고(사례3, 여성).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중략) 암이 있으셨으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빨랐어요.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갑자기 중환자실로 들어가시고 바로 이틀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중략)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뭐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닥칠 때마다 얘기해 주실 때 그때그때 결정을 한 거예요. 수의 결정하고, 뭐 결정하고, 음식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면 그때 메뉴 보여주시면 정신없이 저희는 정말 그때그때 보여주는 대로 뭘 하셔야 한다 그러면 그때그때 결정을 해서(사례12, 여성)

병원에서 기본적인 장례 절차는 다 해주고요. 조화나 이런 걸 아예 다 메뉴판을 갖고 오세요. 조화 리스트를 갖고 와서 착착착, (병원에) 고정된 업체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메뉴 중에서 A, B, C를 선택하시면 구성을 알아주시고 이러시니까 정말 말 그대로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사례19, 여성)

(배우자의 장례여서) 완전 실신했었죠. (중략) 거의 그냥 실신해서. 그러고 있었고. 옷 맞추는 거는 검정 한복 입고 아들들은 검은 양복 그거 그냥 대여 얼마 얘기하더라고요. 함 그거 고르라고 그래서 고르고. 거기(병원장례식장)에서 그냥 다 해주셨어요. 컵이고 뭐 그런 거는 거기서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기억이 별로 없어요(사례20, 여성).

○○대학병원이었는데. (중략) 뭔가 빠고 조율할 시간도 없고, 급하기도 하지 만 싹 다 해야 돼요. 저는 며느리인데, 저는 별로 옷은 입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안 입어도 되는, 다른 거 검은 거 입어도 되는데. (중략) 거기서 무조건 이렇게 입든 안 입든 가족 수를 조사한 다음에 금액을 딱딱 메겨서 무조건 돈 내야 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사례24, 여성).

그러니까 우리는 (상조업체)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뭐 상을 하나 더 차려야 한다, 또 시간이 지나면 상을 차려라, 뭐 이렇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은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상을 하나 더 차리세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사례25, 여성).

일부 참여자의 경우, 장례방식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으나, 의례나 관습을 이유로 묵살당하거나, 스스로 체념했던 경험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장례식을 기억할 때 고인에 대한 상실감과 함께 장례 과정에서의 불쾌감과 불편함, 아쉬움에 관한 이야기도 상당수 청취할 수 있었다.

(장례식을) 유교식으로 할지 교회식으로 할지 이런 결정을 한 다음에 이것 저것 엄청 많은 걸 결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따로 부탁하는 게 있냐 그래서 저는 자랄 때 저희 집은 남자 여자 구별 없다, 차별 없이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빈소에 들어가자마자 이 뭐지? 오른쪽은 남자가 서는 데고 왼쪽은 여자가 서는 데라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제가 되게 화가 나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한다, 신경 쓰지 말아라,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싸웠던 기억 밖에 없고(중략) 그래서 장례를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나고. (중략) 마지막 날쯤에는 너무 기운이 빠져서 너는 네 맘대로 해라 이라고 약간 싸우는 걸 포기하게 되는? 그런 거(사례1, 여성).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이렇게 해서 보내 드리고 싶고, 딸이기 때문에 아빠 이런 부분을 해주고 싶었는데, 근데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는 선례가 별로 없다고 그거보다는 남편분이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서도 큰 소리 내면서 제가 하겠다고 굳이 막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그런 양보들, (중략) 그냥 그러려니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고 해서 하는데 지나고 보니, 아 왜 거기서 그렇게 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 얘기는 한번 할 걸 이런 생각은 좀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는 좀 많이 바뀌어야 할 거 같아요(사례2, 여성).

나) 의례와 절차에 압도된 장례(애도와 추모가 없는 장례)

참여자들이 장례과정에서 경험했던 또 다른 부정적 경험으로는 의식과 절차에 압도된 장례문화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장례문화 속에서 장례식은 애도의 형식과 절차, 조문객 접대에 치중되면서 정작 고인에 대한 애도나 추모,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위로는 찾아볼 수 없는 장례식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참여자들이 장례식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일 치러 내듯 후다닥 치러낸 장례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장례를 치르면서) 한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의식들을 한다거나, 염을 하고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절을 하고 밥을 올리고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가족이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의미가 있는 행동이 아니고 우리나라 예법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지도사가 하라면 다같이 절을 하고 우르르 가서 절하고 빠지고. 하면서도 내가 할아버지를 추모하는 것과 별개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더 간소화하고 가족끼리 고인을 기리는 자리로 간편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사례6, 여성).

정작 슬프고 힘든 사람이 나인데 내가 너무 위로받지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중략)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이게 과거 예도에 얽매어서 혹독한 그 일정을 치르고 있지 않나(사례9, 남성)

조문 시간도 아침 10시에 오시는 분도 있고 밤에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다 하고 치우고 뭐 하다가 보면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절차들을 다 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많이 울었던 거 같아요(사례12, 여성).

입관하고 발인하고 화장하고 뭐 장지 가서 끝나고 이런 식으로 공장에서 하듯이, 결혼식하듯이 찍어내듯이 딱딱 하고 끝나는 식으로 하고 끝나더라고요. (중략) 그러고 나니까 3일 후에는 남는 게 거의 뭐, 이게 뭐한 건가 싶은 그냥 피곤하고 후다닥 지나간 그런 느낌만 있지 고인에 대해서 뭔가 애도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정신없이 하나 해치웠다 그런 느낌. 그리고 나서 피곤함만 남고. 하기는 했는데 결국 그냥 한 거구나. 어떻게 보면 애도하는 느낌이 아니고 정신 없이 따라가는 듯한, 누가 쫓아와서 그걸 빨리 해야 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사례16, 남성).

우리 엄마가 간편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 거 깨끗하게 해서 그냥 그렇게 보내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동네에서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하기때문에. 그때 마음대로 울지도 못했어요, 오빠가 무서워서. 울면 오빠가 동네 사람들 보기에 체면이 안 설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몇 촌 오빠들이 조용하게 지내자 이래 가지고 우리 그냥 조용하게. 표현 못했죠(사례18, 여성).

100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75세 아들이 장례를 해야 하니까 이 양반들이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셔서 절도 못 해요. 그리고 싸늘한 향냄새 맡으면 서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가족들끼리 도란도란 이런

게 추모를 하고 기억들을 소환해서 그 병원에 가야 나누고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없죠(사례29, 남성).

의례와 절차 중심의 장례는 애도와 추모, 위로라는 본질적 측면의 상실과 더불어 유가족들의 실제적인 불편함과 고통 또한 가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히 많은 참여자들이 밤새 장례식장을 지키거나, 불편한 상복을 입고, 3일 동안 실 새 없이 조문객을 응대하는 장례 과정을 피곤하고 고된 과정으로 떠올리고 있었다.

아버지 장례식 치를 때 기억은 제가 상주가 돼서 맞는 장례식이니까 인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손님이 영정에 절하고 저한테도 절해야 되는데 손님이 캐주얼 하게 절하고 가도 피곤한데 손님이 상주들하고 맞절하고 나서 말이 길어지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중략) 저는 이미 피곤해서 혼이 나가 있고 손님이 슬퍼 가지고 이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확실히 고인의 주변인들이 슬퍼하기 힘든 거 같아요(사례1, 여성).

손님이 많아서 일을 하는데 묘하게 여자들이 서빙을 하는데 치마가 너무 길어서 제가 밟고 자빠진 거예요. 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긴 치마와 더워죽겠는데 저도 6월에 장지까지 그 까만 한복을 입고 갔는데 죽겠는 거예요. 이게 뭐 슬프고 자시고 빨리 이거 벗고 싶다. 그래서 오는 길에 저 혼자 묘지에 있는 화장실 가서 제 옷으로 갈아 입었더니 혼자 튀다 고 욕을 하고, 그게 너무 억압 받고 불편하고 더워 죽겠는데 굳이 이것을 왜 입어야 하는지. 평소에 우리가 전통 의상을 즐겨 입는 나라도 아닌데 갑자기 생뚱맞게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사례6, 여성)

제가 불편했던 건 (중략) 쉴 자리가 너무 없는 게. 저희조차도, 저희는 아들 데리고, 외사촌 동생들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원래 집에 가서 자고 오거나 다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들 눈이 시뻘개져 있고. 어른들은 다 못 쉬고 있으니까 그런 게 불편했어요(사례7, 여성).

사실 (장례)하면서 다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밖에 없어서. 하는 동안에 서로 너무 막 체력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밖에 없어서 좋은 기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략) 일단 뭐 가장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하루 밤 새고 나면 그 다음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하니까. 다리 쪽 뻐고 설만한 곳도 없고. 그게 조금 보면서도 가족들이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 당시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고(사례22, 남성).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례를)그거를 왜 밤을 새워서 해야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갔고요. 그리고 며느리까지 다 오라고 해서 하는 것도 저는 싫고요, (중략) 그게 계속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물론 슬프기도 한데, 3일동안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가지를 못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중략)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사례23, 남성).

고인에 대한 애도와 추모가 사라진 장례의 풍경은 조문객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조문객들 역시 ‘의례’상 조문(“절하고, 술 먹고, 밥 먹고”)을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정작 고인에 대한 기억(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이 아닌 다른 기억(지인들과의 만남, 조문객의 수 등)이 더 인상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회고하였다.

저는 그렇게 세 번 치르면서 느끼게, 왜 저렇게 와서 시끄럽게 하는 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뭐 그런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그런 자리일수록 왓자지껄하게 조금 더 가시는 분에 대한 예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처지에서는 좋게 보이지 않더라고요(사례22, 남성).

장례식장에서 남자분들 고스톱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 여기 와서 고스톱을 치는 지. 그 광경을 항상 보는 것 같아요. 항상 치는 사람이 있어, 고스톱을 깔아 놓고 그 사람들 진짜 즐거워하면서 재미나게 쳐요. 시끄럽고 진짜 막 고스톱 치면서. 거기 와서 돈 따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진짜 상주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봤어요(사례25, 여성).

그동안 장례 했던 거 보면 그 조문객 오는 사람의 80%는 누구인지도 몰라요.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인사하고 그분들이 사실 슬퍼해서 오겠어요. 뿌린 대로 거두고, 계속 주고받기니까 오지(사례27, 여성).

(조문객)그분들께서 오시면 뭐합니까. 그냥 절하고, 술 먹고, 밥 먹고 가시잖아요. 그 가시고 난 뒤에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고(사례29, 남성).

그런데 FGI 과정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이 같은 의식과 절차에 실상은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 이로 인한 혼란 또한 적지 않았다.

입관도 저는 첫날에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버지 할 때는 다음 날 해도 된다고, 아마 입관식 대여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중략) 뭔가 딱 정해진 건 아닌 거 같아요(사례1, 여성).

유교, 불교, 기독교 모든 게 다 짝퐁이 돼 있어요. 뭐다 그 기준이 없더라고 요. 하다못해 상조 회사에서 담당하는 그 사람조차도 정리가 안 돼요. 뭐는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아니면 또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헛갈리더라고요. 어떤 게 예절인지 이 기준이 너무 불분명하더라고요(사례11, 남성).

마지막 발인 날에는 새벽에 꼭 나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굳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지. 왜냐하면 밤새 조문객 받고 아침 5시인가 6시에 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고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여기를 비워주고 정리를 해주어야 다음 손님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아웃인 거예요(사례19, 여성).

다) 너무 비싼 장례, 돈으로 치르는 장례(상업화된 장례)

현행 장례문화에 대한 또 다른 부정적 경험으로는 장례식과 이후 관련 절차(납골당, 매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점이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불합리하고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장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비싼데다가,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음식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으며, 이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이 요구되어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 다양한 경험이 공유되었다.

3일장. 대략 97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것도 카드로 끊으려 하니까 현금을 달라더라고요. (중략) 장례식장 음식 값 계산하는 쪽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도 카드로 하려니까 비싸요. 현금을 달래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900을 줬죠. 들어오는 부조금으로 정산 해가지고 바로 현금(사례21, 남성).

수의 같은 경우도 그게 중국산 수의면 잘 안 씌는데 몇 십만원, 3, 40만원이고 국내 한산 무슨 마로 하면 200만원인가 150만원인데 일주일이면 씌는 다. 그래서 그거로 하라는 식으로 중간에 와서 계속 영업을 하더라고요 업체에서(사례16, 남성).

상복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되어 있으면 오밤중에 손님들은 어떻게 알고들 금방금방 와요, 돌아가신 지 2, 3시간 만에 오시죠, 빨리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5000원짜리 양말 10000원 부른다고 하더라도 빨리 해야죠 뭐(중략) 급하면 그냥 비싸도 내고 하죠. 안 그러면 마트 가서 사서 오는 거고.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인 거고. 내가 그 수고 안 하려면 그 비용 지불해야죠, 별 수 없죠(사례17, 남성).

저희가 전라도이다 보니까 흥어나 이렇게 외지 음식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절대 반입이 안 된다고, 거기 있는 것만 쓰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음식이 그렇게 맛있거나 그러지도 않고. (중략) 그분들은 마음 쓰셔서 (조화) 보내신 거긴 한데 정말 하루 정도, 이를 정도 쓰고 나서 몇 십 만원이 날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돈으로 치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사례19, 여성).

장례 치를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해야 한다, 뭐, 거기서 알려준 대로 이렇게 했더니 바가지요금을 씌우더라고요(중략) 화장을 하는데 갔는데 그게 또 있는 거예요. 로열층이 있고, 1층은 가격이 저렴하고, 구석진 데는 더 가격이. 완전히 천차만별로 또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또 어느 쪽으로 하느냐 그런 거를 가지고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간소하게 부담이 없는 그런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사례25, 여성).

가장 큰 문제가 비용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내 장례를 치르려면 최소한 2000 이상은 내가 현금으로 주고 가야 하겠다. (중략) 이거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 돈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사례26, 남성).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살 수 있지만 장례용품 쪽은 전혀 모르잖아요. 원가가 얼마인지, 부르는 게 값이고, 그리고 굉장히 교묘한 마케팅 기법들이 발달해서 당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독점적이다 보니까 식음료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비싸요. (중략) 여기는 공정 가격이 없어요(사례29, 남성)

3) 우리는 왜 이런 장례를 하고 있는가?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과 불편함을 인식하면서도 현행 장례의 루틴이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장례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 (한번 넘어가면 되는 일), 죽음이나 장례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환경(정보의 부재), 엄숙한 장례 의식과 절차를 두고 합리성이나

손익을 따지는 것에 대한 터부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례 하는 게 일상적으로 늘 필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쯤은 생각하지
만 어머님 돌아가실 거 같아, 이걸 늘 고민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장례식장을 갔다가 아, 맞아 나도 하나는 지금쯤 준비할 때가 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더라도 또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급한 일이 아니니까
(사례30, 여성).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이 당하고 내가 장례 몇 번이나 치르겠냐고 그러면서
넘어가고 잊어버리고 거죠(사례29, 남성)

첫째 날이 되게 많은 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돈, 단을 얼마큼 해야
되지 그런 게 다 눈앞에 보이는 돈들이니까 좀 싼 걸 선택하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같은 느낌도 들고(중략) 저는 시립에서 하나가 굉장히 저렴
하게 했는데, 그리고 현금영수증도 받고. 그런데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잖아
요. 현금영수증 요청하면서도 이것을 받는 게 맞나? 내가 이런 거 따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사례1, 여성)

기존의 장례 의식이나 절차가 허례허식이라 여기면서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로는 ‘장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래된 통념의 압박을 들 수
있다. 아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문객의 수나 조화의 수, 수이나 관
의 가격과 질 등을 통해 가늠되는 “잘 치른 장례”에 대한 문화적 규범은 참여
자들에게도 깊숙이 내재되어 불편하고 부당한 기존의 장례의식과 절차를 수용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당연히 즐거운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적복적
하면서 저는 좀 좋게 보내 드리고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제 친구라든지
저는 거의 다 불렀거든요(사례8, 여성)

저희는 대부분이 미국에 식구들이 있다보니까 사실 우리 가족들은 별로 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게 진짜 슬프더라고. 그런데 제가 반전이라면 반전일
수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많은 인맥, 좋은 관계를 맺은지 몰랐어요,
(중략) 근데 (조문객이) 어머어마하게 오신데,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인간관계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일단 제 나름대로 반성도 하
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사례11, 남성).

비싸서 안 쓰고, 허례허식 같아서 안 쓰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 불효자 식 하는 거야, 왜 안동포를 안 입혀(사례17, 남성).

같은 날 맞은 편 빈소에 손님이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조화도 없고 좀 썰렁한 거 보니까 좀 마음이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면 저 집들은 아들들이나 자녀들이 잘했나 봐 이렇게 평을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이 너무 작아서 그럴 수도 있고 워낙 핵가족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조화가 얼마나 와야 그 장례가 잘 치러진 거고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중략) 요새는 장례 하객 대행도 있다 하더라고요. 조문객이 너무 적으면(사례19, 여성).

다. 도전받는 장례: 변화하는 의식, 가족

1) 변화하는 의식과 장례

이번 FGI에서는 변화하는 의식과 가족 변화를 중심으로 도전 받는 기존 장례 의식, 의례의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에서는 획일적, 의례 중심적 기존 장례 문화가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도전받고 변화되어 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3일장, 너무 길어요.

먼저 참여자들이 기존 장례와 관련하여 제기한 문제점은 3일을 기본으로 하는 장례 기간에 관한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3일장이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정형화된 절차와 의식을 따르며 발생하는 비용부담과 추모와 애도보다 접객에 치중하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일장이라는 것도 전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새 같이 바쁜 시대에 무슨 3일장이야? 하루만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하루해서 굳이 손님을 불러서 밥을 먹이고 그런 거는 안 먹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받고 그런 거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3일장, 손님 많으면 5일장으로 되는 거지 무조건 3일장이라는 거 자체도 불편한 거 같아요(사례19, 여성).

그 시간, 개인이 묵히고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재산, 거의 다 기회비용이잖아요. 3일 이런 시간이. 그거 나서 병 생겨서 본인이 뭔가 낭비될 수 있는 것들. 그다음 오히려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 그런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이런 거를 많이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돈도 아닌 거예요(사례26, 남성).

아무리 슬프다고 해도 3일은 정말 너무 긴 것 같아요, 정말. 슬픔 보다는 이제 피곤함이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주객이 전도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요즘의 장례는(사례27, 여성).

□ 부적복직한 장례, 피곤하고 부담스러워요!

지나치게 많은 조문객들과 그에 따른 접객 부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부의금 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고인에 대한 애도가 아닌 형식적 조문과 ‘예의’와 ‘부담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부의금, 부조문화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빠 지인도 너무 많고 삼촌 지인도 너무 많고 또 고모부도 지인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이게 사람을 보내주지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사실 우리 할아버지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사례5, 여성).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부조 문화 때문에 되게 부담이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저는 제가 처음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 주변에서도 빨리 문자라든가 뭘 쓰라고 했는데 그게 괜히 돈 달라는 사람 같아서(중략) 부조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 주고 안 받고(사례3, 여성).

부조금이라는 게 사실 조금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은 그걸 생각하거든요. 부조금 나가겠다, 부조금은 경조금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그런 부고를 알기는 것은 예의이거든요.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사례9, 남성)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부고를 받았을 때 보면 이걸 올 부고가 아닌데 올 때 받는 그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그 부고를 진짜 보낼 분들한테만 보내겠다(사례14, 남성).

□ 현실에 맞지 않는 의례와 의식들의 조정: 밤샘, 상복, 제사

앞서 살펴본 3일장이나 부고의 범위, 부의금 부담 등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검토가 요구되는 사례라면 개인적 차원에서 조정, 변동되고 있는 장례의례, 의식의 사례도 존재한다.

○ 밤샘, 안 해요

그 중 첫 번째는 밤샘 문화인데,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예전과 달리 언제 올지 모르는 조문객을 위해 밤을 새우며 빈소를 지키는 것은 실효성보다 유가족들의 소진, 피로감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굳이 하지 않거나 다소 변형되어도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 잤어요 솔직히. (중략) 저희 엄마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나 누구 상 당하면 밤에 이렇게 넘어오고 했을 때, 요즘에는 밤에 안 온다고. 정말 밤 새시는 분들이 있으면 몰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 없고 새벽에 올 사람 없으니까 알람 5시에 맞춰놓고 들어가서 자라고. 아무도 안 왔어요 (사례3, 여성)

시댁이 워낙 남녀 구분을 별로 안 하세요. 아들이 해야 될 거, 며느리 해야 될 거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일 있으면서 그냥 너는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자라고 해서 저는 집에 와서 자고 저희 신랑만 거기 있었거든요(사례4, 여성).

저는 밤을 잘 못 새거든요. 저는 진짜 막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고 힘들어도 잠은 잘 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그때 밤 새고, 저도 잠을 제대로 많이 못 잤으니까. 외할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피곤해하는 걸 좋아할까 돌아가시는 길에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그 시간대에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지키는 건 맞긴 해도 너무 무리해서까지(사례7, 여성).

○ 불편하고 칙칙한 검은 상복, 안 입어요

특히 상복과 관련해서는 더욱 뚜렷한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최근 검은 양복 대신 일상복이나 편안한 옷차림으로 문상을 오는 조문객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가족들 역시 고인의 유지나 유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검은 상복 대신 일상복을 입는 사례도 늘고 있었다.

옷차림이 확 변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방문하면 전부 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매셨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티셔츠도 입고 오고 (중략) 양복을 입어도 양복은 정장을 입고 오는데 아주 자기 편한 옷을 입고 왔어요. 넥타이도 보면 컬러. 제가 깜짝 놀랐어요(사례21, 남성).

(고인의 유언에 따라) 고모부가 빨간 넥타이를 매고 장례식에. 그리고 저보고도 절대 검정 입고 오지 말라고 해서 저도 그냥 편안하게 겨울이었던거예요, 그냥 총천연색 파카 입고 편안하게 갔는데. 죄다 편안하게 입고 왔어요, 정말. 그런데 거기가 되게 오래된 청동 저쪽 강북에 ○○ 병원이 있는데, 다들 칙칙한데, 이쪽은 옷을 막 아무거나 입고(사례24, 여성).

얼마 전에 최○○씨가 자기 어머니 보내 드릴 때 어머니가 미리 생전에 얘기하셨더라고요. 실크로 된 가운을 워낙 좋아하셔서 나는 그거 입혀 달라고 하셔서 그걸 입혔단 얘기를 듣고 진짜 좀 신선하다 라는 생각이, 우리나라도 바뀌는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주변의 어른들이 말리잖아요. 안 된다, 이것을 입혀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바뀌는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폭이 정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사례19, 여성).

○ 제사는 (고인이) 보고 싶을 때 지내는 거죠

장례의 후속절차로서 제사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제사 절차와 횟수의 간소화, 최소화 등을 통해 제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힘겨움을 적극적으로 줄여가는 한편, 더 나아가 정해진 기일이나 시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고인이 그립고 보고 싶을 때 찾고 애도하는 의례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였다.

형수가 그때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사 음식하고 차리고 그런 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또 갑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자기가 내가 힘들어지니까 제사 못 지내겠다고 이렇게. (중략) 아버지도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제사를 아예 안 지내고요. 명절 때나 명절 때는 산소에 가서 간단하게 지내고 있고(사례10, 남성).

저희는 제사를 안 지내요(중략) 추도식 때 가서 그냥 찬송가 펴고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고 기도하고 끝내는 게 제사예요, 따로 하는 게 없고. 그 이후에 설렁탕을 먹으러 간다든지 가족들끼리 그렇게 해서 제사를 누가 지내냐 마냐 그런 건 할 게 없고. 그냥 보고 싶을 때마다 그냥 거기에 가서 하는 거를 제사처럼 생각하는 거 같아요. 가서 저희 엄마가 조화를 해

놓으실 때도 있고 삼촌이 거기 조화를 색이 바래니까 바꾸실 때도 있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보고 싶을 때 가는 거 같아요(사례5, 여성).

제사를 모시는 주체 역시 장손이나 남성 등 가부장적 질서에 따르기 보다는 평소 고인과의 친밀성이나 실질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정해지기도 하였다.

저희는 큰 아들이 했었는데 저희 숙모가 편찮아지시면서 그 다음 큰 딸인 저희 엄마가 딸인데도 가져왔어요. 솔직히 그냥 막말로 숙모한테는 네 부모도 아닌데, 남의 부모인데 몸 상하면서까지 그걸 강요하나,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사례6, 여성).

2) 변화하는 가족과 장례

현행 장례문화는 가족 변화에 따라서도 도전받고 있다. 혈연을 중심으로 구성된 ‘남성이 있는’ 전형적인 가족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 장례문화는 1인 가구나 한부모, 비혼 동거, 사실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전형적인 가족’ 내에서도 가족구성 및 관계변화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 다양한 가족과 장례

□ 1인 가구/비혼 가구의 이야기: 대안도 없고 막막해요

1인 가구나 비혼 참여자들이 현행 장례문화에 대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적·제도적 ‘가족’에게만 장례의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이었다. 참여자들은 가족중심의 현행 장례 절차와 방식으로는 자신의 장례를 치루기 어렵지만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염려와 불안감을 지니고 있었다.

옵션이 너무 없는 거 같아요. (중략) 어떻게 내 유해는 되지? 여러 장례식 치르는 방법이나 내가 죽고 나서 어디에 있을지는 옵션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족이 없이, 법적인 가족 없이 죽으면 계속 관리비를 내야 되잖아요, 뿌리지 않는 이상.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부조금은 누가 관리해서 누가 내지? 이런 게 좀 (사례1, 여성).

저는 솔로이거든요(중략)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 나는 누가 나의 장례를 치

러줄 것이며 누가 와줄 것인가 생각을 하면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중략) 저는 그냥 어디 투병 생활을 한다거나 비참하게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저는 그냥 사실 이런 생각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혼자 사는 그런 걸 생각하니까 별로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므로 저는 그냥 비참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사례11, 남성).

저는 특히 독신이다 보니까 제 장례에 대해서 너무 막 치르는 거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장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중략) 혹시 잘못되면 무연고 처리 된다고. 요새는 고독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노인 분들이 많이 그러셨지만 요즘은 2, 30대도 많이.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기는 해요. 전 혼자인데 제가 잘못 됐을 때는 누가 해줄 것인가 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사례19, 여성).

요새는 가족 구조가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일인 가족 시대이고, 그러니까 이런 옛날의 장례가 맞지 않아요. 현재 일인 가구에는 맞지 않는 형식이예요(사례30, 여성).

□ 딸만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

소위 '전형적' 가족의 경우에도 현행 장례문화와의 부정합은 존재하였다. 이는 남성과 가부장 중심의 장례문화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족의 경우에도 '강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였는데, 딸만 있는 집에서 딸이 실제적인 상주는 하지만 형식적 상주를 하지 못하거나 평소 교류도 없던 친척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주를 하게 되는 등의 사례들을 청취할 수 있었다.

지난달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제일 좀 섭섭했던 게 그 상주? 당연히 제가 하죠, 저는 괜찮은데 엄마도 그런 거에 대한 게 없는데 (중략) 저희 큰 삼촌이 굳이 지방에 있는 아빠 쪽 형제한테 전화를 해서 그쪽 아들이 있으니까, (중략) 그래서 정말 8시인가 넘어서 지방에서 오신 거예요.(중략) 그러니까 거의 다 제 손님인데 이게 애매한 게 정말 모르는 저희 오빠들이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인사를 하시니까 저도 이상하고 이분도 빨쫂하고(사례3, 여성).

저희 엄마 형제가 딸밖에 없어요. 저희 엄마도 딸 셋을 낳았고, 이모도 딸 하나를 낳으셔서 그러니까 남자라고는 전혀 없어요. (중략) 그러다 보니까 친척 외삼촌이 오셔야지 상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가 그러면 상주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상주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상주 자리가 계속 비어있는 거예요. (중략) 근데 처음에 밥을

올리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상주가 와야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못 하는 거예요(사례13, 여성).

딸만 있는 집, 저 같은 경우도 딸 하나밖에 없으므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그거 관 들고 남자들이, 절친들이나 가족들이 운반할 때 남자가 없으면 난감해요. 그럴 때 막 기사들도 막 도와주고 하잖아요. (중략) 장례식 마지막 날 맨날 너 내일 새벽에 올 수 있어? 그거를 해마다 했으니까(사례27, 여성).

나) 가족관계 변화와 장례

□ 관계의 진정성이 반영되지 않는 장례

법적·제도적 가족을 전제하는 현행 장례문화는 가족관계의 변화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혼 가족이나 비혼 동거 가족의 경우, 실질적인 가족이지만 법적·제도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의 장례를 치루지 못하거나(무연고 장례로 치루거나) 가족과 단절된 고인이 연고를 찾지 못하거나 거부당해 최소한의 추모도 보장받지 못한 채 무연고 장례를 치루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 평생을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했던 사례, 가족과 함께 살지만 가족보다 더 친밀한 사람(애인, 지인 등)이 자신의 장례를 주도해줄 바라는 사례에서처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례의 자격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존재한다.

친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실종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다 커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그동안 아무도 못 찾았는데 돌아가시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중략)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고 한 달 있다가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를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를 제대로 치르고 싶지 않고, 그냥 가족만 잠깐 시신도 받고 해야 하는데 어디로 시신을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장례 절차를 밟아야 시신도 인도받고, 우리가 직접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일반 병원들은 제대로 2박 3일을 치르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아요. 그거를 다 해야 하는 거예요(사례24, 여성),

저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제가 지금 죽으면 제가 친구 식구들이랑 가깝지 않아요, 저 남동생 포함해서. 그런데 제 죽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친구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편한 부분인 거 같아요. 예를 들

어 제가 더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장례 절차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는데 애
인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결혼하지 않으면 절대 수용이 되지 않는, 법적인
거 포함해서. 그게 제일 좀 슬픈 거 같아요(사례1, 여성).

라. 바라는 장례, 장례의 의미: 본질의 회복과 다양성의 확대

1)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죽음과 장례, 장례에 대한 준비

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죽음, 준비되지 않은 장례

참여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죽음이나 장례에 대해서 평소에 그다지 생각을
해보거나 준비를 해 두지는 않았다고 한다. 자신이 바라는 본인의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대체로 남은 가족들이 자신을
추억해주면 좋겠고 간소했으면 좋겠다는 바램들도 많이 하였다. 자신이 장례가
사람도 많고 복잡복잡하고 조금 즐거운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참여자(사례8)도
있었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고 미리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참여자(사례18)도
있었다.

저는 죽음이 무서워요. 그냥 무서워서 주위 사람들한테 혹시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고, 그런 거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뭐 흐지부지 이렇
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60이 넘었으니까 번호표를
받은 건데 그 정도 되면 제가 만약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애들(자녀)이
알아서 할 거 같아요. (중략) 미리 얘기한 거라면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산소
호흡기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마라. 저는 시끄럽고 색다르고 성대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심플하게. 뭐든지 간단하게. 애들한테 얘기해봤어요.
(사례18, 여성)

자녀가 없는 사례23의 경우에도 부모의 죽음까지는 생각해봤는데 자신의
죽음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배우자와 자신은 나중에 조카에게 부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한다.

전혀 죽음에 대해서, 제 것까지 안 해봐서요. 부모님 것까지는 생각했었는
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부인 쪽도 다 성당에 같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거기 계실 거고, 저랑 부인도 얘기한 게 우리도 나중
에 여기 조카 한 명은 있을 거잖아요. 둘 중에 제일 마지막 사람까지는 해
달라, 그렇게도 생각을 했거든요. (사례23, 남성)

참여자 중에 장인이 생전에 본인의 바람이나 챙겨야 할 것 부고를 알려야 할 명단 등을 바인더를 정리해둔 사례(사례9)가 있었다. 사례12도 이와 같이 이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런 부분에서 나도 그럼 내가 부르고 싶은 사람들,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해놔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랑 연락을 끊었으면 지우면 되니까 바인더로 해서 그런 부분은 해놓으면 아이들한테는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 (사례12, 여성)

나) 비혼·싱글이 생각하는 자신의 죽음과 장례

비혼이나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참여자들 역시 자신의 장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50대의 비혼 남성인 사례11은 혼자인 것이 생각하면 더 슬퍼서 죽음과 장례는 생각을 피하게 된다고 한다.

아무튼 싱글이라서 오히려 준비하는 게 슬프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 하나라도 있으면 뭔가 그런 생각을 깊게 할 텐데, 싱글인 그 자체가 슬프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하고 싶지 않죠.(사례11, 남성)

40-50대 1인 가구인 참여자들 중 자신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준비로 상조보다는 종신보험을 들었다는 사례들이 몇몇 있었다(사례19, 사례20). 이들의 경우 장례비용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과 함께 누군가에게 자신의 장례를 부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는 종신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 종신보험. 전 혼자 있긴 하지만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여동생한테 얘기를 해서 혹시나 내가 잘못되면 그거 받아가지고 장례비용으로 쓰고 정리하라고 해놨어요. 왜냐하면 상조를 가입을 해서 워낙 돈 떼이는 걸 많이 봐가지고 그럴 바에는 종신보험으로 안전하게 가입을 하자 해서 해놨어요. 많지는 않고 나머지 주변 정리하는데 필요한 정도는 될 거 같아서...(수혜자가)지정이 되는 거라서 그게 조금을 넣어도 딱 정해진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전 그게 상조보다 안심이 되더라고요.(사례19, 여성)

2) 앞으로 변화의 기대, 희망하는 장례

우리는 딸만 있는데... 아들이 있어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이런 장례, 변해야 하지 않을까?

참여자들은 집안에 아들·남자가 있어야 온전한 의례와 절차 진행이 가능한 가부장적인 장례문화는 변화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족에 딸만 있다는 참여자들은 특히 변화를 생각해보게 된다고 한다.

사실 저는 저희 형제도 딸밖에 없고, 이종사촌도 딸밖에 없어서 우선은 저희 형제만 해도 딸밖에 없으니까 우리 세대가 되면 변하긴 하겠지만...우리 끼리 이야기하면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저희가 막 열을 내면서 그럼 엄마, 아빠가 죽었을 때는 사촌 동생이 ... 상주가 되는 거냐고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러면서 1년에 한 번도 보지 않는데 어떻게 ... 상주가 되느냐.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죽으면 그냥 우리가 그거하고 나는 상주할 거라고 그게 뭐가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 동의를 받았어요. 마지막 죽음...(사례 13, 여성)

저도 딸이 둘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여기에 오게 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중에 딸만 있고 저는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애네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야기하는 자연장...(사례12, 여성)

장례의 간소화·다양화 희망

많은 참여자들이 장례의 간소화를 희망하였다. 또한 다양한 장례에 대한 생각도 이야기하였다. 3일장이 아닌 1일장, 가족만으로 하는 소규모 장례, 다과만 내는 장례, 집에서 하는 장례 등이 이야기 되었다.

저는 절차가 간소화가 돼서 3일 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삼일장을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조문 시간도 아침 10시에 오시는 분도 있고 밤에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다 하고 치우고 뭐 하다가 보면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절차들을 다 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많이 울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내가 죽었을

때 아이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을 조용하게 맞이하고, 좋았던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해서 3일 장을 안 하고 하루 만에 끝냈으면 좋겠고, 부고 보낼 때 아예 그 시간을 5시부터 10시까지만 조문을 받는다고 해서 딱 그렇게 해서 조문을 받고, 아니면 저는 아예 그것도 없이 영안실에 제가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받는 거예요. 가족끼리만 한다면, 집에서 손님이 오셔서 인사하고 간단하게 다과를 드린다면, 생존에 있었던 이야기를 엄마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제 친구이면 네 엄마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저는 집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 (사례12, 여성)

...아마도 이제 조금 더 저희가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런 곳(실버타운)이 조금 더 많을 거고, ... 그런 곳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이제 그런 데서 장례까지도 치러주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저는 그냥 할 거고요. 누군가를 부르거나 그렇게도 하지 않을 거 같고, ... 만약에 남편이 먼저 가거나 누군가가 먼저 가면 남편이 먼저 가겠죠. ... 저 혼자 남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냥 가족만 부르면 좋겠고요. ... 그리고 그날 당일하고 저는 끝냈으면 좋겠어요. (사례13, 여성)

비혼인 사례19 역시 장례의 간소화를 희망하였다. 일본처럼 생전장례식에 대한 관심도 보였다.

독신주의이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일본의 뉴스가 되게 와 닿았어요. 미리 장례나 이런 것도 하고 요새는 뭐 그 화장을 해서 그걸 갖고 뭐 조그맣게 축소를 해서 보관을 하는 방식도 있고 처리 비용을 간소화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런 걸 보고 우리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사례19, 여성)

장례에서 문상객과 절을 하는 것과 같은 피곤한 의례도 간소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이야기되었다.

제가 사촌이나 이런 저희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절을 하다가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식이랑 조카는 죄인이라 무릎이 아플 정도로 절을 해야 한다고 사실은 3일 동안 절을 하면 진짜 무릎이 아파요. ... 이게 나중에는 제가 오른쪽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좀 간소화가 되면 좋겠어요. (사례9, 남성)

□ 장사 방식에 대한 다양한 희망

희망하는 장례에 있어서 장사방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다. 참여자들은 자연장, 수목장 등의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참여자들은 아울러 단지 장사방식 뿐이 아닌 추모의 문화도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아이들이 그때가 돼서는 찾아오거나 그런 부분이 섭진 않을 거로 생각해서 저는 수목장을 하고 싶어요. (중략) 수목장을 해놓고 아이들이 저희 이렇게 무덤 같은데 가면 무섭고 우울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런 데를 가면 공원이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와서 그냥 거기서 즐겁게 저를 보고 그냥 그 공원에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밝게 보고, 산책 나오듯이 와서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략) 그 문화가 그냥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막 의무감에 의해서 찾아가고 별초를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나면 가다가 어디 산도 놀러 가고 놀러 가듯이 잠깐 들러서 거기 공원에서 놀다가 가고 이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사례12, 여성)

화장해서 가족 봉안당에 안치되기를 바라지만 죽어서까지 굳이 시택 봉안당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사례도 있었다.

화장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 봉안당이 있는데 거기에 안치하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 가족 봉안당도 있고, 저희 신랑 가족 쪽에 봉안당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그 선택을 남편은 본인은 그쪽으로 가겠대요. (중략) 저는 저희 엄마 아빠하고 있겠다고 했거든요. (중략) 저희 시택 쪽에 자리 비워놨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사례13, 여성)

□ 제사 문화의 변화 기대

FGI 참여자들은 장례문화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 제사 문화도 간소화되고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자신들의 세대까지만 참고 다음 자녀세대에는 부담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저도 또 장손이고 그래서 제사도 많이 치르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항상 지론이 제 아들을 보고도 앞으로 제사 지내지 마라. ...엄마도 고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게 싫었어요. (사례14, 남성)

저희 남편이 삼대독자거든요. 근데 제가 딸만 낳았잖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는 아들을 낳으라고 되게 하시는데, 안 낳았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하시
는 말씀이 제사는 우리 대까지만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저희 아이들 때부
터는 제삿밥 못 얻어먹는다고 그때는 그냥 절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더라
고요. (중략)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제 아래 대부터는 정말 간소화가 될 거라
고 생각을 해요.(사례12, 여성)

마. 장례의 본질: 다시 장례를 이야기하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참여자들이 경험한 장례 절차와 내용 등을 통해 자연스
럽게 장례의 본질, 의미에 관한 심도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고인에 대한 추모와 남겨진 사람들에 대
한 위로가 장례의 본질이자 의미로 부각되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들의 어떤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마음이고, 좋은
데에 가시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느냐. 다만
그 잣대가 되는 건 다 경우에 따라 일 거 아니에요. 다 집안마다 상황도 틀
리고, 가족 구성원도 틀리고(사례14, 남성)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죽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
는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을 기쁘게 열어주는 것, 그 의미 하나. 그
리고 나머지는 인사를 못한, 돌아가시는 순간을 본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그 사람들 와서 인사 밝게 해 줄 수 있는(사례24, 여성).

죽음이라는 그런 영역 자체가 숨기고, 가리고 뭔가 안 좋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밝은 죽음으로 조금은 꺼내놓고 그런 인식의 변화를 좀 가지고 오면
그래서 나 장례 이렇게 이런 장례를 하고 싶어. 그래서 사전 장례도 내가
잘살다가 간다. 이러면서 본인이 축제, 파티처럼 죽는다는 게 꼭 나쁜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삶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거든
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의식 개선, 그런 것들이 많아 점차 넓어지면 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고민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것처럼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사례30, 여성).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자들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위로
라는 장례의 의미와 본질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간소화하는
한편, 정해진 의식에 연연하기 보다는 애도와 위로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여기 오기 전에 엄마랑도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장례식에 할 때 음식을 안 먹고 왔으면 좋겠다, 거기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지 않냐. 그냥 가서 고인에게 정말 친했던 사람들 고인이 떠나가는 걸 마음 아파하고 정말 진심으로 좋은 곳에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와서 먹는다면 차 한잔 정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지 굳이 와서 뭘 먹어야 된다(사례2, 여성),

운구할 때 6명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이 형제가 많고, 사회 생활을 잘해서 직장에서 오고 그래서 별 게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 집들도 많지만 6명, 상주가 뭘 하고 아들이 뭘 들고 이거 들고, 위폐 들고 하면 6명이 들기도 상황이 만만치 않은 집들도 있어요. (중략) 요즘 대부분 다 화장을 하잖아요. 거기서 운구차에 올리는 거는 찰나예요, 찰나. 설사 인원이 안 되더라도 막말로 옆에 운전 아저씨가 잠깐 해주든,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사례14, 남성).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모여서 그거를 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께서 돌아가시면 사진 찍 모아서 짹짹 돌리고, 밥도 뭐 맨날 육개장만 먹어. 밥도 까짓것 스테이크 먹든가. 왜 굳이 육개장만 먹어야 해요? 그것도 참 이상해요. 요즘 고깃국 누가 못 먹는다고. 그래서 밥도 조금 맛있는 거, 여러 가지 메뉴(사례24, 여성).

참여자들 중에는 활동가로서 기존 장례방식이 아닌 새로운 장례를 경험한 경우도 존재했는데, 플랜카드로 어머니의 부고를 알리거나, 고인의 사진전으로 치른 장례, 사전 장례식, 고인의 자서전 출간 등 다양한 사례가 공유되었다.

플랜카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쪽 내렸어요.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 넣고, 그리고 굿바이맘, 사랑해 이렇게 건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지나가다가 저 집 할머니 돌아가셨네. (중략) 또 한 분은 공주에 계시는 조합원인데 폐교를 빌려서 어머니 사진전을 했는데 사진을 쪽 걸고 그 밑에 설명을 달고, (중략) 우리 어머니가 언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고인에 대한 설명이 쪽 있고, 그 동선을 따라서 가면서 그런 글이 하나씩 있어요(중략) 사전 장례도 많이 하고요. 살아 있을 때 내가 멀쩡할 때 분들도 내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밥 한 끼 먹고, 다음에는 나 죽으면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사례29, 남성).

어머니 자서전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답례품으로, 저희 이 사장님도 다녀오셔서 제가 책을 받아서 읽었는데 그런 것도 참 좋은 거 같

아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야기해주셨던(사례30, 여성)

바.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의견

FGI 참여자들은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 가부장적 혈연 가족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최소한의 장례가 보장되어야

현재 장례 문화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가족이 가부장적 질서 하에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장례는 망자 스스로는 물리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며, 남은 자도 개인으로는 물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장례문화는 개인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장례를 사회나 국가가 아닌 가족·친족단위로 부담해왔고 가부장제 질서하에 정립된 의례와 절차를 통해 수행해왔다. 그리고 상업화된 장례 문화에서 무비판적으로 재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화했으며, 가족도 다양해졌다.

FGI 참여자들은 이러한 사회와 가족 변화에 맞게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또한 상업화된 장례 업체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최소한의 장례는 치를 수 있도록 보장이 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한다.

국가가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의무들을 국민한테 지우는데 정작 태어났을 때랑 죽을 때 그때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의무적인 걸 하고 있진 않아요. 그게 장례 문제고, 태어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죽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국가가 나서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많은 장례 업체가 생기고 그거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 비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사례16, 남성)

1인 가구가 워낙 많고 그래서 뭐 미혼모, 미혼부 해서 단독 가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사회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국민연금 가입을 하듯이 국민장례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서 내가 매달 돈을 얼마씩 내고 그러면 말 그대로 내가 독거사를 한다고 해도 정말 무연고 처리 돼서 버려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절차를 따라주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 놓으면 남아 있는 나의 가족들이 조금 더 부담이 덜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갑작스럽게 사고가 온다 해도 허망하지 않을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사례19, 여성)

의료보험 체계에 넣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고, 그러니까 누구나 죽잖아요. 누구나 아프니까 의료 보험을 만드는데, 누구나 죽는다는 것으로 듣고 그걸로 장례비용 전반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것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편적 복지로 가야지 않을까요. 누구나 죽으니까(사례29, 남성)

□ **비혼, 사실혼·동거 관계, 1인 가구, 다양한 관계의 개인과 가족이 장례를 준비하고 치를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

1인가구의 증가와 무연고 사망, 비혼·동거 등 혈연과 혼인제도 외의 다양한 관계와 가족이라는 사회변화에 맞추어 현행의 혈연 중심의 장례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사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후견제도의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무연고자의 95%가 연고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망이 끊어진 거고요. 또 하나는 빈곤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쉽지 않고, 그다음에 법제도 후견인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법제화되지 않으면 그런 단체들도 (중략) 사전에 약정을 맺고 공증하고 이런 작업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봐야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무조건 혈족 중심의 가족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적 관계망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거든요.(사례29, 남성)

□ **장례문화를 고민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FGI 참여자들은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례 업체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따르는 장례문화가 아닌 개인이 죽음과 장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기획할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한다. 고령사회에서 웰다잉의 뒷부분은 장례와도 연결이 되므로 상담 등의 사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부모되는 수업처럼 출산 수업도 있고 직장인 되기 수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수업은 없어요. (사례19, 여성)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상조 회사에서 가야지만 교육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자연스럽게 알아서 모든 사람이 이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도 자연스럽게.(사례11, 남성)

기억 노트라고 해서 본인이 사전에 자기의 그런 것들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일본은 그런 게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저희가 약간 저희 그런 교육도 하거든요. 사전에 엄청 온전한 정신이실 때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조차도 추억이고 또 굉장히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냥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가 보낸 사람도 남은 사람도 공허한 이란 죽음보다는 그런 것들을 잘. (사례30, 여성)

일반적인 장례는 많이 접하는 그런 상조 회사를 통한 그런 장례 절차이잖아요. 병원, 병원에서 다 거의 치러진 그런 장례식에 많이들 참석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딱 그 시간 안에 딱 3일이라는 그 시간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웰다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자꾸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 맥락을 그래서 장례도 이런 식으로 너무 상업적으로 당연히 형식을 갖추어야 하지만 거기에 너무 의미가 완전히 퇴색됐다, 지금의 장례 문화는.(중략)

(중략) 웰다잉은 앞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뒷단에서 그러니까 이게 같이 묶여서 돌아가야 그래야 이게 문화가 더 많이 형성될 거 같아요. 저희는 웰다잉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교육을 받은 상담사들이 필요하셔서 우리 센터에서 그런 강좌를 열거든요. 그런 상담사들을 배출해내고. 근데 그거 자체도 이제 시작 단계인데, 그 아래 커리큘럼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저는 그런 게 맞아 돌아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사례28, 남성)

□ 산업화된 장례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과제

FGI 참여자들은 지금의 장례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화된 장례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장례식장이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 기관 쪽에서는 이게 이익이 너무 큰 거 다 보니까 너무 돈에 대한 게 커서 돈 돈 돈 이걸로 끝난단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가족이 없는 그런 경우라던가 아니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떡 할 거란 얘기죠. 그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사례11, 남성)

병원에서 돈 벌 방법이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가장 큰 게 장례식이고, 나머지는 주차비나 이제 부대시설 운영하는 그거밖에 없거든요.(사례22, 남성)

지금은 개인의 선호의 문제보다는 카르텔의 문제이다 보니까 개인이 하기에 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부에서 나서주지 않으면.(사례27, 여성)

□ 고비용 장례 문화의 개선

산업화된 장례의 문제 중 하나인 고비용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가격 정보의 공개 등도 강화되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런데 권고 보다는 의무화 시키는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커피숍도 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바깥에 무조건 주요 메뉴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의무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례도 그런 것처럼 조금 의무화 하면.(사례27, 여성)

□ 다양한 장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등 공간 제공

다양한 장례와 추모 중심의 장례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장례를 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부터 대안적 장례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간 문제를 해결해야 일본처럼 다양한 장례들이 가능해집니다. 1일장을 할 수도 있고요. 하루 추모식 중심의 장례를 할 수 있고.

(중략) 장례식장도 저렇게 클 필요가 없다. 우리는 동네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들, 주민 자치센터라든지, 종교 시설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조직 이런 양반들을 활용해서 만약에 정 이게 시신을 거기 두는 게 그렇다면 시신은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하고, 어차피 병원에 가서 다 절해도 그 뒤에 안 계시거든요, 지하 어딘가에 있으시지. 그 관념만 좀 바꾸면 정말 지인 중심의 추모 중심의 장례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사례29, 남성)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처럼 조금 국가나 지방단체장들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이쪽으로 먼저 선별적으로. 저는 아까 놀랐거든요, 삼일장 아니면 안 받아 준다고 해서 병원들이. 근데 그런 게 조금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곳부터 1일장부터 받아준다거나.(사례27, 여성)

□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 변화와 정부의 홍보 등

FGI 참여자들은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의 개선 및 가족의 변화에 맞게 장례 문화를 바꾸어 나가려면 인식의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SNS라든가 매체라든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략) 그 시간, 개인이 묻히고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재산, 거의 다 기회비용이잖아요. 3일 이런 시간이. (중략) 그다음 오 히려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 그런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이런 거를 많이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돈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투자지. 그런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면.(사례26, 남성)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작은 결혼해서 자기네만의 결혼을 많이 하는, 약간 굉장히 많이 널리 전파가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장례도 자꾸 저희가 외 치면 이런 거에 여기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결국은 이게 기존에 이만큼이었던 걸 이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 같아요. (중략) 그런 것들의 흐름을 의식을 점차 누군가는 해줘야 하고 깨져야 하므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어쨌든 계시면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사례 30, 여성)

국가적인 차원에서 빨리 장례 문화를 인식을, 국민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중략) 개인이 이제 하기에는 이제 없잖아요. 자녀들도 없고, 1인 가족, 한 부모 가족. 그런 가족들의 형태들이 변하기 때문에 이젠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런 것을 조금 힘써야 되지 않을까.(사례25, 여성)

3. 소결

이 장에서는 현행 장례문화의 모습과 그에 대한 평가, 대안 등에 관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다음은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 및 함의이다.

첫째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경험한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장례 문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 중심의 의례와 절차에서 여성들은 주변화 되거나 소외되고, 부계 중심의 장례 문화에서 친가와 외가의 차별이 존재하고, 특히 불합리한 성별 역할 구분이 의례와 절차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장례문화가 상조업체·장례지도사의 상업화되고 획일화된 상품 서비스를 통하여 자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선택하고 따르게 되는 현실도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우리 사회의 장례는 '상조회사·장례지도사가 주도'하는 '장례식장에서 3일장'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장례의 '루틴'은 다시 획일적인 장례문화, 의례와 절차가 중심이 되는 장례문화, 유가족의 선택과 참여에 따라 기획되기 보다는 정해진 장례 의식과 절차를 '구매'하는 상업화된 장례 문화로 연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현행 장례식은 추모와 애도가 사라지고, 고인과 유가족이 소외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은 의식과 절차에 압도된 채 '해치우듯' 끝나버린 장례에 대한 불편함과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셋째, 현행 장례문화의 또 다른 특성은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 가족'과 '가부장적 질서'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 특성이 매우 경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행 장례문화는 1인가구나 한부모, 비혼동거, 사실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현실은 물론 소위 '전형적인 가족'내의 변화도 담아 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형적인 가족'에 포섭되지 못하는 다양한 가족의 경우, 법적·제도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의 장례를 치를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하거나(사실혼 가족), 장례를 치러 줄 법적·제도적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대안도 없이 막막한 상황(1인가구, 비혼가구)에 처해 있기도 하다.

소위 '전형적인 가족'에서도 현행 장례문화와는 다양한 긴장과 갈등 상황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직적인 장례문화에 변화하는 가족 관계나 속성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예: 원치 않는 가족의 장례를 치러야 하거나, 가족 중심의 장례를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가족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현행 장례문화가 전제하는 가부장적 질서와 의식이 '강요'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예: 딸만 있는 가족에서 딸이 실제 장례의 전 과정을 주관하면서도 형식적 상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현행 장례문화가 지닌 다양한 한계를 확인하면서 변화하는 의식과 가족의 현실을 반영한 장례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위로'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간소화하거나 정해진 의례·의식에 갇히기 보다는 실질적인 애도를 표현하는 방안(예: 1일장, 사전장례식, 사진전, 다과회 등)들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그러나 장례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적 차원을 넘어선 개입과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참여자들은 현행 장례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장례문화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죽음이나 장례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합리성이나 손익을 따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터부, '잘 치른 장례'에 대한 오랜 통념과 더불어 개인과 가족이 자신들의 욕구를 구현할 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의식과 가족의 현실을 반영한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적 수준의 노력과 함께 장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개인과 가족의 현실을 반영한 관련 법제도 개선 등 보다 거시적 차원의 방안 또한 마련될 필요가 제기된다.

IV

한국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1. 조사 개요	113
2. 한국 장례문화의 실태	116
3. 대안적인 장례문화 및 정책	142
4. 소결	158

IV

한국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1. 조사 개요

본 장에서는 20~50대의 성인 약 1,300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장례문화의 실태와 대안적인 장례문화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최근 5년간(2014년 8월~2019년 7월)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였으며, 장례경험에는 문상경험까지 포함하여 장례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20~30대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성별, 연령대, 거주지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51.2%, 여성이 48.8%를 차지했고, 연령대는 50대가 27.4%로 가장 많았고, 40대(26.5%), 20대(23.5%), 30대(22.6%)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수도권이 54.6%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권 15.0%, 전라권 10.5%, 충청권이 10.4%, 경북권이 9.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 및 가구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결혼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55.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미혼의 경우 41.6%, 이혼/별거/사별의 경우는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구성은 2세대가 7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인가구(12.0%), 3세대(4.3%), 1세대(8.6%)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의 경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1.2%,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48.8%였으며, 자녀의 성별을 살펴보면 딸, 아들이 모두 있는 경우가 38.0%, 아들만 있는 경우가 34.2%, 딸만 있는 경우가 27.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업, 최종 학력, 가구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직업의 경우 사무/기능직이 4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생/무직/기타(15.1%), 관리/전문직(15.0%), 전업주부(12.0%)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 대학교 재학/졸업이 73.8%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이 13.4%, 대학원 재학/졸업이 12.4%를 차지했다. 월 평균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7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17.1%,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16.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사례수	%
전 체		1,312	100.0
성별	남성	672	51.2
	여성	640	48.8
연령대	20대	308	23.5
	30대	297	22.6
	40대	348	26.5
	50대	359	27.4
거주지	수도권	716	54.6
	충청권	136	10.4
	경북권	124	9.5
	경남권	197	15.0
	전라권	138	10.5
결혼상태	미혼	545	41.6
	배우자(남편/아내) 있음	726	55.4
	이혼/별거/사별	40	3.1
세대 구성	1인가구	158	12.0
	1세대	113	8.6
	2세대	985	75.1
	3세대	57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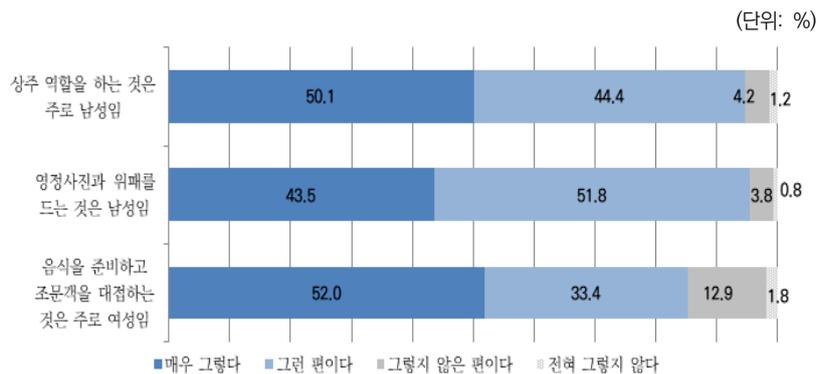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
자녀 유무	있다	671	51.2
	없다	641	48.8
자녀 성별	딸만 있음	187	27.8
	아들만 있음	230	34.2
	딸, 아들 모두 있음	255	38.0
직업	관리/전문직	197	15.0
	사무/기능직	603	45.9
	서비스/판매직	113	8.6
	농/임/어업	5	0.4
	장치조작/단순노무직	39	2.9
	전업주부	157	12.0
	학생/무직/기타	198	15.1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	0.5
	고등학교 졸업	175	13.4
	대학교 재학/졸업	968	73.8
	대학원 재학/졸업	162	12.4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99	7.6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72	13.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24	17.1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10	16.0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85	14.1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132	10.0
	700만원 이상	290	22.1

2. 한국 장례문화의 실태

가. 성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본 절에서는 한국 장례문화의 성 불평등성을 중심으로 현재의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해 개인적인 태도를 물어보았다. 우선, 장례에서 경험한 성 역할과 장례 전반의 의사결정 권한 및 제사와 관련한 내용을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장례문화에서 경험한 성 불평등과 관련하여 ‘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하는 것은 주로 남성이다’라는 물음에 94.5%('매우 그렇다' 50.1%+'그런 편이다' 44.4%)가 그런 편이라고 응답해 상주가 남성이라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장례에서 영정사진과 위패를 드는 것’과 관련해서도 남성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물음의 95.3%('그런 편이다' 51.8%+'매우 그렇다' 43.5%)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대접하는 것이 주로 여성이다’라는 물음에는 85.4%('매우 그렇다' 52.0%+'그런 편이다' 33.4%)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즉, 한국 장례문화에서 의례의 주된 역할은 대부분 남성들이 맡고 있으며, 여성들은 음식을 준비하거나 대접하는 비교적 주변화 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IV-1] 성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①

특히,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대접하는 것이 주로 여성이다’라는 문항에서는 성별, 직업,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성

의 44.3%가 해당 진술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해,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장례식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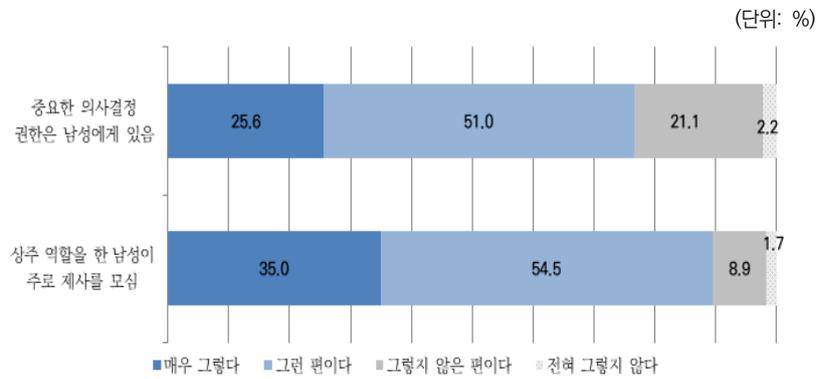
〈표 IV-2〉 성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대접하는 것은 주로 여성이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F/T값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체	1,312	14.7	1.8	12.9	85.3	52.0	33.4		
성별	남성	672	17.6	2.7	14.9	82.4	59.5	22.9	-7.659***
	여성	640	11.5	0.8	10.7	88.5	44.1	44.3	
직업	관리/전문직	197	13.9	1.7	12.3	86.1	59.4	26.6	5.068***
	사무/기능직	603	14.3	1.4	12.9	85.7	51.6	34.1	
	서비스/판매직	113	12.6	0.0	12.6	87.4	56.9	30.5	
	농/임/어업	5	42.3	30.1	12.2	57.7	43.2	14.5	
	장치조작/단순노무직	39	6.6	3.3	3.3	93.4	63.9	29.5	
	전업주부	157	11.9	0.5	11.4	88.1	37.7	50.4	
	학생/무직/기타	198	20.8	4.2	16.5	79.2	52.0	27.2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99	21.1	3.8	17.3	78.9	55.0	23.9	2.79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72	10.0	1.2	8.9	90.0	52.5	37.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24	17.7	1.1	16.5	82.3	47.6	34.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10	17.2	1.9	15.3	82.8	52.0	30.8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85	10.8	1.2	9.7	89.2	55.4	33.7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132	9.9	0.9	9.0	90.1	49.1	41.0	
	700만원 이상	290	15.7	2.6	13.0	84.3	53.1	31.3	

주: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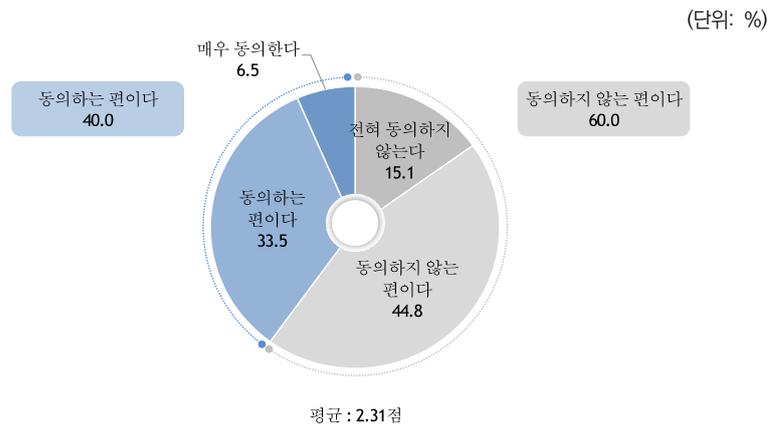
다음으로, 장례에서의 중요 의사결정과 이후 역할에 대한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은 남성에게 있다’는 문항은 ‘그런 편이다’ 51.0%, ‘매우 그렇다’ 25.6%로 총 76.6%가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한 남성이 주로 제사를 모신다’는 문항에는 89.5%(‘그런 편이다’ 54.5%+‘매우 그렇다’ 35.0%)가 그런 편이라고 응답했다. 즉, 장례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상주가 제주가 되는 것 역시 대부분은 남성이 담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IV-2] 성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②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장례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압도적으로 남성들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 장례에서의 성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겠다.

먼저, '장례에서 상주는 남성이 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는 44.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15.1%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률이 과반수를 넘어선 60.0%임을 알 수 있었다. '장례에서 상주 역할은 주로 남성이 한다'는 앞선 질문과 비교해보면, 남성들이 상주를 한다는 인식은 94.5%로 압도적으로 높지만, '상주를 남성이 해야 한다'는 태도 대해서는 40.0%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IV-3]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①장례에서 상주는 남성이 해야 한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대, 결혼상태, 자녀 유무에 따라 뚜렷한 차이(p<.001)를 보였다. 우선 해당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여성이 72.5%로 남성(48.1%)보다 높았다. 또,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성의 상주 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0대와 50대의 경우, 각 72.0%와 49.5%의 비율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결혼상태가 미혼인 응답자는 남성의 상주 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70.8%로 유배우자(51.8%)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자녀가 없는 경우도 69.3%로 유자녀인 경우(51.1%)와 분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직업별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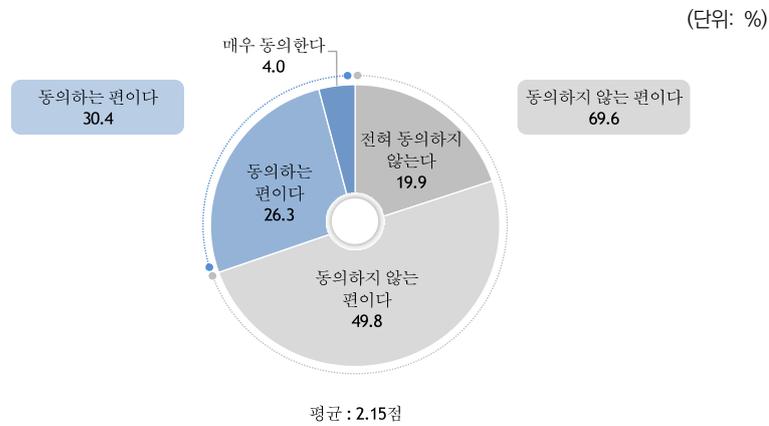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히 학생/무직/기타(69.3%)와 전업주부(60.3%)에서 남성의 상주 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즉 전반적으로 여성과 미혼의 젊은 세대, 자녀가 없는 경우, 학생/무직/기타에서 '남성이 상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①장례에서 상주는 남성이 해야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한다		F/T값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1,312	60.0	15.1	44.8	40.0	33.5	6.5		
성별	남성	672	48.1	9.5	38.6	51.9	42.4	9.5	9.792***
	여성	640	72.5	21.1	51.4	27.5	24.1	3.4	
연령대	20대	308	72.0	41.3	30.8	28.0	22.2	5.8	28.129***
	30대	297	67.3	49.4	18.0	32.7	28.3	4.4	
	40대	348	53.9	46.8	7.2	46.1	38.6	7.4	
	50대	359	49.5	42.3	7.1	50.5	42.5	8.1	
결혼 상태	미혼	545	70.8	24.1	46.8	29.2	24.6	4.6	36.657***
	배우자 있음	726	51.8	8.5	43.3	48.2	40.1	8.0	
자녀 유무	이혼/별거/사별	40	59.9	13.7	46.2	40.1	34.5	5.6	7.966***
	있다	671	51.1	8.9	42.2	48.9	40.6	8.3	
직업	없다	641	69.3	21.7	47.6	30.7	26.0	4.7	3.218**
	관리/전문직	197	58.5	13.1	45.4	35.2	6.3	41.5	
	사무/기능직	603	59.5	14.4	45.1	33.1	7.4	40.5	
	서비스/판매직	113	54.6	11.2	43.5	40.7	4.7	45.4	
	농/임/어업	5	40.7	14.8	25.9	49.9	9.4	59.3	
	정치조작/단순노무직	39	44.5	16.7	27.7	41.9	13.7	55.5	
	전업주부	157	60.3	10.4	49.9	34.2	5.5	39.7	
학생/무직/기타	198	69.3	25.2	44.1	26.2	4.5	30.7		

주: *p<.05, **p<.01, ***p<.001

다음으로, '장례에서 여성은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대접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가 49.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19.9%로, 여성의 음식 준비·조문객 대접 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률이 69.6%로 더 높았다. 이는 앞서,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대접하는 것은 주로 여성이다'라는 인식에서 85.3%가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림 IV-4]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②장례에서 여성은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대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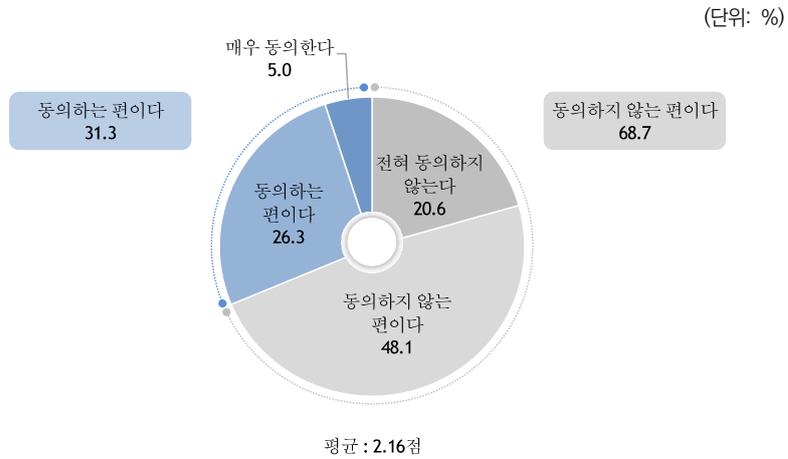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성별, 연령대, 결혼상태, 자녀 유무에 따라 뚜렷한 차이(p<.001)를 보였다. '장례에서 여성은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대접해야 한다'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여성이 79.2%로 남성(60.5%)보다 높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여성의 음식 준비·조문객 대접 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20~30대(약 80%)와 40~50대(약 60%) 사이에 비교적 큰 태도의 차이를 보였다. 결혼상태가 미혼인 경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77.6%로 유배우자(64.5%)의 경우와 비교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자녀가 없는 경우도 76.1%가 동의하지 않는 편으로 나타나, 유자녀인 경우(63.4%)와 분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전반적으로 여성과 젊은 세대, 미혼인 경우와 무자녀인 경우에 '장례에서 여성은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②장례에서 여성은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대접해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한다			F/T값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1,312	69.6	19.9	49.8	30.4	26.3	4.0		
성별	남성	672	60.5	12.1	48.3	39.5	33.5	6.0	9.276***
	여성	640	79.2	28.0	51.3	20.8	18.8	2.0	
연령대	20대	308	78.8	36.4	42.4	21.2	16.3	4.9	28.129***
	30대	297	76.5	25.3	51.2	23.5	20.7	2.8	
	40대	348	64.6	11.6	53.0	35.4	30.6	4.8	
	50대	359	60.9	9.1	51.8	39.1	35.6	3.5	
결혼상태	미혼	545	77.6	30.6	47.0	22.4	19.3	3.1	31.330***
	배우자 있음	726	64.5	12.0	52.5	35.5	30.8	4.8	
	이혼/별거/사별	40	54.6	15.9	38.6	45.4	42.3	3.2	
자녀유무	있다	671	63.4	12.0	51.4	36.6	31.7	4.9	7.280***
	없다	641	76.1	28.1	48.0	23.9	20.7	3.1	

주: *P<.05, **p<.01, ***p<.001

한편, '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한 남성이 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가 48.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20.6%로, 상주인 남성의 제주 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률이 68.7%로 더 높았다.



[그림 IV-5]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③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한 남성이 제사를 모셔야 한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성별, 연령대, 결혼상태, 자녀 유무에 따라 뚜렷한 차이 ($p<.001$)를 보였다. ‘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한 남성이 제사를 모셔야 한다’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여성이 78.5%로 남성(59.4%)보다 높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주인 남성의 제주 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20~30대(약 70%)와 40~50대(약 60%) 사이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결혼상태가 미혼인 경우, 상주인 남성의 제주 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73.4%로 유배우자(65.0%)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자녀가 없는 경우도 73.3%로 유자녀인 경우(64.3%)와 분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전반적으로 여성과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상태가 미혼, 무자녀인 경우에 ‘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한 남성이 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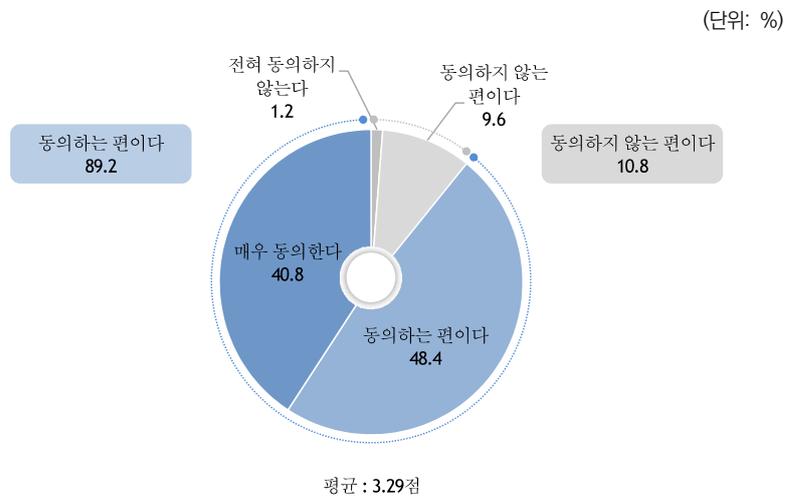
〈표 IV-5〉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③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한 남성이 제사를 모셔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한다			F/T값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1,312	68.7	20.6	48.1	31.3	26.3	5.0		
성별	남성	672	59.4	13.9	45.5	40.6	33.9	6.7	8.430***
	여성	640	78.5	27.6	50.9	21.5	18.4	3.1	
연령대	20대	308	72.5	30.0	42.6	27.5	24.8	2.7	9.776***
	30대	297	75.6	22.2	53.3	24.4	20.4	4.1	
	40대	348	65.0	17.4	47.7	35.0	28.5	6.5	
	50대	359	63.3	14.3	49.0	36.7	30.5	6.2	
결혼상태	미혼	545	73.4	26.0	47.3	26.6	23.7	3.0	11.762***
	배우자 있음	726	65.0	16.4	48.6	35.0	28.5	6.6	
	이혼/별거/사별	40	72.9	22.4	50.5	27.1	24.0	3.1	
자녀유무	있다	671	64.3	16.8	47.5	35.7	28.6	7.1	4.791***
	없다	641	73.3	24.5	48.8	26.7	24.0	2.7	

주: * $P<.05$, ** $p<.01$, *** $p<.001$

다음으로는, '제사에 있어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하고 차별하는 문화는 변화해야 한다'는 진술을 살펴보면 '동의하는 편이다'가 48.4%, '매우 동의한다'도 40.8%로, 성차별적 제사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응답률이 90%에 가까워 상당히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6]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④제사에 있어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하고 차별하는 문화는 변화해야 한다

‘제사에 있어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하고 차별하는 문화는 변화해야 한다’는 문항의 응답자의 특성은 성별, 결혼상태, 자녀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p<.001)를 보여, 성차별적 제사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은 여성이 92.9%로 남성(85.6%)보다 높았다. 결혼상태와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미혼은 성차별적 제사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90.1%로 유배우자(88.1%)보다 높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도 90.6%로 유자녀인 경우(87.8%)보다 높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20대가 성차별적 제사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91.0%로 나머지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즉 전반적으로 여성과 젊은 세대, 미혼인 경우와 자녀가 없는 경우일수록 성차별적 제사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도가 높았다.

〈표 IV-6〉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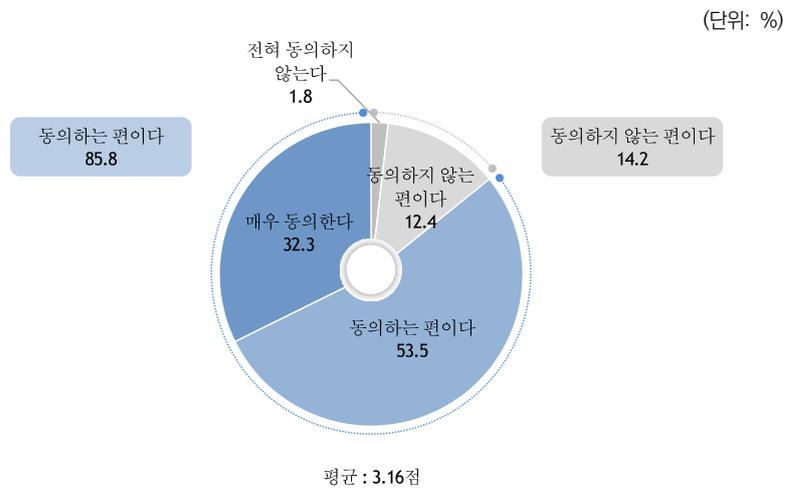
④제사에 있어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하고 차별하는 문화는 변화해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F/T값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1,312	10.8	1.2	9.6	89.2	48.4	40.8		
성별	남성	672	14.4	1.1	13.3	85.6	53.2	32.4	-6.547***
	여성	640	7.1	1.3	5.7	92.9	43.3	49.6	
연령대	20대	308	9.0	2.3	6.7	91.0	41.2	49.9	3.333*
	30대	297	11.3	0.7	10.6	88.7	47.1	41.6	
	40대	348	11.4	0.6	10.7	88.6	51.6	37.0	
	50대	359	11.6	1.3	10.2	88.4	52.5	36.0	
결혼상태	미혼	545	9.9	1.5	8.4	90.1	43.7	46.4	4.958**
	배우자 있음	726	11.9	1.1	10.7	88.1	51.8	36.4	
	이혼/별거/사별	40	5.1	0.0	5.1	94.9	51.1	43.8	
자녀유무	있다	671	12.2	1.2	11.0	87.8	51.1	36.7	-2.967**
	없다	641	9.4	1.3	8.1	90.6	45.5	45.1	

주: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기존의 장례방식은 1인가구, 비혼 증가 등 최근의 가족 변화와 맞지 않는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다’가 53.5%, ‘매우 동의한다’가 32.3%로,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인 14.2%에 비해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그림 IV-7]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⑤기존의 장례방식은 1인가구, 비혼 증가 등 최근의 가족 변화와 맞지 않는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성별에 따라서만 뚜렷한 차이(p<.001)를 보였는데, '기존의 장례방식이 최근의 가족 변화와 맞지 않다'는 진술에 여성은 88.9%로 동의한다고 응답해, 남성(82.8%)보다 더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7〉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⑤기존의 장례방식은 1인가구, 비혼 증가 등 최근의 가족 변화와 맞지 않는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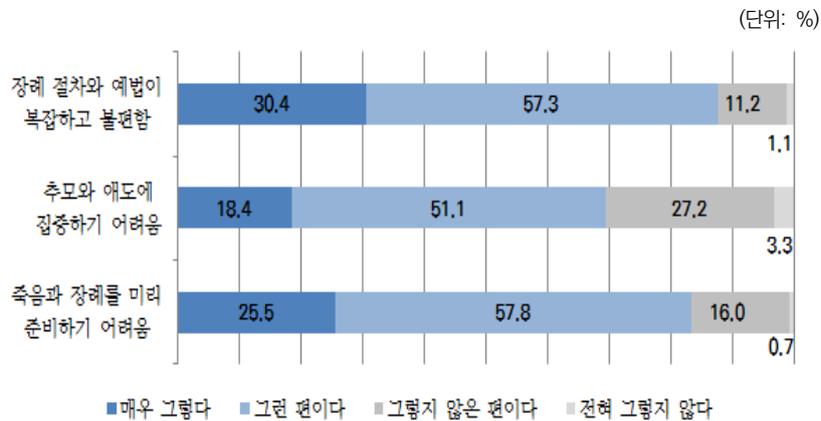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F/T값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1,312	14.2	1.8	12.4	85.8	53.5	32.3		
성별	남성	672	17.2	1.6	15.6	82.8	54.7	28.1	-3.714***
	여성	640	11.1	2.0	9.1	88.9	52.3	36.6	

주: *P<.05, **p<.01, ***p<.001

종합해서 한국 장례문화의 성 불평등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면, 여전히 '남성'이 중심이 되는 장례식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주의 역할, 영정사진과 위패 들기, 의사결정 권한과, 상주 이후 제주의 역할까지 남성이 맡고 있다는 인식은 상당히 높았는데 특히, 상주역할과 영정사진과 위패를 드는 역할에 대해서는 약 95%가량이 남성이라고 말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장례에 대한 기존 성 역할과 관련해 태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 문항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해,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 불평등성에 관한 태도를 묻는 모든 질문은 성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장례방식이 현재의 가족 변화와 맞지 않다는 인식도 상당히 높아 현재의 장례문화에 대한 변화 필요성이 확실히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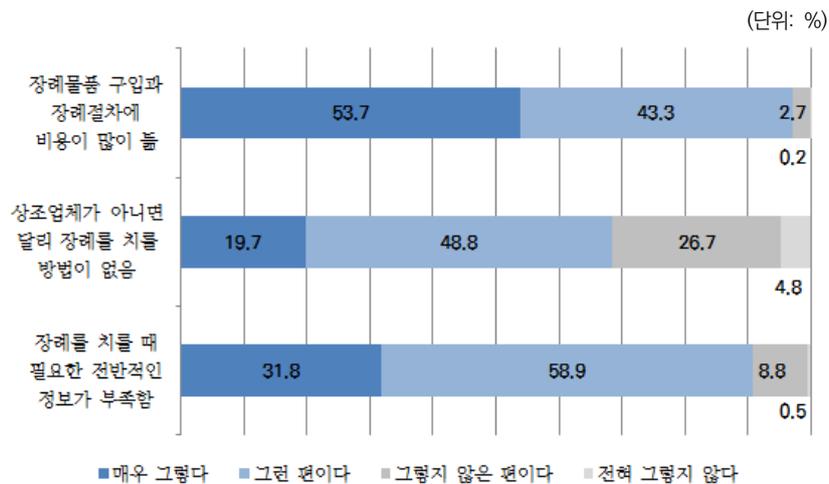
나. 형식 및 절차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본 절에서는 한국 장례문화의 성 불평등성 외에 의례(ceremony)로서의 형식 및 절차를 중심으로 현재의 장례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장례의 형식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장례의 절차와 예법이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응답이 87.7%(‘그런 편이다’ 57.3%+‘매우 그렇다’ 30.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례의 본질과 관련해서도 현재 한국의 장례식에서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9.5%(‘그런 편이다’ 51.1%+‘매우 그렇다’ 1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례문화를 넘어 한국 사회의 죽음에 대한 문화와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83.3%(‘그런 편이다’ 57.8%+‘매우 그렇다’ 25.5%)로 매우 높았다. 즉 한국 장례의 형식 및 절차 전반에 대해서는 허례허식에 치우쳐 의례의 본질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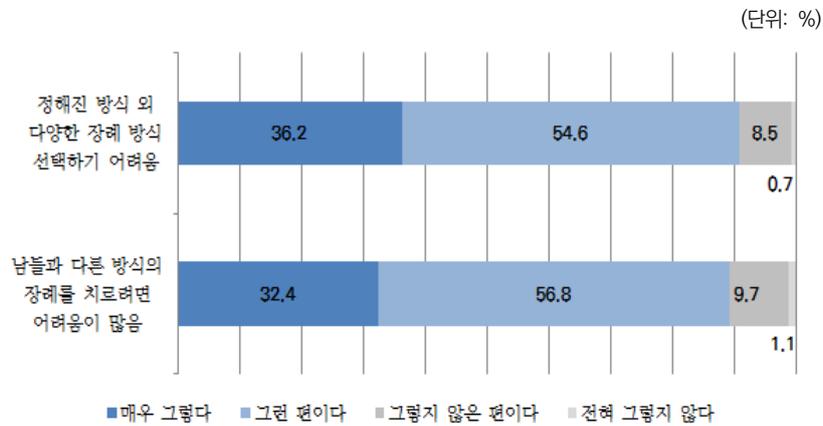
[그림 IV-8] 형식 및 절차에 대한 인식①

다음으로 시장에서 구입하는 장례서비스와 관련하여 ‘관, 수의 등 장례용품 구입과 장례절차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진술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53.7%로 과반을 차지했고, ‘그런 편이다’도 43.3%로 거의 절반에 가까워 거의 모든 응답자(97.0%)가 장례비용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도 ‘상조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달리 장례를 치를 방법이 없다’는 응답이 68.5%(‘그런 편이다’ 48.8%+‘매우 그렇다’ 19.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장례를 치를 때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90.7%(‘그런 편이다’ 58.9%+‘매우 그렇다’ 31.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즉 한국의 장례서비스에 대해서는 고비용의 상업화, 민간시장의 독점,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IV-9] 형식 및 절차에 대한 인식②

마지막으로 대안적인 장례 방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매우 높아 현재 장례가 매우 획일화된 방식으로 치러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해진 방식 외에 다양한 장례 방식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90.8%('그런 편이다' 54.6%+ '매우 그렇다' 36.2%),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려면 어려움이 많다’는 응답이 89.2%('그런 편이다' 56.8%+ '매우 그렇다' 32.4%)로 나타났다.



[그림 IV-10] 형식 및 절차에 대한 인식③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장례의 형식 및 절차에 대해서는 본질보다는 허례허식에 치우친 문제, 고비용, 획일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 응답자 개인의 차원에서 장례식의 형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먼저 ‘비용이 들더라도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가 49.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32.2%로, 고비용의 형식에 치우친 장례식에 반대하는 응답률이 81.6%로 훨씬 높았다.



[그림 IV-11]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①비용이 들더라도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p < .001$)를 보여, 고비용의 형식에 치우친 장례식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여성은 86.0%로 남성(77.5%)보다 높았다. 결혼상태와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미혼은 고비용의 형식에 치우친 장례식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83.4%로 유배우자(80.7%)보다 높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도 83.4%로 유자녀인 경우(79.9%)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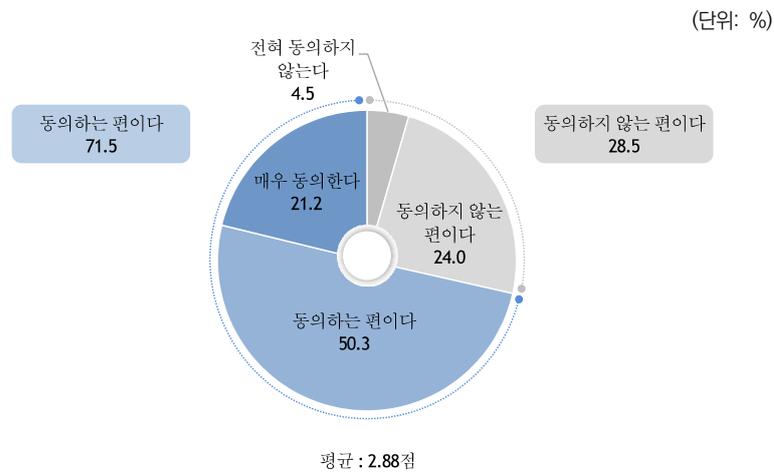
〈표 IV-8〉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①비용이 들더라도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한다			F/T값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1,312	81.6	32.2	49.4	18.4	15.3	3.1		
성별	남성	672	77.5	28.3	49.1	22.5	18.8	3.7	4.266***
	여성	640	86.0	36.3	49.7	14.0	11.6	2.3	
결혼 상태	미혼	545	83.4	36.9	46.5	16.6	13.6	3.0	4.108*
	배우자 있음	726	80.7	29.0	51.7	19.3	16.4	2.9	
	이혼/별거/사별	40	74.5	25.8	48.8	25.5	17.6	7.8	
자녀 유무	있음	671	79.9	29.0	50.9	20.1	16.9	3.2	2.456*
	없음	641	83.4	35.6	47.9	16.6	13.6	2.9	

주: * $P < .05$, ** $p < .01$, *** $p < .001$

‘상복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간소하고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이 좋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다’가 50.3%, ‘매우 동의한다’가 21.2%로, 간편하고 실용적인 상복 차림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률이 71.5%로 더 높았다.



[그림 IV-12]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②상복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간소하고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연령대에 따라 뚜렷한 차이(p<.001)를 보여, 연령대가 높을수록 간편하고 실용적인 상복 차림에 동의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40대는 78.1%, 50대는 75.1%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성별, 결혼상태,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은 간편하고 실용적인 상복 차림에 동의하는 비율이 73.8%로 남성(69.3%)보다 높았다. 유배우자는 간편하고 실용적인 상복 차림에 동의하는 비율이 73.7%로 미혼(67.7%)보다 높았고, 유자녀인 경우도 74.7%로 자녀가 없는 경우(68.1%)보다 높았다.

〈표 IV-9〉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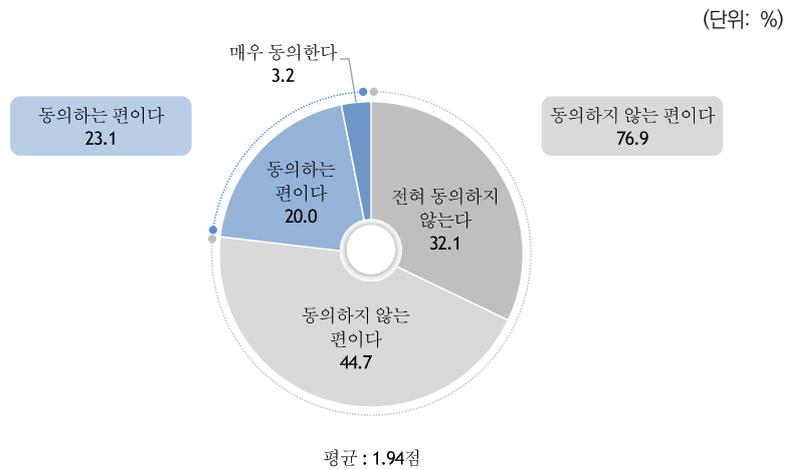
②상복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간소하고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한다			F/T값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1,312	28.5	4.5	24.0	71.5	50.3	21.2		
성별	남성	672	30.7	5.8	24.9	69.3	51.5	17.8	-3.288**
	여성	640	26.2	3.1	23.0	73.8	49.0	24.8	
연령	20대	308	35.9	9.2	26.6	64.1	47.0	17.1	10.283***
	30대	297	33.0	4.5	28.5	67.0	50.3	16.7	
	40대	348	21.9	2.2	19.7	78.1	54.4	23.7	
	50대	359	24.9	2.8	22.1	75.1	49.1	26.0	
결혼 상태	미혼	545	32.3	6.3	26.0	67.7	49.8	17.9	6.376**
	배우자 있음	726	26.3	3.3	23.0	73.7	50.1	23.5	
	이혼/별거/사별	40	16.6	2.0	14.6	83.4	59.2	24.2	
자녀 유무	있음	671	25.3	3.4	21.8	74.7	51.0	23.7	3.251**
	없음	641	31.9	5.7	26.3	68.1	49.5	18.6	

주: *p<.05, **p<.01, ***p<.001

‘장례식장에 화환은 많을수록 좋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가 44.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32.1%로, 장례식의 과도한 장식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률이 76.9%로 더 높았다.



[그림 IV-13]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③장례식장에 화환은 많을수록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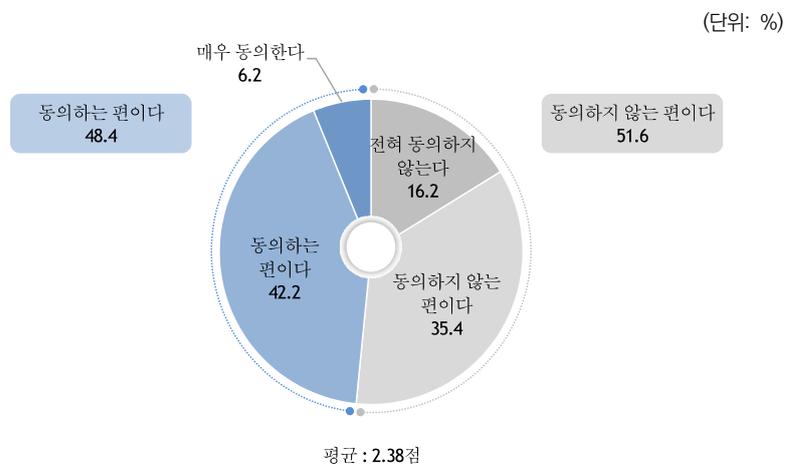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p < .001$)를 보여, 장례식장에 화환은 많을수록 좋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여성은 83.8%로 남성(70.2%)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도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히 전업주부에서 장례식의 과도한 장식에 대해 부정적인 비율이 82.6%로 가장 높았다.

〈표 IV-10〉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③장례식장에 화환은 많을수록 좋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F/T값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1,312	76.9	32.1	44.7	23.1	20.0	3.2		
성별	남성	672	70.2	27.5	42.8	29.8	25.9	3.8	5.593***
	여성	640	83.8	37.0	46.8	16.2	13.8	2.4	
직업	관리/전문직	197	78.7	34.8	43.9	21.3	19.8	1.5	2.628*
	사무/기능직	603	76.9	31.4	45.5	23.1	19.9	3.3	
	서비스/판매직	113	71.6	28.3	43.2	28.4	24.4	4.0	
	농/임/어업	5	43.4	14.8	28.6	56.6	33.5	23.1	
	장치조작/단순노무직	39	67.9	17.8	50.1	32.1	25.6	6.5	
	전업주부	157	82.6	38.0	44.6	17.4	16.0	1.4	
	학생/무직/기타	198	76.0	32.4	43.6	24.0	19.9	4.2	

주: * $p < .05$, ** $p < .01$, *** $p < .001$

‘장례식은 적어도 3일간 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51.6%(‘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5.4%+‘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6.2%), 동의하는 비율이 48.4%(‘동의하는 편이다’ 42.2%+‘매우 동의한다’ 6.2%)로, 삼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근소한 차이로 더 높았다.



[그림 IV-14]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④장례식은 적어도 3일간 해야 한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성별과 직업에 따라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은 삼일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59.5%로 더 높는데 반해, 남성은 긍정적인 의견이 55.9%로 더 높았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66.3%)와 학생/무직/기타(54.9%)에서 삼일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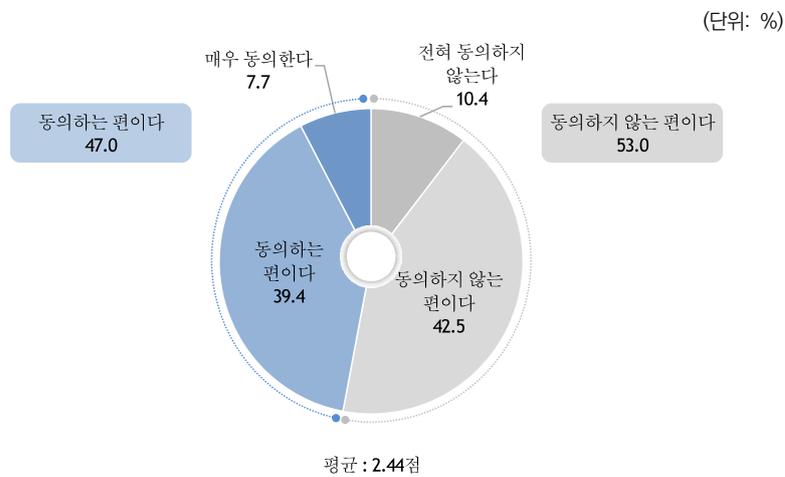
〈표 IV-11〉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④장례식은 적어도 3일간 해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F/T값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1,312	51.6	16.2	35.4	48.4	42.2	6.2		
성별	남성	672	44.1	11.7	32.4	55.9	48.6	7.3	5.997***
	여성	640	59.5	21.0	38.5	40.5	35.5	5.0	
직업	관리/전문직	197	49.2	17.8	31.4	50.8	47.2	3.6	4.325***
	사무/기능직	603	50.9	15.3	35.6	49.1	41.7	7.4	
	서비스/판매직	113	42.4	9.9	32.5	57.6	52.9	4.8	
	농/임/어업	5	14.8	0.0	14.8	85.2	75.8	9.4	
	장치조작/단순노무직	39	29.2	7.8	21.4	70.8	58.8	12.0	
	전업주부	157	66.3	23.1	43.2	33.7	27.3	6.4	
	학생/무직/기타	198	54.9	17.6	37.2	45.1	40.6	4.5	

주: * $p < .05$, ** $p < .01$, *** $p < .001$

‘장례식에는 조문객이 많아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53.0%(‘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2.5%+‘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4%), 동의하는 비율이 47.0%(‘동의하는 편이다’ 39.4%+‘매우 동의한다’ 7.7%)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문상 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근소한 차이로 더 높았다.



[그림 IV-15]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⑤장례식에는 조문객이 많아야 한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성별과 결혼상태에 따라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은 조문객이 많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58.0%로 더 높는데 반해, 남성은 긍정적인 의견이 51.9%로 더 높았다. 미혼의 경우도 부정적인 의견이 59.7%로 더 높는데 반해, 유배우인 경우 긍정적인 의견이 51.8%로 더 높았다. 연령대와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자녀가 없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이 57.3%로 과반을 차지한 반면, 자녀가 있을 때는 긍정적인 의견이 51.2%로 더 높았다.

〈표 IV-12〉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태도: ⑤장례식에는 조문객이 많아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F/T값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1,312	53.0	10.4	42.5	47.0	39.4	7.7		
성별	남성	672	48.1	9.4	38.8	51.9	42.6	9.2	3.565***
	여성	640	58.0	11.5	46.5	42.0	36.0	6.0	
연령	20대	308	61.8	12.9	48.9	38.2	30.9	7.3	4.064**
	30대	297	53.8	10.8	43.0	46.2	38.6	7.6	
	40대	348	46.6	9.1	37.5	53.4	44.3	9.1	
	50대	359	50.9	9.3	41.6	49.1	42.5	6.7	
결혼 상태	미혼	545	59.7	13.1	46.5	40.3	33.3	7.0	7.953***
	배우자 있음	726	48.2	8.7	39.5	51.8	43.8	8.0	
	이혼/별거/사별	40	48.3	5.5	42.8	51.7	40.8	11.0	
자녀 유무	있음	671	48.8	9.0	39.8	51.2	43.0	8.2	2.879**
	없음	641	57.3	11.9	45.4	42.7	35.6	7.1	

주: * $p < .05$, ** $p < .01$, *** $p < .001$

종합하면, 한국 장례식의 실태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허례허식의 고비용의 문제를 진단한 것을 반영하듯, 고비용의 장례를 지양하고 형식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특히 성별에 따라서는 일관

되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여성이 남성보다 적정 비용의 간소한 장례식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안적인 장례문화 및 정책

가. 성 평등한 장례문화 및 관련 정책

본 절에서는 희망하는 장례문화를 상주의 필요성, 대상, 장례식에서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성 평등한 장례문화와 함께 관련 정책의 필요성도 함께 질문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희망하는 장례문화에서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데 상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전체의 63.9%가 상주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36.1%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단위: %)



[그림 IV-16]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 시 상주의 필요성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과 자녀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p < .001$) 남성의 71.6%가 상주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여성(55.9%)보다 15.7%p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또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5.4%p 더 높은 비율인 66.6%가 상주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자녀가 없는 경우 보다는 자녀가 있는 경우, 상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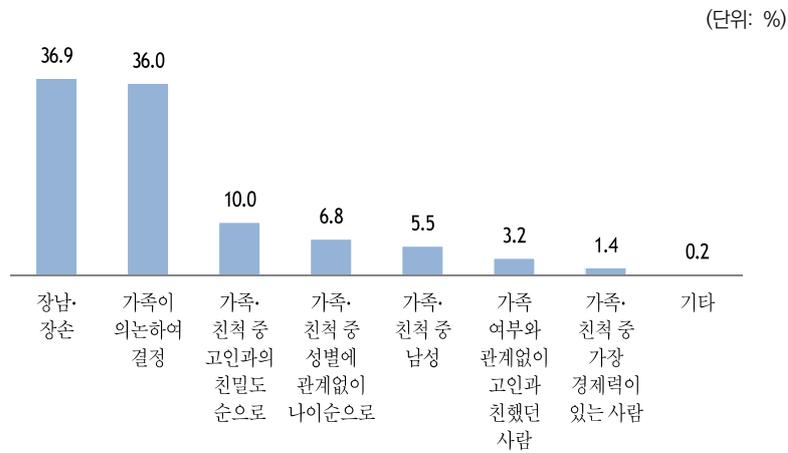
〈표 IV-13〉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시 상주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F/T값
전체		1,312	63.9	36.1	
성별	남성	672	71.6	28.4	34.780***
	여성	640	55.9	44.1	
자녀 유무	있다	671	66.6	33.4	4.243*
	없다	641	61.2	38.8	

주: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상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식에서 상주는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장남·장손이라는 응답이 36.9%로 가장 높았으나 근소한 차이로 가족이 의논하여 결정한다는 의견도 36.0%도 나타났다. 또, 고인과의 친밀도 순(10.0%),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순으로(6.8%) 등, 응답자들은 기존의 장례식에서 장남·장손으로 대변되는 남성 중심의 상주가 아닌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절에서 ‘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하는 것은 남성’이라는 인식이 94.5%로 압도적이었던 것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현재 장례에서 상주는 대부분 남성의 역할이었으나, 희망하는 장례 문화에서는 남성인 장남·장손뿐만 아니라 ‘가족이 의논하여 결정’하는 등 다양한 의견도 많았다. 이는 기존 장례문화의 성역할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과 요구가 함께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7]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식의 상주

응답자의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 연령, 결혼상태, 자녀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44.2%가 장남·장손이 상주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여성의 경우 27.1%만이 장남·장손이 상주를 해야 한다고 응답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가족이 의논하여 결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여전히 장남·장손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결혼상태가 미혼인 경우는 가족이 의논하여 결정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배우자가 있거나, 이혼/별거/사별인 경우 장남·장손이 상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장남·장손이 상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즉, 남성, 고연령대, 유배우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상주로 장남·장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여성, 연령이 어릴수록,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상주는 가족이 의논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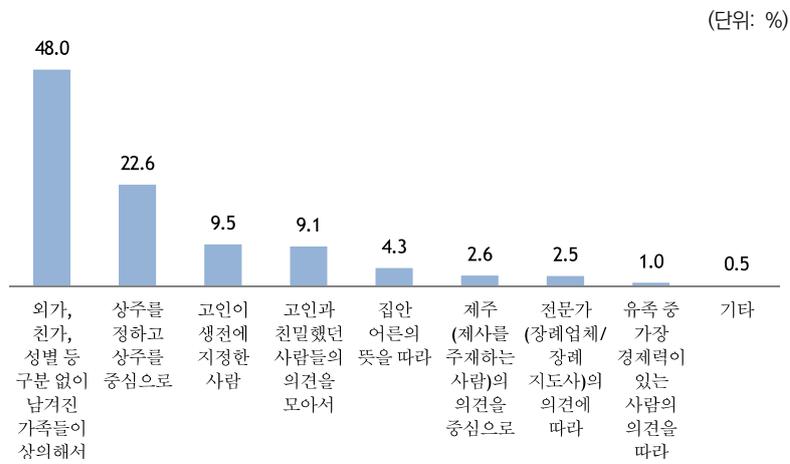
〈표 IV-14〉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식의 상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장남·장손	가족이 의논하여 결정	가족·친척 중 고인과의 친밀도 순으로	가족·친척 중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 순으로	가족·친척 중 남성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고인과 친했던 사람	가족·친척 중 가장 경제력 있는 사람	기타	F/T값
전체	839	36.9	36.0	10.0	6.8	5.5	3.2	1.4	0.2	
성별	남성	481	44.2	30.0	9.3	6.2	6.7	1.7	1.4	0.3
	여성	358	27.1	44.0	10.9	7.6	3.8	5.2	1.4	0.0
연령대	20대	197	25.8	39.0	11.5	10.5	5.4	5.8	1.5	0.5
	30대	184	28.2	46.2	12.5	6.9	2.7	2.1	1.0	0.3
	40대	223	40.5	32.6	7.7	7.7	6.2	3.3	2.1	0.0
	50대	235	49.6	28.7	9.0	2.8	7.1	1.7	1.0	0.0
결혼상태	미혼	333	27.9	41.8	10.2	9.7	4.8	4.0	1.4	0.3
	배우자 있음	477	43.1	32.3	9.7	4.8	5.6	2.9	1.5	0.1
	이혼/별거/사별	29	39.6	29.0	12.0	6.3	13.2	0.0	0.0	0.0
자녀유무	있다	447	44.1	32.5	8.3	5.0	6.0	2.8	1.2	0.1
	없다	392	28.7	40.0	11.9	8.9	4.9	3.7	1.7	0.3

주: *P<.05, **p<.01, ***p<.001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가까운 48.0%의 사람이 '외가, 친가, 성별 등 구분 없이 남겨진 가족들이 상의해서' 라고 대답했으며, 2순위로 '상주를 정하고 상주를 중심으로'라는 의견도 22.6%로 나타났다.



[그림 IV-18]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p<.001)을 보여, 여성의 53.3%가 '외가, 친가, 성별 등 구분 없이 남겨진 가족들이 상의해서'라고 응답해, 남성의 응답률 43.0%보다 13.3%p 높았다. 또, 연령과 직업, 결혼 상태와 자녀유무, 자녀 성별과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남겨진 가족들이 상의해서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주를 정하고 상주를 중심으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 전업주부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남겨진 가족들이 상의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3.8%로 높았다. 자녀유무에 따라서도 비교적 뚜렷한 차이(p<.001)를 보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50.7%)가 있는 경우(45.5%)에 비해 '남겨진 가족들이 상의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아들만 있는 경우에는 '상주를 정하고 상주를 중심으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앞서 '장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은 남성에게 있다'라는 인식에 대해서 76.7%가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것에 반해, 희망하는 장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외가, 친가, 성별 등 구분 없이 남겨진 가족들이 상의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50%에 가까워 현재 장례에 대한 인식과 희망하는 장례에 대한 모습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IV-15〉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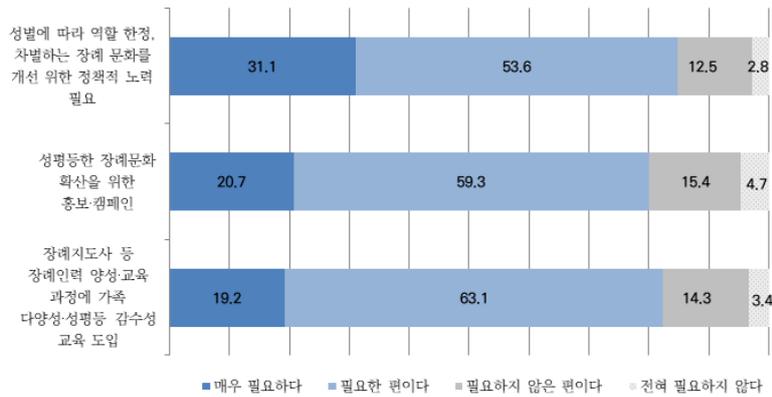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외가, 친가, 성별 등 구분 없이 남겨진 가족들이 상의해서	상주를 정하고 상주를 중심으로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사람	고인과 친밀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안 어른의 뜻을 따라	제주(제사를 주재하는 사람) 의견을 중심으로	전문가(장례업체/장례지도사) 의견에 따라	유족 중 가장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	기타	F/T값	
전체	1,312	48.0	22.6	9.5	9.1	4.3	2.6	2.5	1.0	0.5		
성별	남성	672	43.0	27.7	8.5	8.3	4.9	2.6	3.0	1.4	0.7	31.568***
	여성	640	53.3	17.3	10.5	9.9	3.6	2.6	2.1	0.6	0.2	
연령대	20대	308	53.1	14.5	13.2	9.8	4.9	0.3	2.1	1.0	1.1	66.964***
	30대	297	49.7	18.4	11.2	8.2	5.3	2.8	2.9	1.1	0.3	
	40대	348	47.8	22.9	7.2	10.2	3.9	2.8	4.4	0.6	0.3	
	50대	359	42.5	32.9	7.1	8.0	3.2	4.1	0.8	1.2	0.2	

구 분	사례수	외가, 친가, 성별 등 구분 없이 남겨진 가족들이 상의해서	상주를 정하고 상주를 중심으로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사람	고인과 친밀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안 어른의 뜻을 따라	제주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 의견을 중심으로	전문가 (장례 업체/ 장례 지도사) 의견에 따라	유족 중 가장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	기타	F/T값
직업	관리/전문직	197	44.1	26.2	10.2	6.7	3.6	5.2	2.3	1.6	0.0
	사무/기능직	603	49.1	22.9	9.1	8.8	3.6	2.1	3.1	1.2	0.0
	서비스/판매직	113	47.3	25.1	6.5	11.6	5.3	4.3	0.0	0.0	0.0
	농/임/어업	5	27.0	0.0	0.0	28.2	25.8	0.0	0.0	0.0	19.0
	장치조작/단순노무직	39	40.7	29.9	7.6	10.3	5.3	0.0	3.8	0.0	2.4
	전업주부	157	53.8	21.3	6.7	7.6	4.7	2.6	1.9	0.8	0.6
	학생/무직/기타	198	46.3	17.1	14.4	11.0	5.1	1.1	2.7	0.6	1.6
결혼상태	미혼	545	51.2	17.3	13.5	9.1	4.0	1.7	1.8	0.6	0.8
	배우자 있음	726	46.5	26.5	6.5	9.1	4.2	2.9	2.8	1.3	0.1
	이혼/별거/사별	40	32.3	24.9	7.5	8.8	8.7	9.5	6.2	0.0	2.1
자녀유무	있다	671	45.5	27.5	6.8	8.3	3.9	3.4	3.0	1.3	0.3
	없다	641	50.7	17.6	12.3	9.8	4.6	1.7	2.1	0.7	0.7
자녀성별	딸만 있음	187	46.6	26.6	4.8	6.2	6.5	2.1	6.2	1.0	0.0
	아들만 있음	230	44.6	30.3	9.7	6.1	3.2	3.8	0.4	1.1	0.8
	딸, 아들 모두 있음	255	45.5	25.7	5.6	11.8	2.7	4.0	2.9	1.8	0.0

주: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한국 장례문화의 성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관련해서 국가의 지원이나 개선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하고 차별하는 장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4.7%('매우 동의한다' 31.1%+'동의하는 편이다' 53.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장례문화 개선 정책과 관련해서 필요도를 묻는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 평등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0%('매우 필요하다' 20.7%+ '필요한 편이다' 59.3%)로 성 평등한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장례지도사 등 관련 인력 양성과 관련한 교육과정에 ‘가족 다양성·성평등’에 대한 감수성 교육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체의 82.3%('매우 필요한 편이다' 19.2% + '필요한 편이다' 63.1%)가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성 평등한 장례문화에 대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해당 정책에 대한 필요성의 요구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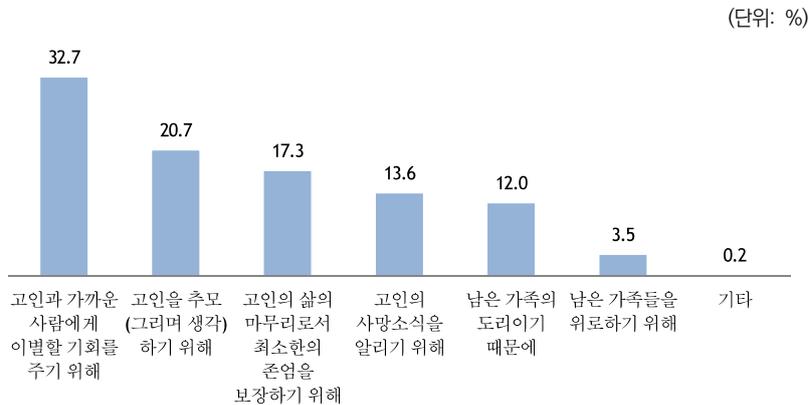


[그림 IV-19]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성 평등한 장례문화 관련

마지막으로, 본 절의 대부분 문항에서도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장례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기존의 장례 문화의 전형적인 인식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며 희망하는 장례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 장례문화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문제의식이 이미 대두되고 있으며, 새로운 요구가 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FGI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장례에서 기존의 규범이나 관습보다 현재의 상황이나 변화에 맞는 성 평등하고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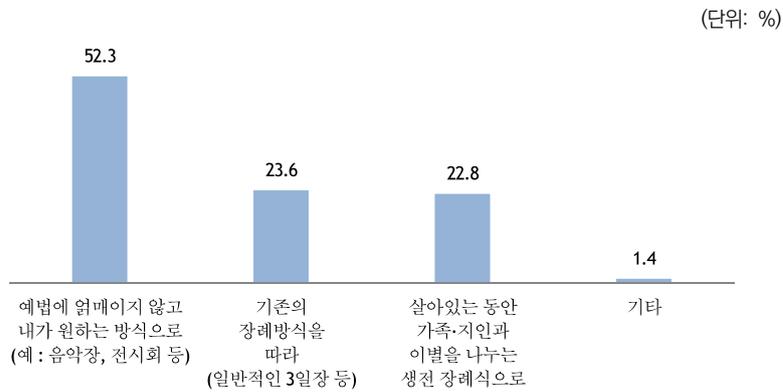
나. 대안적인 장례 방식 및 관련 정책

장례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고인과 가까운 사람에게 이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3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가 20.7%, ‘고인의 삶의 마무리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17.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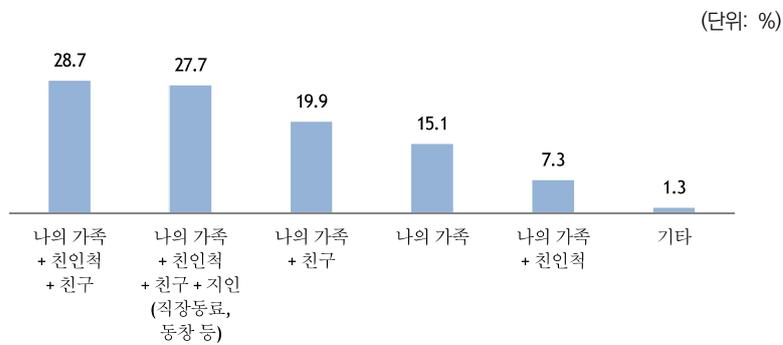
[그림 IV-20] 장례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본인의 장례식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물어본 결과, '예법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예: 음악장, 전시회 등)'가 52.3%로 과반을 차지한데 반해, '기존의 장례방식을 따라(일반적인 3일장 등)' 하고 싶다는 응답은 23.6%로 약 ¼에 불과했다. 또 '살아있는 동안 가족·지인과 이별을 나누는 생전 장례식으로' 하고 싶다는 응답도 22.8%를 차지하여, 기존의 장례방식과는 다른 자유롭고 새로운 형식에 대한 요구가 약 75%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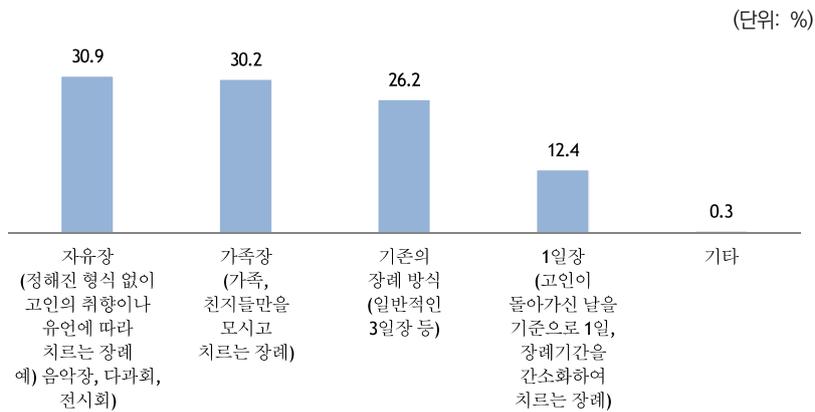
[그림 IV-21] 희망하는 장례 방식: 본인

본인의 장례식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의 범주에 대해서는 '나의 가족+친인척+친구'가 28.7%로 근소한 차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가장 넓은 범주이자 기존 장례식의 통상적인 조문객의 범주인 '나의 가족+친인척+친구+지인(직장동료, 동창 등)'은 27.7%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의 장례식에는 기존 장례식보다는 다소 좁은 범주 혹은 더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다는 의향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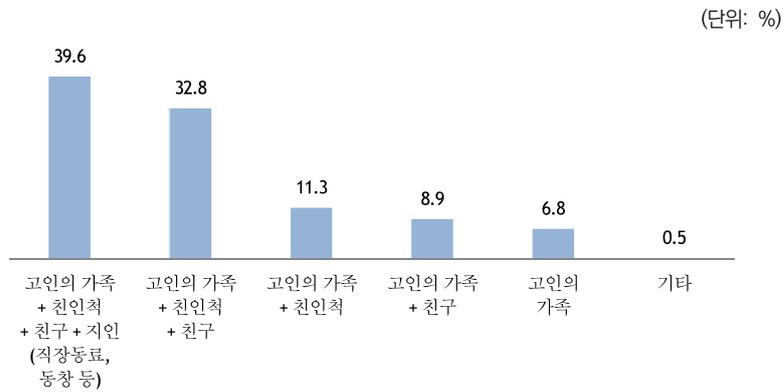
[그림 IV-22] 장례식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 본인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의 장례식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물어본 결과, ‘자유장(정해진 형식 없이 고인의 취향이나 유언에 따라 치르는 장례)’이 30.9%, ‘가족장(가족·친지들만을 모시고 치르는 장례)’이 30.2%로 비슷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기존의 장례 방식(일반적인 3일장 등)’은 26.2%, ‘1일장(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1일, 장례기간을 간소화하여 치르는 장례)’은 12.4%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장례방식과 다른 자유롭고 간소한 형식에 대한 요구는 약 75% 정도로, 본인의 장례 방식에 대한 요구와도 비슷한 비중의 응답 경향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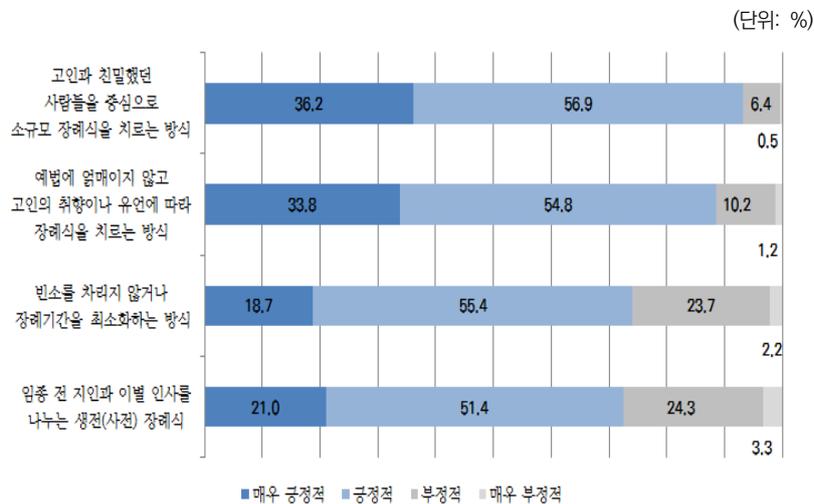
[그림 IV-23] 희망하는 장례 방식: 사랑하는 사람·가족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의 장례식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의 범주에 대해서는 가장 넓은 범주이자 기존 장례식의 통상적인 조문객의 범주인 ‘고인의 가족+친인척+친구+지인(직장동료, 동창 등)’이 3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고인의 가족+친인척+친구’가 32.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의 장례식의 경우 본인의 장례식보다는 기존의 장례 방식대로 조문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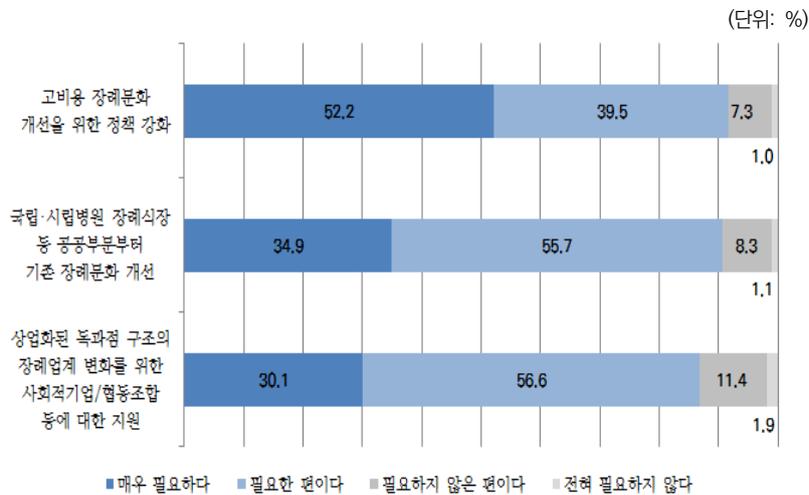
[그림 IV-24] 장례식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가족

앞서 희망하는 장례 방식에 대한 응답을 통해 본인의 장례식이나 사랑하는 사람, 가족의 장례식 모두 기존과는 다른 형식 및 절차로 하고 싶다는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기존과는 다른 대안적인 장례 방식 중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대안적인 장례 방식 전반에 대해 최소 70%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고인과 친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장례식을 치르는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93.1%(‘긍정적’ 56.9%+‘매우 긍정적’ 36.2%)로 가장 높았고, ‘예법에 얽매이지 않고 고인의 취향이나 유언에 따라 장례식을 치르는 방식’이 88.6%(‘긍정적’ 54.8%+‘매우 긍정적’ 33.8%)로 두 번째로 높았다. 다음으로 ‘빈소를 차리지 않거나 장례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74.1%(‘긍정적’ 55.4%+‘매우 긍정적’ 18.7%), ‘입종 전 지인과 이별 인사를 나누는 생전(사전) 장례식’이 72.4%(‘긍정적’ 51.4%+‘매우 긍정적’ 21.0%) 순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 중심의 간소한 장례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가운데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다양성에 대한 요구도 동시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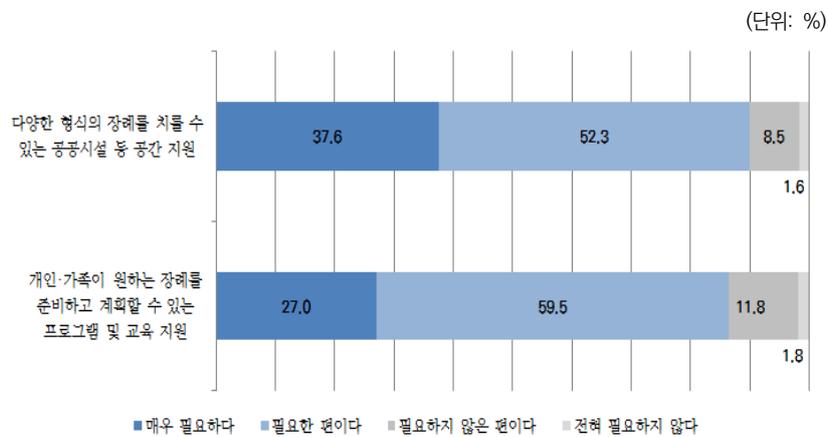
[그림 IV-25] 대안적인 장례 방식에 대한 태도

마지막으로 앞의 절에서 한국 장례문화의 형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다루어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앞서 고비용의 상업화된 장례문화의 실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반영하듯이, ‘고비용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장례용품 가격 등 정보공개 강화, 간소한 장례식 정보 안내 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2.2%로 절반을 넘었고, ‘필요한 편이다’(39.5%)는 응답까지 합치면 전체의 91.7%를 차지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정도는 아니지만, 장례서비스와 관련한 나머지 두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이 약 90%에 이르렀다. 즉 ‘국립·시립병원 장례식장 등 공공부분부터 기존 장례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90.6%(‘필요한 편이다’ 55.7%+‘매우 필요하다’ 34.9%)가, ‘상업화된 독과점 구조의 장례업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86.7%(‘필요한 편이다’ 56.6%+‘매우 필요하다’ 30.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림 IV-26]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장례서비스 관련

다음으로 획일화된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형식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공공시설 등 공간지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9.9%('필요한 편이다' 52.3%+'매우 필요하다' 37.6%)로 높았고, '개인·가족이 원하는 장례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에 대해서도 86.5%('필요한 편이다' 59.5%+'매우 필요하다' 27.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림 IV-27]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다양한 장례문화 관련

앞 절에서 고비용의 획일적인 장례문화에 대한 문제 인식을 확인한 것과 같은 선상에서, 희망하는 장례 방식을 통해서도 친밀한 관계 중심의 간소한 장례식과 개인의 취향 중심의 다양한 장례식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하는 응답이 일관되게 매우 높게 나타났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20~50대의 성인 약 1,300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장례문화의 실태와 대안적인 장례문화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장례문화의 실태는 ‘성 불평등성’과 ‘형식 및 절차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하였고, 각각과 관련하여 대안적인 장례문화 및 정책 요구를 파악하였다.

한국 장례문화의 성 불평등 실태와 관련하여, 남성은 상주나 주요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하는데 반해, 여성은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짓고 위계적인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며 이런 문화는 변화해야 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가족 변화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한국 장례문화의 형식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본질에서 벗어난 허례허식의 고비용 장례식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고비용의 장례를 지양하고 형식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현재의 성 불평등하고 허례허식에 치우친 장례문화에 대한 문제 인식과 변화의 필요성은 여성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따라서는 일관되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여성이 남성보다 성 평등하고 적정 비용의 간소한 장례식에 대한 요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적인 장례문화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도 현재 한국의 장례문화의 실태와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응답자들은 성 불평등하고 허례허식에 치우친 현재의 장례문화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중심의 성 평등하고 간소한 장례문화, 개인의 취향 중심의 다양한 장례문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성 평등한 장례문화에 대한 요구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컸지만, 전반적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대안적인 장례문화에 대한 요구가 컸다. 현재 한국의 장례문화의 실태와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 사이의 괴리를 반영하듯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하는 응답이 일관되게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결론 및 정책제언

-
1. 성별 위계와 차별적 구분 없는 장례문화로 161
 2. 가부장적 혈연가족에서 다양한 개인과 가족으로 165
 3. 의례와 절차 중심의 장례에서 추모와 애도가 있는 장례로 168

결론 및 정책제언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위계와 차별적 구분 없는 장례문화로

시대에 맞지 않는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는 개선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FGI 결과는 물론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하고 차별하는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7%로 나타났다. 호주제가 폐지된 지 십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우리 일상에 깊숙이 남아 있는 가부장적 가족 문화가 상업화된 장례시스템을 통하여 구시대적인 내용의 법제의 지지 하에 장례에서 소환되고·재연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가. 장례인력 양성과정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커리큘럼 포함

장례지도사 등 장례인력 양성과정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도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커리큘럼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 가구, 비혼 동거, 딸만 있는 가족 등 가족이 다양해지고, 가족 내에서 이미 성별 위계와 가부장적 가치관이 흔들리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본 연구의 인식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에 대한 불만과 변화의 욕구도 상당히 높다. 장례지도사 등 관련 인력 양성과 관련한 교육과정에 ‘가족 다양성·성평등’에 대한 감수성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의 82.3%에 달했다. 장례인력의 양성에 있어 교육 내용과 커리큘럼은 변화하는 가족 문화와 성평등 가치에 맞추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은 교육 내용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의 장례에서 추모와 애도라는 장례의 본질은 남기고, 불합리한 성별 역할 구분과 위계로 구성된 의례를 걷어내는 시도와 대안의 모색이 교육과정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장사법 시행규칙 별표2는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정 내용에 “장례의 의미와 기능” 및 “상장례의 이해”에 가족과 사회의식의 변화에 대응한 장례 문화의 대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사자의 역할과 자세”에 가족 다양성 및 성인지 감수성 내용이 반영되어 개정되어야 한다.

〈표 V-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중 개정(안) 제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제20조의6 제1항 관련) 개정(안)		
1. 교육과정의 구분과 그 내용		
가. 표준교육과정		
1) 표준교육과정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표준교육과정의 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장례학 개론	장례의 의미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례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 장례의 역사적 변천 가족과 사회의 변화와 장례 문화
	상장제의례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상제의례 현대 장례의 이해와 절차 종교별 장례와 제례 가족과 성평등 의식의 변화와 대안적 장례
	상장의례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의례 실습 종교별 상장제의례 안내
	종사자 직업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윤리 종사자의 역할 및 자세 가족 다양성 및 성인지 감수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제20조의6 제1항 관련) 개정(안)	
<p>나. 전공자 교육과정</p> <p>1) 전공자 교육과정은 2012년 8월 5일 이전에 대학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장사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한다.</p> <p>2) 전공자 교육과정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3) 전공자 교육과정의 과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p>	
장례학개론	장례의 의미와 기능 가족과 사회의 변화와 장례 문화
	상장제의례 이해 가족과 성평등 의식의 변화와 대안적 장례
	상장제의례의 실제
	종사자 직업윤리 가족 다양성 및 성인지 감수성

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제안하는 개정(안) 작성. 개정(안)의 표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제20조의6제1항 관련)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연구진의 제안 내용을 반영하여 제시한 안임.

둘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표준교육교재를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표준교육교재는 이미 수년이 지난 것이고, 그 내용도 사회의 변화된 성평등 의식 수준과 가족 가치 및 가족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변화된 사회화 가족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과 가족 다양성 관점을 반영한 표준교육교재를 새로이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종사자 교육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 및 가족다양성 교육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의 투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연구 및 대안적 장례 콘텐츠 개발

장례인력 양성과정에 있어 교재·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 그간 문제 의식 없이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장례에 있어서의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 문화

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해 관련 연구 및 대안적 장례 콘텐츠 개발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사법 제33조의4에 근거한 장사지원센터의 업무에 이미 “장사정책·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가족과 사회의 의식변화에 대응한 장례문화를 위한 연구와 개발에도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발주,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 모니터링, 그리고 대안적 장례문화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련 단체나 활동가들과의 워크숍과 사례 공유 등을 통한 결과물을 콘텐츠의 개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언할 수 있다.

다.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 관련 법제의 개선

호주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에서는 “주상(主喪)” 또는 “상주(喪主)”라는 이름으로 장자와 장손이 3일의 장례 기간 동안 “호주(戶主)”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고 가부장적인 의례를 시연한다. 장례가 끝나고 나면 제례에서 이들은 “제주(祭主), 제사주재자”로서 명절과 기일마다 반복적으로 의례를 시연하게 된다. 민법에서 호주(戶主)는 폐지되어 삭제되었으나 상주(喪主)와 제주(祭主)는 아직도 법제에 명시되어 유지되고 있다. 자격기준은 호주와 동일한 장자-가부장제를 이어갈 부계-남성이다.

가정의례준칙 상 장례 관련 규정은 간소화의 방향과 방식이 잘못되어 애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의례의 가부장성과 성 불평등한 절차와 성별 역할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존치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포함하여 헌법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전근대적이고 성 불평등한 법제와 요소들은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라. 성평등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성평등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필요한 부분이다. 장례문화는 간소화와 대안적 방식, 친자연적 장례 등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이 필요한 여러 이슈들이 있다. 그간 친자연적인 장례에 정책적 방점이 있어왔다면,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성 평등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정책 필요성에 대한 욕구도 높은 만큼(80.0%), 전반적인 장례문화에 대한 성찰과 함께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 및 가족 변화에 맞는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적 홍보와 캠페인의 결과 우리나라의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그리고 최근 친자연적 장례로의 변화가 주도되고 그 효과와 성과가 큰 만큼, 사회와 가족 변화를 반영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분야에서의 정책적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홍보·캠페인은 정부차원의 관심과 노력은 필수적이다. 또한 관련 단체 등 현장에서 접점이 많은 활동가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확산해가는 방식도 함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2. 가부장적 혈연가족에서 다양한 개인과 가족으로

‘혈연 가족’이라는 협소한 기준만으로 장례의 자격과 권한이 부여되는 현행 장례문화가 가족형태 및 구성, 관계의 다양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함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가.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추모 보장

삶을 다하고 떠나는 사람과 떠나보내는 누구나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장되어야 한다. 어떠한 죽음이라도 마지막 가는 길까지는 존중받고 보살피질 권리가 있다. 고령화와 가족 변화, 개인화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은 이미 사회보장체계에 장례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이나, 기초수급자 장제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르기 어려워 가족이 있음에도 시신인수를 거부하고 무연고장례를 선택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소한의 마지막 존엄은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그리고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도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장례는 돌봄의 마지막이다. 돌봄의 부담을 가족으로부터 국가와 사회가 덜어가는 것처럼 돌봄의 마지막인 장례도 최소한의 보장을 고려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 관계의 변화 등 가족 변화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마지막으로서의 장례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부담과 국가와 사회의 역할에도 다시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가족관계 변동에 따른 가족범위 확장

가족관계의 변동에 대응하지 못한 채, 장례의 주체로 사실혼, 비혼 동거 가족, 공동체 등을 배제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이미 문제되고 있는 무연고 장례의 이슈에서 기존의 제도 밖의 다양하고 새로운 관계의 당사자들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지막 돌봄으로서의 장례와 추모의 기회를 허용 받지 못하는 문제는 조속히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혈연과 법률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중심의 장례 관련 법규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사법 제2조 제16호의 정의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동거인, 사실혼 관계 등을 명시하면서, 시신인수 여부의 확인은 순서대로 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모호한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장례 의사가 있는 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려야 한다.

〈표 V-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생략)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현행과 같음)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하며, 우선 순위 연고자가 연고자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 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자가 연고자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개정(안)	
현행	개정안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한 자가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지정한 자 아.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거나 관리할 의향이 있는 자

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 조항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제언하는 개정(안) 작성.

사망진단서의 교부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와 혈족 중심의 가족 범위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 의료법 제17조는 비혼 동거 당사자의 사망진단서를 포함한 각종 의료 진단서의 교부 자격 문제가 모두 연동되어 있다. 그 범위에 “환자(본인)이 지정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후견제도의 보완 등-사후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비혼, 1인 가구, 제도 밖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죽음 이후 장례 등을 부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 임의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종료되므로, 사후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 신탁제도, 유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후견인의 사후사무처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후견비용의 부담을 경감시켜 이용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3. 의례와 절차 중심의 장례에서 추모와 애도가 있는 장례로

의례와 절차에 압도된 고비용, 고부담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위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애도가 가능하도록 돕는 지원 체계 및 사회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가. 고비용 장례문화 개선

장례의 간소화와 고비용 문제의 해결은 상업화된 장례와 의례 중심의 장례에서 벗어나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현실적으로 고비용 장례문화의 문제는 이용자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이슈이며, 인식조사결과에서도 그 필요성에 압도적인 동의가 있었다. 고비용 장례문화는 장례비용이 없어 시신인수를 거절해서 가족이 있음에도 무연고 장례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례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고비용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간소한 장례 캠페인이라든지, 작은 장례 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가격 공시, 다양한 장례식이 가능한 시설 지원, 업체 정보 제공 등을 제언할 수 있다. 현재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도 간소한 장례 관련 캠페인 등 작은 장례 문화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상업적인 업체가 아닌 다양한 대안적 방식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정책적 인프라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시설을 연계한 다양한 장례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시민청이나, 자치회관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마을과 지역 주민, 대안적 장례 문화를 지향하는 단체나 모임과 지역과 마을의 다양한 공간과의 연계를 모색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국립·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등의 경우 1일장이나, 업체 없이 간소하게 또는 대안적 장례 등을 위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죽음과 장례에 관한 일상적 준비를 지원하는 사회분위기/ 문화 조성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황없이 업체를 통한 전형적인 의례에 따르게 되지 않도록 본인 또는 가족이 미리 자신의 장례를 생각해보고 준비하고 기획하는 문화의 정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 또는 가족이 원하는 장례를 준비,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및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사전장례의향서 작성, 엔딩노트 등,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 활동에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사전장례의향서(장수행복노트)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가족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대안적인 장례 문화를 모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유연제도, 앞서 언급한 신탁, 사후사무처리 등 삶을 마무리하는 데에 제도적 틀을 마련해주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박진옥·박은순·박지숙·양희철·정현경. 2019. 8.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 결정권 한일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 연구. 법무법인(유)화우·(재)화우 공익재단.
- 박복순·김영란·정수연·박기령. 2016. 건전혼례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2012.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표준교육교재.
- 이미애. 2014. “일본의 고령화와 장례·묘지 문제-지연과 혈연 공동체에서 개인의 문제로-”. 출판사: 인문사.
- 이삼식·박미연·하미영·박중서·안영훈·한부영. 2003. “장사제도 및 행정체계 국제비교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준확·홍순기. 2016.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 출판사: 꿈결.

[국외문헌]

- 内閣府. 2019. 『令和元年高齢社会白書』. https://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9/zenbun/pdf/1s1s_03.pdf 최종검색일 2019.9.20.
- 経済産業省. 2012.4. 『安心と信頼のある「ライフエンディング・ステージ」の創出に向けた普及開発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経済産業省商務情報政策局サービス政策課サービス産業室. <https://www.asagao.or.jp/sougi/link/keisan-houkoku.pdf> 최종검색일 2019.09.21.
- 公正取引委員会. 2017.03. 「葬儀の取引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 内閣府. 2017. 『平成27年版高齢社会白書』.
- 内閣府消費者契約法専門調査会. 2017.04.28. 「葬儀業界の現状」, 第37回 消費者契約法専門調査会資料. https://www.cao.go.jp/consumer/history/04/kabusoshiki/other/meeting5/doc/170428_shiryoushi_1.pdf 최종검색일 2019.09.26.

- 木村由香·安藤孝敏. 2018. 03. “マス・メディアにおける終活のとらえ方とその変遷—テキストマイニングによる新聞記事の内容分析—”. 技術マネジメント研究. 17: 1-19. 横浜国立大学技術マネジメント研究学会.
- 朴修慶. 2015. “日本の介護労働におけるジェンダーの特性に関する研究—介護労働のジェンダーフリー化を中心に—”. 일본연구 63: 27-56.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 小谷みどり. 2016. 10. “猛スポーツで少子高齢化が進む台湾—連合葬祭からみえた「つながり」のゆくえ—”. LIFE Design Report. AUTUMN 2016. 10: 27-31. 第一生命経済研究所ライフデザイン研究本部.
- 消費者委員会. 2017. 「身元保証等高齢者サポート事業に関する消費者問題についての調査報告」. https://www.cao.go.jp/consumer/iinkaikouhyou/2017/doc/20170131_kengi_houkoku1.pdf 최종검색일 2019.09.30.
- 井上治代. 2007. 「死者儀礼」のいま. 葬儀のかたち: 死者供用のあり方を先祖を考える(pp. 6-17). 東京: 佼成出版社.
- 藤井辰紀. 2012. “NPO法人の存在意義と経営課題”. 日本政策金融公庫論集. 16: 55-73. 日本政策金融公庫総合研究所.
- 星野茂. 1992. “遺体・遺骨をめぐる法的諸問題(上)”. 法律論叢. 64: 173-203. 明治大学法学部紀要.

[URL_국내]

- 경남신문. 2019. “[기획] 죽음까지 외로운 삶 늘어나는 고독사 (하) 대책 “법적 연고자 외에도 장례 치르도록 해야” 현행법상 가족만 장례연고자 허용”. 2019년 5월 6일자 기사.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85910> 최종검색일: 2019.5.20.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61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2083&ancYd=20071227&ancNo=20461&efYd=2008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

202&ancYnChk=0#0000 최종검색일 2019.10.30.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469&efYd=20190423#0000> 최종검색일 2019.5.20.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269&efYd=20190101#0000>, 최종검색일 2019.5.20.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제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628&ancYd=19990208&ancNo=05837&efYd=1999080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최종검색일 2019.5.20.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232&ancYd=19990831&ancNo=16544&efYd=1999083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최종검색일 2019.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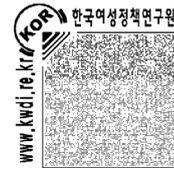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건전가정의례준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9607&efYd=20190702#0000> 최종검색일 2019.10.30.

국민연금공단. “대만 연금제도 개여 및 연금 청구 절차”. https://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report/02_03_02_taiwan.pdf 최종검색일 2019.9.25.

국민일보. 2018. ““여자는 왜 ‘상주’가 될 수 없나?” 남성중심 장례문화에 대한 반기”. 2018년 8월 8일자 기사. <http://m.kmib.co.kr/view.asp?arcid=0012587007#RedyAi>, 최종검색일 2019.5.21. 참조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8. “일상생활 속 정책개선을 위한 국민 생각이 가득”. 2018년 7월 17일자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783>, 최종검색일 2019.4.10.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searchIntClId=&searchCnDivCd=&welInfSno=309&searchGb=&searchText=&searchSido>



Code=&searchCggCode=&searchCtgId=&pageGb=&pageUnit=10&pageIndex=1&domainName=&cardListTypeCd=&welSrvTypeCd=&age=&hirKQestId=&qestCric=&qestDsr=&searchCondition=&searchKeyword=&intClId=®ion1=®ion2=&occupation=&occupation4=&pref=&career=&education=®Date=&searchGbn=&key1=309&stsfCn= 최종검색일 2019.10.30.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haneul.go.kr/portal/index.do> 최종검색일 2019.10.30.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부고작성요령 현대식 부고. <http://www.ehaneul.go.kr/portal/fnlInfo/info.do?id=M230101005> 최종검색일 2019.10.30

한국경제. 2019. “20년 같이 살았는데 혼인신고 안했다고 아내 장례도 못 치렀습니다”. 2019년 9월 21일자 기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203861i> 최종검색일 2019.9.22.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 교육과정 소개. http://www.kfcpi.or.kr/edu/edu_intro.do 최종검색일 2019.10.30.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 문상객의 옷차림. http://www.kfcpi.or.kr/infoMadang/funeral_info.do?cid=c113 최종검색일 2019.10.30.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장례문화홍보소개 http://www.kfcpi.or.kr/promote/promote_intro.do 최종검색일 2019.10.30.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장례절차. http://www.kfcpi.or.kr/infoMadang/funeral_info.do?cid=c124 최종검색일 2019.10.30.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장수행복노트 http://www.kfcpi.or.kr/promote/jangsoo_list.do#eyJzZXJ2aWNlZGl2aWQiOiJCMDAwMDAwMDIxIn0= 최종검색일 2019.10.30.

[URL_국외]

株式会社石長ホームページ(2018.10.29.). “終活とは? 準備はいつから始めるのがベスト? 本人や家族がやることを全部まとめて解説!”.
https://www.ishichou.co.jp/ohaka/ending_funeral/senior-life
최종검색일 2019.09.20.

厚生労働省(2018.8.30.). “市町村や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における身元保証等高齢者サポート事業に関する相談への対応について”(老高発0830第1号・老振発0830第2号)(2018年8月30日).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tc3682&dataType=1&pageNo=1 최종검색일 2019.09.30.

毎日新聞. “葬儀 ① 葬儀の作法と流れ”. https://mainichi.jp/sp/syukatsu2016/article/funeral_basics01.html 최종검색일 2019.09.23.

毎日新聞. “葬儀 ② どんな葬儀にするか?”. https://mainichi.jp/sp/syukatsu2016/article/funeral_basics02.html 최종검색일 2019.09.23.

毎日新聞. “葬儀 ③ 葬儀に向けた準備”. https://mainichi.jp/sp/syukatsu2016/article/funeral_basics03.html 최종검색일 2019.09.23.

毎日新聞. “終末への備え ③ エンディングノート”. https://mainichi.jp/sp/syukatsu2016/article/preparation_basics03.html 최종검색일 2019.09.20.

特定非営利活動法人 終活サポートセンター. <http://shukatsusupport-center.com/index.php> 최종검색일 2019.10.01.

認定NPO法人 エンディングセンター. <https://www.endingcenter.com/> 최종검색일 2019.10.01.

NPO法人きずなの会. <https://kizuna.gr.jp/> 최종검색일 2019.10.01.

NPO法人らしさ. <https://www.ra-shi-sa.jp/> 최종검색일 2019.10.01.

NPO日本生前契約等決済機構 | NPOりすシステム. <http://www.seizenkeiyaku.org/> 최종검색일 2019.10.01.

東京都練馬区(2019.5.1.). “国保に加入している方が亡くなったとき (葬祭費の



支給)”. https://www.city.nerima.tokyo.jp/kurashi/nenkinhoken/kokuminkenkohoken/hoken_kyufu/sosaihi.html 최종검색일 2019.09.23.

東京都練馬区(2019.6.11.). “葬祭費の支給”. <https://www.city.nerima.tokyo.jp/kurashi/nenkinhoken/kokikorei/sosaihi.html> 최종검색일 2019.09.23.

千葉県(2019.10.8.). “生活保護”. <https://www.pref.chiba.lg.jp/kenshidou/shien/book/seikatsuhogo.html> 최종검색일 2019.10.15.

内閣府 NPO. “特定非営利活動法人の認定数の推移”. <https://www.npo-homepage.go.jp/about/toukei-info/ninshou-seni> 최종검색일 2019.10.30.

内閣府 NPO. “特定非営利活動法人の活動分野について”. <https://www.npo-homepage.go.jp/about/toukei-info/ninshou-bunyabetsu> 최종검색일 2019.10.30.

坂総合病院. “死亡診断書・死亡証明書の発行について”. <https://www.m-kousei.com/saka/guide/certificate/die.html> 최종검색일 2019.10.30.

“NPO評価の現状と課題(2015.7.20.)”. <http://japan-social-innovation-forum.net/wp-content/uploads/2016/07/a1048f112d1e79db62a534a63bc5f6fe.pdf> 최종검색일 2019.10.30.

“遺体、遺骨は相続されるか、所有権は(2018.3.30.)”. <http://www.asahi-net.or.jp/~zi3h-kwrz/so/itai.html> 최종검색일 2019.10.30.

労働部勞工保險局(2016.2.18.). “請領資格及給付金額”. <https://www.bli.gov.tw/0014359.html> 최종검색일 2019.9.25.



[법령]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61호, 2007.12.27. 공포)

「긴급복지지원법」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제정 1961.12.5. 법률 제799호)

「의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1.8.4. 법률 제110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76호, 2019. 4. 23.,
일부개정]



부 록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설문지) 181



장래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Gallup 2019-163-025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가부장적 가정보례 문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장래문화를 중심으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사는 장래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는 한국의 장래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진행되며, 응답해 주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2019년 8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표이사 박재형
담당연구원 문혜리
전화 02-3702-2554

SQ 1) 귀하는 최근 5년간(2014년 8월~2019년 7월) 가족, 친인척, 친구, 지인 등의 장례식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문상 경험'을 포함하여 응답해주세요

1. 있다 → 계속
2. 없다 → 조사 종료

SQ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SQ 3) 실례지만, 귀하의 생년은 어떻게 됩니까?

년

SQ 4)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주소지 기준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I. 한국 장례문화의 실태 및 인식

문 1) 다음은 한국의 장례문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 내용에 대해 한국의 장례문화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하는 것은 주로 남성이다	1	2	3	4
(2) 장례에서 영정사진과 위패를 드는 것은 주로 남성이다	1	2	3	4
(3) 장례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대접하는 것은 주로 여성이다	1	2	3	4
(4) 장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한다	1	2	3	4
(5) 관, 수의 등 장례물품 구입과 장례절차에 비용이 많이 든다	1	2	3	4
(6) 정해진 방식 외에 다양한 장례 방식을 선택하기 어렵다	1	2	3	4
(7) 상조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달리 장례를 치를 방법이 없다	1	2	3	4
(8) 장례 절차와 예법이 복잡하고 불편하다	1	2	3	4
(9) 장례를 치를 때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1	2	3	4
(10) 장례식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에 집중하기 어렵다	1	2	3	4
(11)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려면 어려움이 많다	1	2	3	4
(12) 우리 사회에서 죽은과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어렵다	1	2	3	4
(13) 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한 남성이 주로 제사를 모신다	1	2	3	4

문 2) 귀하는 한국의 장례문화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장례에서 상주는 남성이 해야 한다	1	2	3	4
(2) 장례에서 여성은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대접해야 한다	1	2	3	4
(3) 상복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간소하고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이 좋다	1	2	3	4
(4) 장례식에는 조문객이 많아야 한다	1	2	3	4
(5) 비용이 들더라도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	1	2	3	4
(6) 장례식장에 화환은 많을수록 좋다	1	2	3	4
(7) 장례식은 적어도 3일간 해야 한다	1	2	3	4
(8) 기존의 장례방식은 1인가구, 비혼 증가 등 최근의 가족 변화와 맞지 않는다	1	2	3	4
(9) 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한 남성이 제사를 모셔야 한다	1	2	3	4
(10) 제사에 있어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하고 차별하는 문화는 변화해야 한다	1	2	3	4

II. 희망하는 장례문화

문 3) 귀하는 장례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고인의 사망소식을 알리기 위해
2. 고인과 가까운 사람에게 이별할 기회를 주기 위해
3. 남은 가족의 도리이기 때문에
4. 고인을 추모(그리며 생각)하기 위해
5.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6. 고인의 삶의 마무리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7. 기타(적어 주세요 : _____)

문 4) 만약 귀하가 사랑하는 사람(이웃, 친구, 지인 등)이나 가족의 장례를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습니까?

1. 기존의 장례 방식(일반적인 3일장 등)
2. 가족장(가족, 친자들만을 모시고 치르는 장례)
3. 1일장(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1일, 장례기간을 간소화하여 치르는 장례)
4. 자유장(정해진 형식 없이 고인의 취향이나 유언에 따라 치르는 장례 예) 음악장, 다과회, 전시회)
5. 기타(적어 주세요 : _____)

문 5) 귀하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족의 장례식에는 누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음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고인의 가족
2. 고인의 가족 + 친구
3. 고인의 가족 + 친인척
4. 고인의 가족 + 친인척 + 친구
5. 고인의 가족 + 친인척 + 친구 + 지인(직장동료, 동창 등)
6. 기타(적어 주세요 : _____)

문 6) 귀하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데 상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다 → 문 6-1)로 이동
2. 필요하지 않다 → 문 7)로 이동

문 6-1) 그렇다면, 귀하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족의 장례식의 상주는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장남·장손
2. 가족·친척 중 남성
3. 가족·친척 중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순으로
4. 가족·친척 중 고인과의 친밀도 순으로
5. 가족·친척 중 가장 경제력이 있는 사람
6. 가족이 의논하여 결정
7.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고인과 친했던 사람
8. 기타(적어 주세요 : _____)

184 ■ 가부장적 가정의례 문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문 7) 귀하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족의 장례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주를 정하고 상주를 중심으로
2. 외가, 친가, 성별 등 구분 없이 남겨진 가족들이 상의해서
3. 전문가(장례업체/장례지도사)의 의견에 따라
4. 고인과 친밀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5. 집안 어른의 뜻을 따라
6. 유족 중 가장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
7. 제주(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의견을 중심으로
8.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사람
9. 기타(적어 주세요 : _____)

문 8) 귀하는 본인의 장례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전혀 생각한 적이 없다
2. 별로 생각한 적이 없다
3. 가끔 생각한다
4. 자주 생각한다

문 9) 본인의 장례식은 누구를 초대하고 싶습니까? 다음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1. 나의 가족
2. 나의 가족 + 친구
3. 나의 가족 + 친인척
4. 나의 가족 + 친인척 + 친구
5. 나의 가족 + 친인척 + 친구+ 지인 (직장동료, 동창 등)
6. 기타(적어 주세요 : _____)

문 10) 본인의 장례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습니까?

1. 기존의 장례방식을 따라(일반적인 3일장 등)
2. 예법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예 : 음악장, 전시회 등)
3. 살아있는 동안 가족지인과 이별을 나누는 생전 장례식으로
4. 기타(적어 주세요 : _____)

III. 장례문화 관련 정책

문 11) 귀하는 **장례와 관련한 국가의 지원**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가족 유무나 소득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장례는 치를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1	2	3	4
(2) 본인의 장례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1	2	3	4
(3) 장례 이후 남겨진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1	2	3	4
(4)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하고 차별하는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1	2	3	4

문 12) 귀하는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다음의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1) 성평등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1	2	3	4
(2) 개인가족이 원하는 장례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1	2	3	4
(3) 다양한 형식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공공시설 등 공간 지원	1	2	3	4
(4) 상업화된 특과점 구조의 장례업체 변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1	2	3	4
(5) 국립시립병원 장례식장 등 공공부문부터 기존 장례문화 개선	1	2	3	4
(6) 고비용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장례 용품 가격 등 정보 공개 강화, 간소한 장례식 정보 안내 등)	1	2	3	4
(7) 장례지도사 등 장례인력 양성교육 과정에 가족 다양성·성평등에 대한 간수성 교육 도입	1	2	3	4

문 13) 귀하는 **현재 장례문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음의 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부정적 이다	부정적인 편이다	긍정적인 편이다	매우 긍정적 이다
(1) 빈소를 차리지 않거나 장례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식(예 : 1일장 등)	1	2	3	4
(2) 고인과 친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장례식을 치르는 방식	1	2	3	4
(3) 임종 전 지인과 이별 인사를 나누는 생전(사전) 장례식	1	2	3	4
(4) 예법에 얽매이지 않고 고인의 취향이나 유언에 따라 장례식을 치르는 방식 (예 : 음악장, 사전장사회)	1	2	3	4

IV. 응답자 특성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DQ 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임/어업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전업주부
11. 학생
12. 무직
13. 기타(적어 주세요 : _____)

DQ 2)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1. 미혼 → DQ 3)으로 이동
2. 배우자(남편/아내) 있음 → DQ 2-1)으로 이동
3. 이혼 → DQ 2-1)으로 이동
4. 별거 → DQ 2-1)으로 이동
5. 사별 → DQ 2-1)으로 이동

DQ 2-1)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1. 있다 → DQ 2-1-1)으로 이동
2. 없다 → DQ 3)으로 이동

DQ 2-1-1) 그렇다면, 귀하의 자녀의 성별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1. 딸만 있음
2. 아들만 있음
3. 딸, 아들 모두 있음

DQ 3) 귀하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누구입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1. 없음(1인 가구)
2. 부모님
3. 배우자
4. 자녀
5. 형제자매
6. 기타 동거인(작성 주세요 : _____)

DQ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교 재학/졸업
4. 대학원 재학/졸업

DQ 5) 귀하의 지난 1년 동안(2018년 8월 ~ 2019년 7월)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 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9.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0.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1. 1,000만원 이상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bstract

Research on Policy Measures to Improve Patriarchal Family Ritual Systems: Focus on Funeral Culture

Hyo Jean Song
Bo Young Sun
Jin-Hee Choi
Kyung Sung
Sookyung Park

Funeral rituals, among families, have acted as a mechanism in which gender inequalities are maintained and reconfirmed via patriarchal formalities and procedures. Despite that, in the name of traditions, customs, and a private family culture, they have been overlooked or passively supported in the context of policy and system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such a funeral culture accords with the value of gender equality or accepts changes in family systems. In connection with practices and funerals that have been manualized in the life-ending industry, it is also required to review frameworks and contexts

assumed by related legal systems, to examine how they are implemented in our daily lives, and to seek ways to improve them, from gender perspectives. This paper is designed to look into funeral culture-related issues from gender perspectives and in terms of family changes and to identify policy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ir improve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ways. Experts' opinions were reflected through advisory meetings, reviewing local and foreign literature, data, and legal systems.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ere held with those who have ever attended the funerals of their family members or relatives over the past three to five years, as well as with thirty related activists, in order to gather opinions (assessment and alternatives) on Korea's funeral culture and to prepare questions for research on the status of Korea's funerals. An online survey of about 1,300 adults in their twenties through fifties was carried out to figure out the status of Korea's funeral culture and their attitudes towards an alternative funeral culture and policies. The results were analyzed thoroughly for this study.

FGIs produced and identified the following results and implications, respectively:

First, interviewees are found to have experienced a patriarchal and gender-discriminatory funeral culture.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male-dominated rituals and procedures, women are marginalized or isolated while in the patriarchal funeral culture, there is discrimination between the father's side and the mother's side. In particular, gender roles are unreasonably separated in rituals and procedures. Such funeral practices are involuntarily chosen and

implemented through commercialized and standardized product services offered by mutual aid companies and funeral directors.

Second, in Korean society, three-day funerals are generally held at funeral halls under the guidance of mutual aid companies and funeral directors. Such a routine leads to standardized funeral services, funeral culture based on rituals and procedures, and a commercialized funeral culture where the focus is placed on purchasing predetermined rituals and procedures that are not planned based on survivors' choice and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the dead are not properly revered or mourned, causing the deceased and survivors to be isolated.

Third, the current funeral culture is also characterized by blood ties, typical families, and patriarchal family order. Therefore, the culture is found to have failed to reflect not only realities facing single-person households, single-parent families, cohabitation, de facto marriage-based families, and others but also changes in typical families.

Fourth, identifying the diverse limitations of the current funeral culture, it is found that the culture needs to be enhanced by reflecting realities facing families and changing attitudes. In connection therewith, participants propose that unnecessary procedures and formalities be removed, focusing on the remembrance of the deceased and consolations to survivors, and that real sorrow be expressed via one-day funerals, advance funeral services, photo exhibitions, receptions, and so forth, rather than simply following predetermined rituals and formalities.

Fifth, in order to improve funeral culture by reflecting changing attitudes and realities facing families, social attitudes towards funerals should be revised, making necessary efforts at an individual level. At the same time, legal systems should be enhanced, reflecting realities facing individuals and families that have experienced various lives.

For this study, a survey on the status of Korea's funeral culture and on citizens' awareness of an alternative funeral culture and policies was conducted, producing the following results:

In connection with gender inequality exposed by Korea's funeral culture, the following issues were raised. A majority of participants think that men act as chief mourners or key decision-makers while women play secondary and auxiliary role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funerals. A higher percentage of respondents are against Korea's hierarchical funeral culture characterized by roles differentiated by gender, arguing that such a culture should change and does not reflect recent changes in family structure. In terms of funeral procedures and formalities, they recognize the problems of funerals featuring empty formalities and vanity and high costs. A bigger percentage of respondents agree that high-cost funerals should be avoided, simplifying formalities and procedures. A higher portion of female and young participants recogni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funeral culture characterized by gender inequality and empty formalities and vanity, agreeing that such a culture should change. In particular,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gender in the area of improving funeral culture. Specifically, more women than men are found to demand gender-equal, low-cost, and simplified funerals.

Citizens' attitudes towards an alternative funeral culture were also explored, showing that there is a gap between Korea's current funeral culture and what people really want. In other words, respondents demand gender-equal and simplified funerals based on close relationships or various funerals customized to individual needs, rather than the current funeral culture characterized by gender inequality and empty formalities. More women than men ask for gender-equal funeral systems but both highly recognize needs for an alternative funeral culture. Reflecting a gap between Korea's current funeral customs and what people really need, a higher percentage of participants acknowledge the needs for appropriate policies.

Based on such research results, this paper deliver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in order to improve Korea's current funeral culture featuring patriarchy and gender inequality and to promote funeral culture properly reflecting changes in families and society.

First, policy and institutional efforts are required to promote funeral culture without gender hierarchies and discrimination. Funeral experts training programs should include curricula that improve gender sensitivity and the understanding of various types of families, conducting research on changing a gender-discriminatory funeral culture and developing alternative funeral contents. Legal systems should also be revised in connection with a patriarchal and gender-discriminatory funeral culture that is not in harmony with what the Constitution promotes. Moreover, a PR campaign should be implemented to disseminate a gender-equal funeral culture.

Second, revising legal systems, the focus should shift from patriarchy and blood ties to alternative systems that reflect changes in family and society in order to enable a variety of individuals and family members to honor the memory of the deceased. Institutional and policy considerations are required to enable everyone to properly revere the memory of the dead, regardless of family types.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family relationships, it is necessary to revise legal provisions whose focus is placed on families based on legal marriage and blood ties. Guardian systems should also be revised to enable 'single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ose who maintain close relationships out of the system' to ask and prepare for funerals in advance. In the same vein, institutional reforms should be implemented to ensure posthumous self-determination.

Third, funeral services should shift their focus from rituals and procedures to remembrance and mourning. Policy intervention is also required to improve funeral culture characterized by rituals, procedures, heavy burdens, and high costs. In connection therewith, necessary support systems and social conditions should be set up to enable various forms of condolences to be used, focusing on the remembrance of the deceased and consolation to survivor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ocial atmosphere and culture where citizens are supported to casually prepare for deaths and funerals. To this end, policy support including programs and training should be strengthened, establish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last wills, trust, and posthumous business management, and so forth in order to help prepare for deaths.



2019 연구보고서-22
**가부장적 가정의례 문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2019년 10월 30일 인쇄
2019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인 : 권 인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전화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02-313-7593 (代)

ISBN 978-89-8491-977-8 93330
정가 : 13,000원